

# 무역자유화 확대에 따른 관세율 체계 분석 연구

2017. 12.

정재호 · 강성훈



# 서 언

전 세계적으로 무역자유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왔다. 다수의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관세인하협상을 통해 관세 장벽이 낮아졌고, 근래 들어서는 자유무역협정 등을 통해 무역자유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관세율을 인하하고, 동시다발적으로 다수의 국가들과의 FTA를 체결하였다.

우리나라가 미국, EU, 중국 등의 거대 경제권 FTA를 비롯해서 2017년 말 기준으로 총 52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어 우리나라 FTA 정책이 성숙 국면에 들어선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관세율 체계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것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동시다발적 FTA 추진 전략을 통해 다수의 FTA가 발효된 상황에서 FTA 협정세율이 우리나라 관세율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지난 10년 동안의 전체 수입액 자료를 활용하여 FTA별, 산업별로 나누어 분석한다. 특히, 미국, EU, 아세안 등과 같은 거대 경제권의 FTA에 대해서는 FTA 협정세율이 산업별 관세율 구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각 산업별로 기본관세율의 역할의 중요성을 살펴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다수의 FTA가 발효된 상황에서 중심관세율 인하가 사회적 후생 및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FTA 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지역) 중에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 국가들과의 FTA와 일본과의 FTA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는 본 연구원의 정재호 선임연구위원과 한양대학교 강성훈 교수에 의해 이루어졌다. 저자들은 본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본 보고서의 초안을 읽고 많은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인천대

학교 이명헌 교수와 기획재정부 성용욱 사무관, 그리고 익명의 두 심사논평  
자께 깊은 감사를 표한다. 또한 원내 세미나에 참석해 많은 지적을 해주신  
여러 참석자들에게도 감사를 표하며, 본 연구원의 안승연 연구원, 장정순 선  
임행정원, 그리고 원고교정을 맡아 준 지식정보팀 직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서 담긴 내용은 집필자 개인들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  
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7년 12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박 형 수

##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전 세계적으로 무역자유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왔다. GATT 체제에서는 다수의 국가들이 참여하는 관세인하협상을 통해서, 그리고 WTO 출범 이후에는 다자간 관세인하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소수 국가들 간의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무역자유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1980년대부터 중심관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현재 중심관세율 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 세계적인 지역무역협정 확대 추세에 따라 동시다발적으로 다수의 국가들과의 FTA를 체결하였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 EU, 중국 등의 거대 경제권 FTA를 비롯해서 2017년 말 기준으로 총 52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고, 일본 등 다수의 국가와 FTA가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까지 중심관세율을 8%로 인하한 이후 일부 품목의 기본관세율을 조정하였지만, 전반적인 관세율 체계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수의 국가들이 FTA를 체결한 상황에서 다른 국가들의 관세율 체계 변화를 살펴보았지만 미국, EU, 일본 등 다수의 FTA를 체결한 다른 국가들에서도 눈에 띄게 관세율 체계를 변화한 국가는 없었다. 다만 호주는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고관세 품목인 자동차와 섬유류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여 절반 이상의 품목에 대해 5%의 관세율을 부과하여 단일 관세율 체계로 전환하였다는 특징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10년간의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율 자료를 활용하여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비중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거대 경제권과의 FTA에서는 기본관세율 적용 비율이 낮아지고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비중이 높아졌지만, 그 밖의 대다수 FTA에서는 FTA 협정세율 적용 비중이 그리 높지 않았다. 예를 들어, 교역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한·미 FTA, 한·EU FTA 그리고 한·아세안 FTA의 경우 FTA 이전에는 기본관세율로 수입되는 비중이 약 60~70% 수준이었는데, 그 비중은 약 25% 정도로 감소하였다. 그 밖의 대다수 FTA에서는 FTA 협정세율이 적용 비중이 낮아서 전체적으로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의 약 1/4 정도였다.

2016년 기준으로 한·미 FTA 경우에는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비중은 39.8%였지만, 한·아세안 FTA 경우에는 그 수입 비중이 48.6%이고, 한·EU FTA의 경우에는 58.3%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개별 FTA별로 협정세율 적용 비중이 상이하였으며, 한·EU FTA의 경우 협정세율 적용 비중이 다른 FTA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농산물 수입에서 나타난다. FTA 발효 이전에 기본관세율과 할당관세율로 수입되는 상당수의 농산물들이 FTA 협정세율로 전환되었다. 한·미 FTA의 경우 약 69.4%가 한·미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었고, 한·아세안 FTA 경우에는 72.8%, 그리고 한·EU FTA의 경우에는 약 80.2%로 협정세율 적용 비율이 더 높았다.

이처럼 상당수의 농산물 수입이 FTA 협정세율로 전환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탄력관세제도에 대한 정책변화를 시사하고 있다. 농산물에 대한 탄력관세제도 운용은 FTA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필요가 있다. 공산품에 비해 농산물은 압도적으로 FTA 활용률이 높고 FTA 협정세율도 점진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농산물에 대한 탄력관세는 FTA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자연재해 등으로 공급 부족이 발생해 국내 시장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일시적으로 탄력관세제도를 활용할 필요는 여전히 있다. 따라서 탄력관세 고유의 목적에 적합한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탄력관세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각 FTA별로 비교 우위에 있는 산업군들이 다수의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미 FTA에서는 음식료품을 비롯해서 4개 산업군에서, 한·EU FTA에서는 수송장비를 비롯해서 7개 산업군에서, 한·아세안 FTA에서도 섬유 및 가죽제품을 비롯해서 7개 산업군에서 FTA 협정세

을 적용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한·미 FTA와 비교해 볼 때, 한·EU FTA와 한·아세안 FTA에서는 FTA 협정세율 수입 비중이 절반 이상 되는 산업군이 더 많았고, 비교 우위에 있는 산업군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FTA를 활용하고 있었다.

전체 FTA 교역을 기준으로 산업별 분석을 하였다.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비중을 비교해 보면 산업별로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2016년 기준으로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산업 중에서 음식료품이 약 62.9%로 수입 비중이 가장 높았고, 섬유 및 가죽제품과 수송장비는 절반 이상이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고 있었다.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농림수산품은 약 1/3이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어 중간 위치에 있고, 나머지 금속제품, 기계류, 제1차 금속제품, 전기 및 전자기기 등은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비중이 다른 산업들에 비해 작다. 특히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은 WTO ITA 협정에 의해 WTO 양허세율이 무세이기 때문에 FTA를 통해 수입되는 비중이 10.4%로 다른 산업들에 비해 더 작았다.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비중이 높은 음식료품은 농림수산물과 함께 우리나라 관세율 체계에서 농산물로 분류된다. 농림수산물과 음식료품은 우리나라에서 고관세를 통해 국내 농산물 시장을 보호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분석결과 농림수산물과 음식료품은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비중이 높은 편이었고, 특히 음식료품은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비중이 다른 산업들 중에서 가장 높았다. 높은 기본관세율과 WTO 양허세율을 통해 국내 농산물 시장을 보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FTA를 통해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많이 반감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음식료품에 대한 FTA 협정세율 적용 비중도 한·미 FTA에서는 76.8%, 한·EU FTA에서는 83.0%, 한·아세안 FTA에서도 82.3%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농산물은 다른 품목들에 비해 더 높은 관세를 적용하여 국내 시장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FTA 확산으로 인해 국내 농산물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효과는 없으면서 이러한 높은 관세율이 명목상으로만 존재하여 대외적으로 보호 수준이 과다하는 부정적인 인식만 남길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관세율 정책 방향을 설정할 때 농산물에 대한 높은 기본관세율과 FTA 협정세율 간의 관세율 차이, 그리고 이로 인한 농산물 품목의 무역전환 효과 등을 감안하여 기본관세율 구조를 개선할 때 참고할 필요가 있다.

농산물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중심관세율 체계에서 예외로 운용하고 있는 섬유 및 가죽제품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섬유 및 가죽제품에 대해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중심관세율 8%보다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분석결과에서 보듯이 섬유 및 가죽제품은 예상대로 아세안, 중국, 베트남에서 주로 수입되고 있다. 한·아세안 FTA를 통해 수입되는 섬유 및 가죽제품의 비중은 2015년에는 26.2%까지 증가하였고, 2016년에는 19.5%였다. 2016년에 새롭게 한·중 FTA를 통해 12.8%를, 한·베트남 FTA를 통해 9.8%의 섬유 및 가죽제품이 수입되었다. 한·아세안 FTA에서 섬유 및 가죽제품의 93.1%가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고 있다. 향후에도 이들 FTA 체결 국가들로부터의 섬유 및 가죽제품은 꾸준히 수입될 것으로 여겨진다. 섬유 및 가죽제품에 대한 현재의 고관세 정책은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섬유 및 가죽제품에 대한 높은 기본관세율과 FTA 협정세율 간의 관세율 차이, 그리고 이로 인한 무역전환효과 등을 감안하여 기본관세율 구조를 개선할 때 참고할 필요가 있다.

수송장비 산업에서는 거의 한·EU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수송장비 비중이 매우 높았다. 2016년 기준으로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수송장비가 약 51.9%인데, 이중에서 39.2%가 한·EU FTA를 통해 수입되고 있다. 2015년에는 이 비중이 43.2%에 이르기도 하였다. 산업별 분석에서 특정 FTA의 수입 비중이 이처럼 높은 경우는 없었다. 우리나라가 현재 일본과의 FTA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역전환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참고로 한·미 FTA를 통해 수입되는 수송장비의 수입 비중은 9.8%이다. 수송장비와 달리 제1차 금속제품의 경우에는 특정 FTA가 아닌 여러 FTA들로부터 수입되어 특별히 수입이 편중되지 않은 산업도 있었다.

그리고 한·중 FTA가 발효된 이후에는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기계류, 전기 및

전자기기 품목은 EU와 미국에서 주로 수입되는데, 한·중 FTA가 발효된 이후에는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한·중 FTA가 2015년 12월에 발효되어 자료의 한계로 인해 분석에서 제외하였지만, 2016년 한 해 자료만을 보았을 때, 한·중 FTA 발효로 인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한 산업이 다수 눈에 띈다. 전기 및 전자기기, 금속제품, 비금속광물, 화학제품, 섬유 및 가죽제품 등에서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추후에도 한·중 FTA가 우리나라 기본관세율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다수의 FTA가 발효된 상황에서 2016년 기준 산업별 FTA 실적관세율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지금 중심관세율을 8%에서 5%로 인하할 경우와 향후 FTA 관세인하 일정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 중심관세율을 5%로 인하할 경우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산업별 FTA 실적관세율 매트릭스를 작성하여 자료로 사용할 때 장점은 2016년 기준으로 FTA별로 특정 산업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실제 관세율을 모형 분석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적관세율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FTA 체결로 인해 모든 수입품에 FTA 협정세율인 무세(0%)가 적용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도 보았듯이, 산업별, FTA별로 FTA 협정세율 적용 비율이 다양해서 이러한 일률적인 적용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현재 다수의 FTA가 발효되었지만, 이처럼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비중이 산업별, FTA별로 다양한 상황에서 중심관세율 인하로 인한 무역전환효과 완화 등으로 인한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FTA 관세인하 일정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 중심관세율을 낮추는 것보다 더 나은 정책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웠다. 모형 설정의 한계로 인해 FTA 협정세율 적용 비중이 산업별, FTA별로 다양한 상황에서 중심관세율 인하효과가 모형 분석대로 현실에서도 그대로 반영될지는 의문이다.

또한 중심관세율 인하로 인해 미국과 EU로부터의 수입 감소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이들 국가들의 후생이 감소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큰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국의 후생이 증가하는데 이 역시도 한·중 FTA가 2015년 12월에 발효되어 한·중 FTA에 따른 교역효과

가 이번 분석에는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중 FTA가 이제 막 발효되어 2016년 한 해만 볼 수 있었지만 한·중 FTA가 우리나라 관세율 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FTA들에 비해 향후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한·GCC FTA와 한·일 FTA가 이루어질 경우를 분석하였다. 한·GCC FTA 체결은 곧 우리나라가 전체 원유 수입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FTA들과의 관세인하 일정이 마무리되고 추가로 한·GCC FTA가 체결되어 원유 관세가 무세가 적용되면 세수 감소 보전 등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사회적 후생은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GCC FTA가 체결된 이후 중심관세율을 인하하면 사회적 후생과 국내총생산이 약간의 개선되었지만 그 효과는 작았다. 따라서 관세율 정책 측면에서는 한·GCC FTA 체결은 긍정적인 측면이 적은 것으로 여겨진다.

거대 경제권 중에서 아직 일본과의 FTA가 중요한 사안으로 남아 있다. 한·일 FTA도 다른 FTA들과의 관세인하 일정이 마무리되고 한·일 FTA를 체결한 이후 중심관세율 인하를 하면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분석들보다 그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다. 아마도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경제권들과의 FTA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중심관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상대적으로 더 크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동시다발적 FTA 추진 전략을 통해 다수의 FTA가 체결되어 발효된 상황에서 FTA 협정세율이 우리나라 관세율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지난 10년 동안의 전체 수입액 자료를 활용하여 FTA별, 산업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상황에서 중심관세율을 낮추는 것이 FTA 관세인하 일정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 낮추는 것보다 더 나은 정책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향후에도 이러한 분석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정책 결정에 기초가 될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중 FTA가 더 성숙해지고, 또한 한·일 FTA 논의가 시작되면 이와 같은 분석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목 차

I. 서론 .....	21
II. 관세율 정책의 특징 .....	26
1. 우리나라 관세율 구조 및 변화 .....	26
가. 우리나라 관세율 종류 .....	26
나. 관세율 적용 순서 .....	28
다. 탄력관세제도 운영 현황 .....	29
라. 기본관세율 구조 변화 .....	32
2. 주요국의 관세율 구조와 변화 .....	35
가. 관세율 구조 .....	35
나. 관세율 변화 .....	39
3. 관세 세수입 규모 .....	44
가. 우리나라 관세 세수 .....	44
나. 주요국의 관세 세수 .....	46
III. FTA 확대에 따른 관세율 구조 변화 .....	48
1. 우리나라 FTA 현황 .....	48
가. 전 세계 FTA 추세 .....	48
나. 우리나라 FTA 발효 및 협상 현황 .....	49
2. 주요 FTA별 관세율 구조 현황 및 특징 .....	50
가. 한·미 FTA .....	51
나. 한·EU FTA .....	60
다. 한·아세안 FTA .....	69
3. 주요 산업별 관세율 구조 현황 및 특징 .....	77

---

가. 농림수산물 .....	77
나. 음식료품 .....	79
다. 섬유 및 가죽제품 .....	81
라. 화학제품 .....	83
마. 비금속광물제품 .....	85
바. 제1차 금속제품 .....	87
사. 금속제품 .....	89
아. 기계류 .....	91
자. 전기 및 전자기기 .....	93
차. 수송장비 .....	95
4. 소결 .....	97
가. 주요 FTA별 분석 .....	97
나. 주요 산업별 분석 .....	100
IV. 관세율 변화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분석 .....	105
1. CGE 모형 .....	108
가. 모수 설정 .....	113
나. 분석 자료 .....	116
2. 중심관세율 인하효과 분석 .....	123
가. 중심관세율 5%로 인하 .....	123
나. 섬유류 관세율 인하 .....	128
다. FTA 최종 관세인하율 반영 .....	129
3. 한·GCC FTA와 한·일 FTA 효과분석 .....	134
가. 한·GCC FTA .....	134
나. 한·일 FTA .....	138
4. 할당관세제도 효과분석 .....	144

---

V. 요약 및 결론 .....	147
참고문헌 .....	154
부 록 .....	159

---

## 표 목차

〈표 II-1〉 우리나라 관세율 종류 .....	27
〈표 II-2〉 관세율 적용 순위 .....	28
〈표 II-3〉 1991~2001년까지의 할당관세 운용 .....	30
〈표 II-4〉 2002~2009년까지의 할당관세 운용 .....	30
〈표 II-5〉 2010~2012년까지의 할당관세 운용 .....	31
〈표 II-6〉 2013년 이후의 할당관세 운용 .....	32
〈표 II-7〉 공산품의 관세율 구조 .....	33
〈표 II-8〉 기본관세율의 세율별 구성 .....	34
〈표 II-9〉 주요국 실행세율의 세율별 구성 비중(2016년) .....	36
〈표 II-10〉 주요국 실행세율의 세율별 품목 수 및 비중(2016년) .....	38
〈표 II-11〉 FTA 주요국 체결 현황 .....	44
〈표 III-1〉 우리나라의 FTA 발효 현황 .....	50
〈표 III-2〉 미국 수입품 적용 관세율별 수입액 비중 .....	51
〈표 III-3〉 미국 공산품 적용 관세율별 수입액 비중 .....	52
〈표 III-4〉 미국 농산물 적용 관세율별 수입액 비중 .....	53
〈표 III-5〉 산업별 적용 관세율별 미국 수입액 비중(2012년) .....	56
〈표 III-6〉 산업별 적용 관세율별 미국 수입액 비중(2016년) .....	56
〈표 III-7〉 산업별 적용 관세율별 미국 수입액 비중(2012년) .....	59
〈표 III-8〉 산업별 적용 관세율별 미국 수입액 비중(2016년) .....	59
〈표 III-9〉 EU 수입품 적용 관세율별 수입액 비중 .....	61
〈표 III-10〉 EU 공산품 적용 관세율별 수입액 비중 .....	62
〈표 III-11〉 EU 농산물 적용 관세율별 수입액 비중 .....	63
〈표 III-12〉 산업별 적용 관세율별 EU 수입액 비중(2011년) .....	65

---

〈표 III-13〉 산업별 적용 관세율별 EU 수입액 비중(2016년) .....	66
〈표 III-14〉 산업별 적용 관세율별 EU 수입액 비중(2011년) .....	67
〈표 III-15〉 산업별 적용 관세율별 EU 수입액 비중(2016년) .....	68
〈표 III-16〉 아세안 수입품 적용 관세율별 수입액 비중 .....	69
〈표 III-17〉 아세안 공산품 적용 관세율별 수입액 비중 .....	70
〈표 III-18〉 아세안 농산물 적용 관세율별 수입액 비중 .....	72
〈표 III-19〉 산업별 적용 관세율별 아세안 수입액 비중(2007년) .....	74
〈표 III-20〉 산업별 적용 관세율별 아세안 수입액 비중(2016년) .....	74
〈표 III-21〉 산업별 적용 관세율별 아세안 수입액 비중(2007년) .....	76
〈표 III-22〉 산업별 적용 관세율별 아세안 수입액 비중(2016년) .....	77
〈표 III-23〉 농림수산물 적용 관세율별 수입액 비중 .....	78
〈표 III-24〉 FTA별 전체 수입액 대비 농림수산물 수입액 비중 .....	79
〈표 III-25〉 음식료품 적용 관세율별 수입액 비중 .....	80
〈표 III-26〉 FTA별 전체 수입액 대비 음식료품 수입액 비중 .....	81
〈표 III-27〉 섬유 및 가죽제품 적용 관세율별 수입액 비중 .....	82
〈표 III-28〉 FTA별 전체 수입액 대비 섬유 및 가죽제품 수입액 비중 .....	83
〈표 III-29〉 화학제품 적용 관세율별 수입액 비중 .....	84
〈표 III-30〉 FTA별 전체 수입액 대비 화학제품 수입액 비중 .....	85
〈표 III-31〉 비금속 광물제품 적용 관세율별 수입액 비중 .....	86
〈표 III-32〉 FTA별 전체 수입액 대비 비금속 광물제품 수입액 비중 .....	87
〈표 III-33〉 제1차 금속제품 적용 관세율별 수입액 비중 .....	88
〈표 III-34〉 FTA별 전체 수입액 대비 제1차 금속제품 수입액 비중 .....	89
〈표 III-35〉 금속제품 적용 관세율별 수입액 비중 .....	90
〈표 III-36〉 FTA별 전체 수입액 대비 금속제품 수입액 비중 .....	91
〈표 III-37〉 기계류 적용 관세율별 수입액 비중 .....	92
〈표 III-38〉 FTA별 전체 수입액 대비 기계류 수입액 비중 .....	93

---

〈표 III-39〉 전기 및 전자기기부문 적용 관세율별 수입액 비중 .....	94
〈표 III-40〉 FTA별 전체 수입액 대비 전기 및 전자기기 수입액 비중 .....	95
〈표 III-41〉 수송장비 적용 관세율별 수입액 비중 .....	96
〈표 III-42〉 FTA별 전체 수입액 대비 수송장비 수입액 비중 .....	97
〈표 III-43〉 주요 FTA별 FTA 협정세율 비중이 높은 산업군(2016년) .....	99
〈표 III-44〉 산업별 FTA 협정세율 적용 비중 .....	100
〈표 III-45〉 산업별 FTA 협정세율 적용 비중이 높은 국가(2016년) .....	103
〈표 IV-1〉 다국가 GTAP 모형 내 개방형 소국경제 변수 설명 .....	112
〈표 IV-2〉 주요 행태 모수(behavioral parameters) I .....	114
〈표 IV-3〉 주요 행태 모수(behavioral parameters) II .....	115
〈표 IV-4〉 국가 분류 .....	117
〈표 IV-5〉 국가별 산업별 관세율: 기타국가에 일본이 포함된 경우 .....	118
〈표 IV-6〉 국가별 산업별 관세율: 기타국가에 일본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	119
〈표 IV-7〉 산업 분류 .....	120
〈표 IV-8〉 GTAP 모형의 사회계정행렬(SAM) .....	122
〈표 IV-9〉 〈시나리오 1〉의 분석결과 .....	126
〈표 IV-10〉 〈시나리오 1-2〉의 국가별 사회적 후생 변화와 GDP 변화율 .....	128
〈표 IV-11〉 〈시나리오 점유〉의 분석결과 .....	129
〈표 IV-12〉 FTA 회원국별 최종 관세인하율 .....	131
〈표 IV-13〉 〈시나리오 2〉의 분석결과 .....	133
〈표 IV-14〉 〈시나리오 2〉의 국가별 사회적 후생 변화 .....	133
〈표 IV-15〉 〈시나리오 3〉의 분석결과 .....	136
〈표 IV-16〉 한·GCC FTA의 수입·수출효과 .....	137
〈표 IV-17〉 〈시나리오 4-1〉과 〈시나리오 4-2〉의 분석결과 .....	140
〈표 IV-18〉 〈시나리오 4-1〉의 국가별 사회적 후생 변화 및 국내총생산 변화율 ·	140

---

〈표 IV-19〉 〈시나리오 4-2〉의 국가별 사회적 후생 변화 및 국내총생산 변화율	141
〈표 IV-20〉 시나리오별 한·일 FTA의 수입효과	142
〈표 IV-21〉 시나리오별 한·일 FTA의 수출효과: 미국, EU, 기타 국가	143
〈표 IV-22〉 〈시나리오 할당〉의 분석결과	145
〈표 IV-23〉 〈시나리오 할당〉에 대한 수입·수출효과	145
〈부표 1〉 HS 2단위 품목명	159
〈부표 2〉 시나리오 1-2의 수입효과	163
〈부표 3〉 시나리오 1-2의 수출효과	164
〈부표 4〉 시나리오 2의 수입효과	165
〈부표 5〉 시나리오 2의 수출효과	166

---

## 그림 목차

[그림 II-1] 한국 HS 2단위별 평균 관세율	39
[그림 II-2] 미국 HS 2단위별 평균 관세율	40
[그림 II-3] EU HS 2단위별 평균 관세율	40
[그림 II-4] 일본 HS 2단위별 평균 관세율	41
[그림 II-5] 중국 HS 2단위별 평균 관세율	41
[그림 II-6] 호주 HS 2단위별 평균 관세율	42
[그림 II-7] 칠레 HS 2단위별 평균 관세율	43
[그림 II-8] 캐나다 HS 2단위별 평균 관세율	43
[그림 II-9] 관세 세수 규모 추이	45
[그림 II-10] GDP 대비 관세 수입비중	46
[그림 II-11] 주요국의 GDP 대비 관세수입 비중	47
[그림 III-1]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 현황	49
[그림 III-2] 미국 공산품 적용 관세율별 수입액 비중	52
[그림 III-3] 미국 농산물 적용 관세율별 수입액 비중	53
[그림 III-4] 산업별 적용 관세율별 미국 수입액 비중(FTA 세율)	55
[그림 III-5] 산업별 적용 관세율별 미국 수입액 비중(FTA 세율)	58
[그림 III-6] EU 공산품 적용 관세율별 수입액 비중	62
[그림 III-7] EU 농산물 적용 관세율별 수입액 비중	63
[그림 III-8] 산업별 적용 관세율별 EU 수입액 비중(FTA 세율)	65
[그림 III-9] 산업별 적용 관세율별 EU 수입액 비중(FTA 세율)	67
[그림 III-10] 아세안 공산품 적용 관세율별 수입액 비중	70
[그림 III-11] 아세안 농산물 적용 관세율별 수입액 비중	71
[그림 III-12] 산업별 적용 관세율별 아세안 수입액 비중(FTA 세율)	73

---

[그림 Ⅲ-13] 산업별 적용 관세율별 아세안 수입액 비중(FTA 세율) .....	76
[그림 Ⅲ-14] 농림수산물 적용 관세율별 수입액 비중 .....	78
[그림 Ⅲ-15] 음식료품 적용 관세율별 수입액 비중 .....	80
[그림 Ⅲ-16] 섬유 및 가죽제품 적용 관세율별 수입액 비중 .....	82
[그림 Ⅲ-17] 화학제품 적용 관세율별 수입액 비중 .....	84
[그림 Ⅲ-18] 비금속 광물제품 적용 관세율별 수입액 비중 .....	86
[그림 Ⅲ-19] 제1차 금속제품 적용 관세율별 수입액 비중 .....	88
[그림 Ⅲ-20] 금속제품 적용 관세율별 수입액 비중 .....	90
[그림 Ⅲ-21] 기계류 적용 관세율별 수입액 비중 .....	92
[그림 Ⅲ-22] 전기 및 전자기기부문 적용 관세율별 수입액 비중 .....	94
[그림 Ⅲ-23] 수송장비 적용 관세율별 수입액 비중 .....	96
[그림 Ⅲ-24] 산업별 FTA 협정세율 적용 비중이 높은 국가(2016년) .....	103
[그림 Ⅳ-1] 다국가 GTAP 모형 내 개방형 소국경제 개관 .....	111

---



---

# I. 서론

---

전 세계적으로 무역자유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왔다. 194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이 창설된 이후 GATT 체제에서는 다수의 국가들이 참여하여 관세 장벽을 낮추는 다자간 관세인하협상이 진행되면 전 세계적인 무역자유화가 진행되었다. 1995년 WTO 출범 이후에는 이러한 다자간 관세인하협상은 주축한 사이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무역자유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정책이 추진되었다. 우리나라의 관세율 수준은 GATT 체제 속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특히 1980년대 후반 이래 중심관세율 8%를 기준으로 관세율 인하정책을 추진하였다. 근래 들어서는 세계적인 지역무역협정 확대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해외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시장개방을 통한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시에 다발적으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17년 9월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베트남, 중국, 콜롬비아 등과의 FTA를 발효하여 총 52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다. 이 중에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과 미국, 그리고 중국 등과 같은 거대 경제권과의 FTA도 체결되었다. 현재에도 이스라엘, 에콰도르 등과의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일본, 멕시코 등 기존에 논의가 이루어지다 협상이 일시 중단된 FTA들이 다수 있다.

우리나라의 관세율 수준이 1980년대 후반 이래 크게 낮아졌지만, 중심관세율 8% 수준으로 여전히 관세율 정책이 국내 산업의 자원배분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다. 그리고 FTA에 따른 관세철폐는 시장개방을 통해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는 정책이지만 이러한 FTA 경제 환경 속에서도 관세율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선 FTA가 발효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수입품이라 하더라도 해당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FTA

특혜관세율이 아닌 기존 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FTA 발효 이후 무관세로 수입되는 교역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 EU, 중국 등의 거대 경제권 FTA를 비롯해서 총 52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어 우리나라 FTA 정책이 어느 정도 성숙 국면에 들어선 상황 속에서 FTA 협정세율이 현재 우리나라 관세율 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FTA별 그리고 품목별 관세인하 일정의 차이로 인해 FTA 발효 이후 무관세로 수입되는 교역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적으로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교역량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여 현재의 관세율 체계를 분석하고 앞으로도 방향에 대해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관세율 정책의 변화와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기본관세율 구조와 우리나라가 관세율 정책으로 활용하고 있는 탄력관세제도 등에 대해 논의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관세율 구조를 다른 주요국들의 관세율 구조와도 비교 분석하고,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FTA가 확대된 상황에서 다른 주요국들의 관세율 구조 변화에 대해서도 조사 분석한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무역자유화가 우리나라 관세율 체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지난 10여년 동안의 전체 수입액 자료를 활용하여 수입품에 대한 국가(지역)별, FTA별 적용 관세율을 파악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효 중인 FTA로 인해 우리나라 관세율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 중 미국, EU, 아세안 등과 같이 거대 경제권과의 FTA에 대해서는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비중의 변화를 발효 초기와 현재를 비교하고, 여기에 추가로 이들 FTA 교역들을 산업별로 구분하여 산업별로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비중의 변화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교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EU, 아세안과의 FTA에서 산업별 관세율 차이에 대해 분석한다.

이와 같은 거대 경제권과의 FTA별 분석과 함께 전체 FTA를 기준으로 산

업별로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비중의 변화를 살펴본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현재 다수의 FTA 발효된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본관세율 구조에 산업별로 FTA 협정세율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이러한 분석에 의해 도출된 FTA별, 산업별 실효세율(실적관세율)을 활용하여 다국가 연산 가능한 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이하 CGE 모형)인 Global Trade Analysis Project(GTAP) 모형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본 연구의 GTAP 자료는 2011년 기준으로 작성되어 2011년 이후 발효된 FTA의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앞서 분석한 관세율 자료를 활용해서 2016년 기준으로 GTAP 자료를 업데이트하였다. 이렇게 업데이트 된 산업별, FTA별 실적관세율 매트릭스의 장점은 2016년 기준으로 FTA별로 특정 산업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실제 관세율을 모형 분석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적관세율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FTA 체결로 인해 모든 수입품에 FTA 협정세율인 무세(0%)가 적용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별, FTA별로 FTA 협정세율 적용 비율이 다양해서 이러한 일률적인 적용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산업별, FTA별로 정리된 관세율을 이용하여 2016년 기준으로 중심관세율이 8%에서 5%로 인하하는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한다. 현재 WTO DDA 협상이 지지부진하지만 그동안 DDA 협상 비농산물 분야에서 논의된 관세율 인하 수준을 감안할 때에도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중심관세율 인하는 FTA별 산업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기본관세율과 FTA 협정세율 적용 비중의 차이와 이러한 차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무역전환효과를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과 함께 향후 우리나라가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를 산정하여 분석한다. 아마도 거대 경제권과의 FTA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남은 국가가 일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직 FTA가 체결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와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 국가 간의 FTA

협상도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GCC 국가들로부터 원유를 수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수입품 중에서 가장 수입액이 큰 품목이다. 대부분의 원유를 GCC로부터 수입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GCC와 FTA가 체결되면 결국은 다른 원유 수출국에 대해서도 원유 관세를 무세로 할 수 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원유 관세가 무세(0%)가 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기본관세율 구조에 대한 논의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활용하고 있는 탄력관세제도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탄력관세제도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할당관세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다수의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지만, 할당관세로 수입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효과를 분석한다.

우리나라 관세율 제도에 대해 연구한 기존 연구로는 정재호 외(2003), 정재호(2008), 정재호·이홍식(2010), 장근호 외(2011) 등이 있다.

정재호 외(2003)에서는 크게 주요국들의 관세율 구조를 비교 분석하고,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적정관세율 체계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와 주요국들의 관세율 구조를 과세방법, 가공단계, 산업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여 원자재에 대한 무세화, 중간재 관세율 조정 등에 대해 제안하였다. 그리고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관세율 체계를 분석에서는 향후에도 중심관세율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정재호(2008)에서는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WTO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에서 논의되고 있는 관세인하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적정관세율 체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관세율 체계 변화로 인한 자원 재배분 비용을 감안할 때 개별 산업의 관세율 변화보다는 전체적인 관세율 인하가 우리나라 후생변화에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재호 외(2003)과 정재호(2008)에서는 FTA를 전혀 감안하지 않았는데, 정재호·이홍식(2010)에서는 FTA를 감안하여, 미국과 EU 등의 거대 경제권과의 FTA 발효를 대비하여 한·미 및 한·EU FTA 체결로 인해 중국과 일본 수입품에 대한 무역전환효과 및 무역창출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한·미 및 한·EU FTA가 체결되면 급격한 관세율

조정보다는 산업별 무역전환효과를 감안하여 일부 관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적합한 정책임을 제시하였다.

장근호 외(2011)에서는 산업연관표 자료 등을 이용하여 산업, 고용, 교역 구조 및 물가 동향 등 우리나라 경제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국가별 산업별로 현재 관세율 구조를 비교하였으며, FTA 체결 전후의 산업별 실효세율을 비교 분석하여 FTA가 산업별 실효세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기본관세율 체계의 개편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차례로 기술한다.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 관세율 정책의 변화와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기본관세율 구조, 탄력관세제도 등에 대해 논의하고, 주요국 관세율 구조와도 비교한다. 제Ⅲ장에서는 최근 10여년간의 관세율 자료를 이용하여 주요 FTA별로 협정관세 교역 구조를 살펴본다. 또한 주요 산업(품목)별로 FTA로 인해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제Ⅳ장에서는 분석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일반균형모형 분석을 시도한다. 중심관세율이 8%에서 5%로 인하하는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과 함께, 향후 한·일 FTA와 한·GCC FTA를 가정하여 분석한다. 그리고 추가로 할당관세로 수입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효과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앞서 논의된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는다.

---

## II. 관세율 정책의 특징

---

우리나라 관세율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우리나라 관세율 제도, 관세율 정책의 변천, 그리고 관세율 정책의 특징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1. 우리나라 관세율 구조 및 변화

#### 가. 우리나라 관세율 종류

일반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다양한 종류의 관세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관세율 제도는 크게 국내법에 의해 운용되는 관세율 제도와 국제적으로 양자 혹은 다자간의 협정 등에 의해 운용되는 관세율 제도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종류의 관세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법에 의해 운용되는 국정 관세율 제도와 국제적인 협정 등에 의해 운용되는 협정 관세율 제도로 나눌 수 있다.

국내법에 의해 운용되는 관세율 제도는 법에 기재된 관세율과 법에 기재된 관세율을 특별한 사유에 의해 일정 기간 동안에 임시적으로 적용하는 탄력관세율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정 관세율이라고 하면 「관세법」에 기재된 기본관세율, 특정 물품에 대한 기본관세율을 잠정적으로 인하 또는 인상하여 부과하는 잠정관세율 그리고 개발도상국 물품에 대해 기본관세율 보다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일반특혜관세율 등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탄력관세율은 기본관세율을 바탕으로 「관세법」이 정한 사유에 한해 관세율 수준을 변경하여 임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관세율 제도로,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57조에서 제74조까지 탄력관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탄력관세에는 덤핑방지관세(「관세법」 제51조), 상계관세(「관

세법」 제57조), 보복관세(「관세법」 제63조), 긴급관세(「관세법」 제65조), 특정국물품 긴급관세(「관세법」 제67조의2), 특별긴급관세(「관세법」 제68조), 조정관세(「관세법」 제69조), 할당관세(「관세법」 제71조), 계절관세(「관세법」 제72조), 편익관세(「관세법」 제74조) 등이 있다.

국제적으로 양자 혹은 다자간의 협정 등에 의해 운용되는 관세율 제도는 가장 대표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의 일반양허관세율과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협정관세율이 있다. 이 밖에도 국제기구 또는 특정 국가와의 협정에 의해 정한 관세율이 있는데, 예를 들어 WTO 개발도상국 간 양허관세율, 아시아태평양무역(APTA)협정에 의한 양허관세율, UN 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의 양허관세 등이 있다.

〈표 II-1〉 우리나라 관세율 종류

국정관세	기본관세율(「관세법」 제49조) 잠정관세율(「관세법」 제49조) 일반특혜관세(「관세법」 제76조)	
	탄력관세율	덤핑방지관세(「관세법」 제51조) 상계관세(「관세법」 제57조) 보복관세(「관세법」 제63조) 긴급관세(「관세법」 제65조) 특정국물품 긴급관세(「관세법」 제67조의2) 특별긴급관세(「관세법」 제68조) 조정관세(「관세법」 제69조) 할당관세(「관세법」 제71조) 계절관세(「관세법」 제72조) 편익관세(「관세법」 제74조)
협정관세	세계무역기구협정(WTO) 일반양허관세 세계무역기구협정(WTO) 개발도상국 간 양허관세 아태무역협정 양허관세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의 양허관세 특정국가와 관세협상에 따른 양허관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16, p.261의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재작성

## 나. 관세율 적용 순서

앞서 언급하였듯이, 다양한 종류의 관세율 제도가 운용되기 때문에 한 품목에 하나의 관세율이 아닌 다수의 다양한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처럼 다양한 다수의 관세율 중에서 어느 관세율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관세법」에 의해 규정된 기본관세율이 적용되지만, 기본관세율보다 탄력관세가 우선하고 관세율 수준에 따라 협정세율이 적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특별긴급관세 등이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관세는 긴급하게 국내 산업을 공정하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표 II-2〉 관세율 적용 순위

<b>1순위</b> (제50조2항1호)	덤핑방지관세(제51조), 상계관세(제57조), 보복관세(제63조), 긴급관세(제65조), 특정국물품 긴급관세(제67조의2), 특별긴급관세(제68조)	관세율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최우선 적용
<b>2순위</b> (제50조2항2호)	국제협력관세(제73조), 편익관세(제74조)  WTO협정 양허관세, 방콕협정 양허관세, UNCTAD 개도국간 양허관세, 특정국과의 협상에 의한 양허관세  * 농림축산물양허관세(제50조3항 단서)	3~6순위보다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적용  세율이 높은 경우에도 5, 6순위 세율보다 우선적용
<b>3순위</b> (제50조2항3호)	조정관세(제69조), 할당관세(제71조), 계절관세(제72조)	할당관세는 4순위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우선 적용
<b>4순위</b> (제50조2항4호)	일반특혜관세(제76조)	
<b>5순위</b> (제50조1항)	잠정세율(제49조1호)	
<b>6순위</b> (제50조1항)	기본세율(제49조2호)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16, p.264의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재작성

## 다. 탄력관세제도 운용 현황

탄력관세제도는 일시적인 경제 변화 등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여러 국가들에서 사용하는 관세제도이다. 법정 관세율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럴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단기적으로 관세율을 변동시킬 수 있는 재량을 법에 명시하고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법정 관세율의 일정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에서는 「관세법」 제51조 내지 제77조에서 여러 가지 탄력관세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이런 탄력관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71조에 명시된 할당관세제도를 주요 탄력관세제도로 운용하고 있다.

「관세법」 제71조에 명시된 할당관세 부과 목적은 첫째로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둘째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셋째 유사물품 간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할당관세 제도는 기본관세율의 100분의 40 범위 내에서 세율을 인하 또는 인상할 수 있다. 그리고 추가로 할당관세율이 적용되는 수입 수량을 일정 규모로 제한할 수도 있다.<sup>1)</sup>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기획재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의 관계 부처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적용 품목과 세율을 결정한다. 할당관세제도가 탄력관세제도의 일환이기 때문에 할당관세의 적용 기간은 일반적인 일정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1991년부터 2007년까지는 대개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1년 또는 상하반기 6개월을 기준으로 운용하였다. 다만, 2004년에는 조류인플루엔자와 광우병 등으로 인해 할당관세 품목을 빈번하게 조정되었다.

1)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labNo=&query=%EA%B4%80%EC%84%B8%EB%B2%95#undefined> (접속일: 2017.4.3.)

〈표 II-3〉 1991~2001년까지의 할당관세 운용

(단위: 개)

기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품목 수	108	79	40	39	46	47	41	62	87	80	70	53	58	58	54	55	61	70

자료: 정재호(2013), p. 14에서 재인용

(1차 문헌: 정재완, 「2002년도 탄력관세제도의 운용(Ⅰ)」, 『월간조세』, 2002.1, p.164.

2차 문헌: 정재완, 「한국의 탄력관세제도 운용상 문제점과 정책과제」, 『무역학회지』, 제27권 제4호, 2002, p.243.)

〈표 II-4〉 2002~2009년까지의 할당관세 운용

(단위: 개)

기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연간	상	하	연간	3.9	4.30	7.1	8.30	연간	연간	상	하	상	4.1	8.7	상	5.21	하
품목 수	66	73	85	90	98	100	99	100	96	89	30	39	46	82	120	74	75	48

주: 2004년에는 조류인플루엔자와 광우병 등으로 할당관세 품목 추가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와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002년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 품목과 세율 확정」, 2001.12.13.

「2003년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 운용(안)」, 2002.12.9.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원자재 관세를 인하」, 2003.6.4.

「물가안정 등을 위한 주요 원자재 관세를 인하」, 2004.2.18.

「원유 등 석유류에 대한 관세율인하 적용시한 재연장」, 2005.4.21.

「2006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용(안)」, 2005.12.28.

「2007년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용계획」, 2006.12.29.

「원유 및 휘발유 등 석유제품에 대한 할당관세 운용계획」, 2007.6.12.

「2007년도 하반기 할당관세 운용계획」, 2006.6.15

「2008년 조정관세 및 2008년 상반기 할당관세 운용안」, 2007.12.20.

「2008년 긴급할당관세 시행 및 시장접근물량 증량」, 2008.3.25.

「2008년 제2차 긴급할당관세 시행」, 2008.7.29.

「2009년 상반기 할당관세 시행」, 2008.12.23.

「2009년 하반기 할당관세 시행」, 2009.6.23.

2010년 후반부터 2012년까지는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수시로 변경하면서 정부에서는 할당관세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였다. 2010년 이전까지는 할

할당관세제도는 기초원자재와 중간재 관세율의 인하를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제도를 운용하였지만, 2010년 이후에는 기초원자재와 중간재 관세율의 인하를 통한 간접적인 물가안정이 아닌 보다 직접적인 물가안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에 더 비중을 두고 할당관세제도가 운영되었다. 예를 들어 돼지고기(삼겹살), 배추 등 단기적인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로 인한 물가 상승을 억제하여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할당관세제도를 실시하였다.

〈표 II-5〉 2010~2012년까지의 할당관세 운용

(단위: 개)

기간	2010			2011						2012				
	연간	10.12	11.15	연간/상	1.28	3.7	5.12	7.1	8.11	9.22	연간	4.1	7.1	7.24
품목 수	46	56	57	67 年:45/상:22	75	99	108	111	115	116	103 年:39/3.31: 3/상:61	102	88	90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와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내년에 LNG, LPG 등 46개 품목의 관세율을 기본세율보다 인하 적용(10년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규정안 확정)」, 2009.12.22.

「수입설당에 대한 할당관세 추진」, 2010.8.10.

「배추, 무 등 채소류와 세제 등 생필품에 대해 관세인하」, 2010.10.5.

「물가안정 등을 위해 내년에 원당, 제분용 밀 등 67개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인하여 적용」, 2010.12.21.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무관세 적용」, 2011.1.25.

「구제역 및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분유, 돼지고기, 알루미늄과 등 관세인하 확대」, 2011.2.28.

「구제역, 시 및 국제원자재 가격상승에 대응하여 닭고기, 냉장삼겹살, 젓소 등에 관세인하 확대」, 2011.5.3.

「과일 및 채소류의 수급원활화와 가격안정을 위하여 바나나, 파인애플, 배추 등에 관세인하」, 2011.8.2.

「농축산물 수급원활화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고추, 산란용 병아리, 감자 등에 관세인하 확대」, 2011.9.14

「12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용안 확정」, 2011.12.20.

「삼겹살 및 건고추 할당관세 연장」, 2012.3.20.

「가격안정 및 수급원활화를 위한 하반기 할당관세 시행」, 2012.6.26.

「양파, 대파의 가격안정 및 수급원활화를 위한 할당관세 시행」, 2012.7.17.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인 할당관세제도 활용은 입법기관인 국회의 견제를 받게 되었다. 행정부에서 「관세법」에 의해 할당관세를 운영하지만, 할당관세를 통해 행정부에서 관세율을 빈번하게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견제가 있었다. 따라서 2013년 이후에는 할당관세 적용 품목 수를 2011~2012년에 비해 감소시켰으며, 이전처럼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1년 또는 상하반기 6개월을 기준으로 운용하고 있다. 또한 물기안정 위주의 정책에서 산업경쟁력 지원 차원에서 할당관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옥수수, 대두박 등 사료용 농산물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 할당관세 수입액 규모가 가장 큰 품목은 나프타 및 LPG 제조용 원유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에서도 원유 수입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할당관세 적용 수입액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크다.

〈표 II-6〉 2013년 이후의 할당관세 운용

(단위: 개)

기간	2013		2014		2015		2016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품목수	69	52	50	47	37	39	51	74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2013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적용 규정안 확정」, 2013.1.1.
- 「수급 원활화 및 가격안정을 위한 하반기 할당관세 시행」, 2013.6.25.
- 「2014년 할당관세, 조정관세 운용방안 확정」, 2013.12.31.
- 「2014년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품목 결정」, 2017.6.17.
- 「2015년도 탄력관세(할당·조정) 운영계획」, 2014.12.23.
- 「2015년도 하반기 할당관세 운용」, 2015.6.25.
- 「2016년 탄력관세(할당·조정) 운영계획 확정」, 2015.12.29.
- 「신산업 지원 할당관세 운용 계획 시행」, 2016.7.26.

## 라. 기본관세율 구조 변화

앞서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관세율 제도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관세율 정책은 「관세법」에 명시된 기본관세율 중심으로 정책이 수립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본관세율 정책의 변천을 살펴보고, 이러한 역사적 배경의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관세율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 도출에 반영하고자 한다.

1950년대 이전에는 일제 강점기로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관세율 정책을

펼치지 못했다. 해방 이후 1950년대에는 전쟁 발발과 이에 따른 전후 복구 비용의 발생으로 관세율 정책은 정부 재정수요를 뒷받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우리나라가 1960~1970년대에는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계획을 실시하면서 우리나라 관세율 정책은 이러한 경제개발계획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특정 국내 산업을 보호하거나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관세율 정책이 재정충당 목적에서 산업보호 목적으로 전환되었다.

그 이후 1984년에는 산업보호 목적의 관세율 정책이 시장중심적인 관세율 정책으로 전환하는 큰 변화가 있었다. 그동안 산업별로 다양한 관세율이 적용되었지만, 1984년 이후에는 중심관세율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관세율을 낮추었다. 이러한 관세율 인하정책을 통해 일반 공산품에 부과되던 40~80%의 관세율 수준이 중심관세율인 8%로 대폭 낮아졌다. 기초 원료에 대해서는 비경쟁과 경쟁 품목으로 나뉘서 중심관세율 보다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농산물은 예외를 두어 현재도 농산물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섬유제품에 대해서도 경제력 취약 및 주요국 관세율 수준 등을 감안하여 2000년부터 중심관세율 보다 높은 10~16%의 관세율을 부과하였다.

〈표 II-7〉 공산품의 관세율 구조

(단위: %)

가공도별		1983년	1984년	1988년	1989년	1994년	2000년
중심세율		20	20	20	15	8	8
원료	비경쟁원료	5~30	5~10	5	1~2	1~2	1~2
	경쟁원료		10	10	5	3	3~4
중간재	경쟁력확립(제1차가공품)	20~50	20~30	10~20	10	8(5)	5~8
완제품	일반 공산품	40~80	40~50	20~30	15	8	8
	경쟁력 취약						10~16

자료: 정재호(2003), p.37 〈표 2〉를 재인용

이 당시에 설정된 중심관세율 8%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본관세율 세율 구조에서 8%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이 전체에서 약 67%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다수의 품목에 8%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2008년 이후로도 기본관세율 구조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중심관세율보다 높은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대표적인 품목군은 농산물과 섬유제품이다. 농산물과 섬유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다른 주요국들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음 절에서 논의될 주요국의 관세율 구조에서도 농산물과 섬유제품이 대표적인 고관세 품목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8〉 기본관세율의 세율별 구성

(단위: 개, %)

구간	1998년		2000년		2003년		2008년 이후	
	품목수	비중	품목수	비중	품목수	비중	품목수	비중
0	227	2.0	207	1.9	217	1.9	517	4.4
1~4	850	7.6	691	6.2	694	6.2	701	6.0
5~7	1,104	9.9	687	6.2	732	6.5	698	6.0
8	7,069	63.3	7,647	68.6	7,601	67.8	7,791	67.0
9~12	430	3.8	484	4.3	519	4.6	503	4.3
13~19	599	5.4	532	4.8	534	4.8	559	4.8
20~29	453	4.1	380	3.4	385	3.4	514	4.4
30~39	173	1.5	334	3.0	338	3.0	193	1.7
40~49	77	0.7	69	0.6	69	0.6	90	0.8
50 이상	190	1.7	118	1.1	129	1.1	58	0.5

주: 종량세 적용품목을 제외한 종가세 품목들만을 대상으로 계산

자료: 정재호(2008), p.42 〈표 II-6〉을 이용하여 2008년으로 연도 변경 후 재인용

## 2. 주요국의 관세율 구조와 변화

### 가. 관세율 구조

다른 국가들과의 관세율 구조를 비교하기 위해 WTO에서 제공하는 실행 세율(Most Favored Nation)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실행세율 구조를 미국, EU, 일본, 중국, 호주의 실행세율 구조와 비교해 보자.

우선 우리나라 실행세율(MFN) 자료를 보면, 8%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이 약 37.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앞서 분석한 자료에서는 기본관세율 자체를 가지고 분석하였지만, 이번에는 관세율 적용 우선순위에 따라 실행세율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하였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실행세율에는 기본관세율이 8%라도 WTO 양허세율이 0%이면, 0%인 WTO 양허세율이 실행세율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일부 농산물의 경우<sup>2)</sup>에는 예를 들어 기본관세율이 7%인데도 불구하고 WTO 양허세율이 887.4%인 경우 관세율 적용 우선순위에 따라 실행세율이 887.4%가 된다.<sup>3)</sup> 이런 이유로 50% 이상의 높은 관세율이 차지하는 비중이 기본관세율에서 보다 실행세율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sup>4)</sup>

분석 대상인 미국, EU, 일본, 중국, 호주의 실행세율 구조를 비교해 보면 우선 가장 특징적인 국가는 호주로, 호주는 5% 단일 관세율 구조를 적용하고 있었다. 호주에서는 절반(52.0%) 정도의 품목에 대해 5%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절반(47.6%) 정도의 품목에 대해 무세를 적용하고 있다.<sup>5)</sup>

주요국들의 무세(0%) 비중을 비교해 보면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호주가 47.6%로 거의 절반 정도에 무세를 적용하고 있어 가장 무세 비중이 높았고,

2) 농림축산물양허관세(제50조3항 단서)

3) HS 0714.10.2020 매니옥 펠릿

4) HS 0714.10.2020 매니옥 펠릿는 현실적으로 WTO 양허세율이 887.4%이지만 일정 물량 이하에 대해서는 더 낮은 3%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또한 할당관세 0%가 부과되고 있어 실제 적용되는 관세율은 할당관세 0%이지만 관세율표 상으로는 887.4%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실제 적용되지 않는 관세율로 인해 우리나라 명목상 평균 관세율만 높이고 있다.

5) 호주는 11개 품목에 대해 4%의 관세를 그리고 17개 품목에 대해 종량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다음으로 일본이 41.8%, 미국 36.6%, EU 25.1%였다. 우리나라는 16%이다.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비중이 낮아 8.4%였다.<sup>6)</sup>

〈표 II-9〉 주요국 실행세율의 세율별 구성 비중(2016년)

(단위: %)

구간	한국	미국	EU	일본	중국	호주
0	16.0	36.6	25.1	41.8	8.4	47.6
1~4	5.8	22.5	28.6	18.9	9.3	0.2
5~7	22.0	16.2	16.2	13.3	26.4	52.0
8	36.9	2.5	6.0	2.9	6.4	-
9~12	4.3	5.2	7.5	8.7	24.4	-
13~19	4.8	3.8	4.0	2.4	14.3	-
20~29	5.3	1.5	1.7	4.0	8.0	-
30~39	1.5	0.3	0.1	1.0	1.5	-
40~49	1.1	0.0	0.0	0.1	0.2	-
50 이상	1.5	0.1	0.1	0.1	0.4	-
총량세	0.8	11.2	10.6	6.8	0.5	0.3

주: 1. 중국은 가장 최신인 2015년 자료 사용

2. 호주에서 무세 이외에 11개 품목에 대해 4%의 관세를 그리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 5%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3. 미국에서는 담배에 350%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4. 일본은 소고기(불살, 두육) 등에 50% 관세 부과

5. 중국은 종자, 포도주 등에 65%의 관세 부과

자료: <http://tariffdata.wto.org/Default.aspx?culture=en-US>에 있는 관세율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접속일: 2017.7.4.)

또 다른 특징으로 미국과 EU에서는 종량세 비율이 10%를 넘어 각각 약 11.2%와 약 10.6%였으며, 일본은 약 6.8%였다. 우리나라의 종량세 비율이 0.8%인 것에 비하면 매우 많은 품목에 종량세를 부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TO 차원에서 종량세 적용을 제한하고 종량세를 종가세로 전환하는 것을

6) 정확하게 말해 무세라고 명명한 품목 중에서는 일부 0.1~0.9%의 관세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4개, 미국 51개, EU 7개이고, 일본, 중국, 호주는 모두 0%이다.

권장하고 있는데, 여전히 미국과 EU, 일본에서는 종량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중국은 여전히 관세율이 높은 수준이었지만, 미국, EU, 일본 등은 10%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렇지만 이들 국가에서도 50%가 넘는 고관세 품목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해 50%가 넘는 고관세 품목 비중이 높은 것은 앞서 설명하였듯이 WTO 양허세율상에서 시장 접근물량 외 세율이 수치상으로도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11-10〉 주요국 실행세율의 세율별 품목 수 및 비중(2016년)

(단위: 개 %)

구간	한국		미국		EU		일본		중국		호주	
	품목수	비중	품목수	비중	품목수	비중	품목수	비중	품목수	비중	품목수	비중
0	1,963	16.0	3,923	36.6	2,367	25.1	3,876	41.8	699	8.4	2,943	47.6
1~4	714	5.8	2,407	22.5	2,692	28.6	1,750	18.9	772	9.3	11	0.2
5~7	2,688	22.0	1,741	16.2	1,527	16.2	1,235	13.3	2,190	26.4	3,213	52.0
8	4,518	36.9	267	2.5	565	6.0	273	2.9	534	6.4	0	-
9~12	525	4.3	556	5.2	710	7.5	809	8.7	2,021	24.4	0	-
13~19	589	4.8	410	3.8	377	4.0	220	2.4	1,187	14.3	0	-
20~29	648	5.3	161	1.5	160	1.7	372	4.0	662	8	0	-
30~39	179	1.5	30	0.3	12	0.1	94	1.0	125	1.5	0	-
40~49	140	1.1	4	0.0	1	0.0	6	0.1	19	0.2	0	-
50 이상	185	1.5	13	0.1	5	0.1	5	0.1	37	0.4	0	-
총량세	94	0.8	1,204	11.2	998	10.6	626	6.8	39	0.5	17	0.3

주: 1. 중국은 가장 최신인 2015년 자료 사용  
 2. 호주에서 무세 이외에 11개 품목에 대해 4%의 관세를 그리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 5%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3. 미국에서는 담배에 350%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4. 일본은 스고기(불살, 두육) 등에 50% 관세 부과  
 5. 중국은 전자, 포도주 등에 65%의 관세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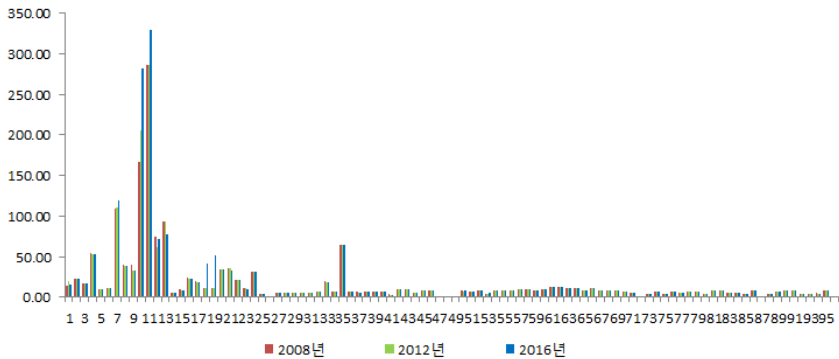
자료: <http://tariffdata.wto.org/Default.aspx?culture=en-US>에 있는 관세율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검색일자: 2017.7.4)

## 나. 관세율 변화

주요 국가들과의 관세율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2008년, 2012년, 그리고 2016년 관세율 자료를 이용하여 HS 2단위로 단순 평균 관세율을 구해 비교해 보았다.<sup>7)</sup> 다른 주요 국가들의 관세율 변화를 보기 이전에 우리나라 관세율 변화를 살펴보면,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 공산품인 HS 25류 이하의 관세율은 거의 변화가 없고, 일부 농산물 부문에서 관세율 변화가 있는 것처럼 [그림 II-1]에서는 나타나고 있지만 WTO에 보고하는 일부 농산물 관세율이 기본관세율에서 WTO 양허세율로 변경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실질적인 관세율 수준 변화는 아니었다. 우리나라 관세율 구조를 보면 농산물에 대해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1] 한국 HS 2단위별 평균 관세율

(단위: %)



자료: <https://tao.wto.org>(접속일: 2017.10.12.)

미국, EU, 일본, 그리고 중국의 관세율 수준 변화를 비교해 보면 관세율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국가는 없었다. 미국, EU, 그리고 일본은 전반적으로 관세율 수준이 낮기 때문에 관세율을 낮출 여력은 별로 크지 않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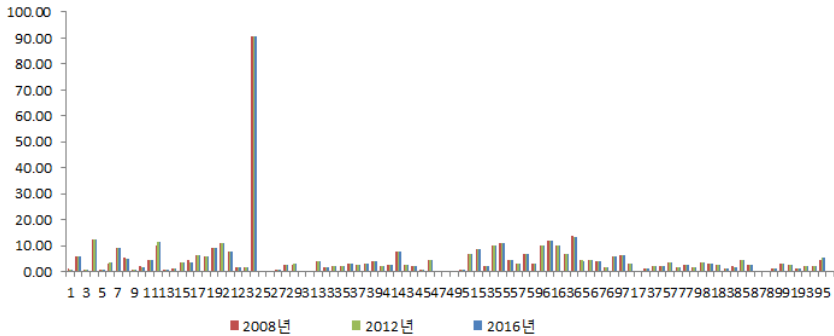
7) HS 품목수는 연도별로 상이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HS 품목수는 약 13,000여개이기 때문에 개별 품목별로의 비교는 불가능하여 HS 01~99까지 HS 2단위별로 단순 평균 관세율을 비교하였다. HS 2단위별 자세한 품목명은 부록 참고.

WTO 협정으로 인해 관세율을 높이는 것도 여의치 않다. 이들 국가들과 달리 중국은 관세율 수준이 높은 편이라 관세율을 조정할 여력은 있고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율 수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중국에서도 관세율을 조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미국과 EU에서는 담배(HS 24류)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EU, 일본에서는 섬유류(HS 50~65류)에 대해 다른 공산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그림 II-2] 미국 HS 2단위별 평균 관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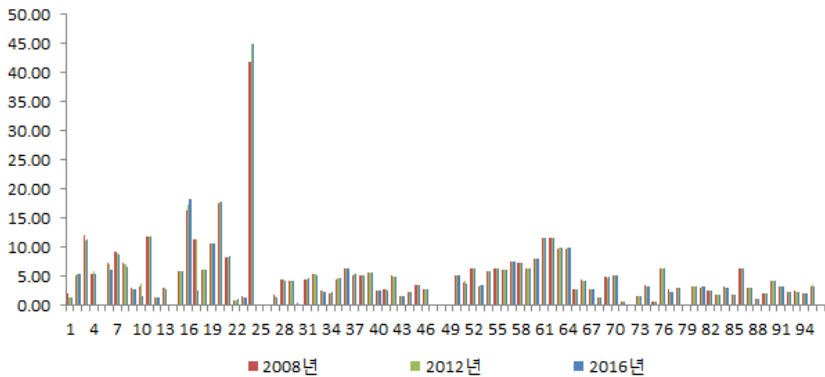
(단위: %)



자료: <https://tao.wto.org>(접속일: 2017.10.12.)

[그림 II-3] EU HS 2단위별 평균 관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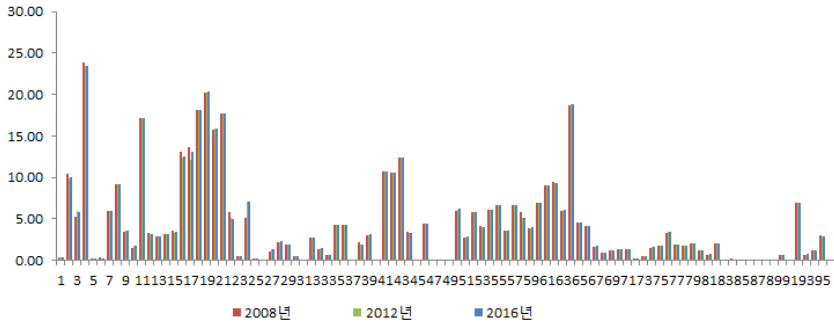
(단위: %)



자료: <https://tao.wto.org>(접속일: 2017.10.12.)

[그림 II-4] 일본 HS 2단위별 평균 관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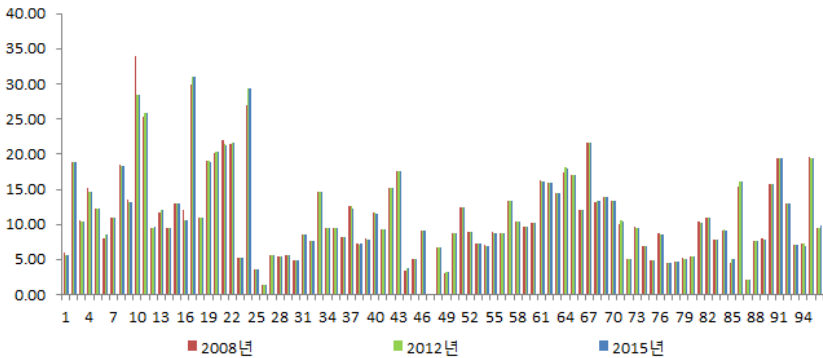
(단위: %)



자료: <https://tao.wto.org>(접속일: 2017.10.12.)

[그림 II-5] 중국 HS 2단위별 평균 관세율

(단위: %)



자료: <https://tao.wto.org>(접속일: 2017.1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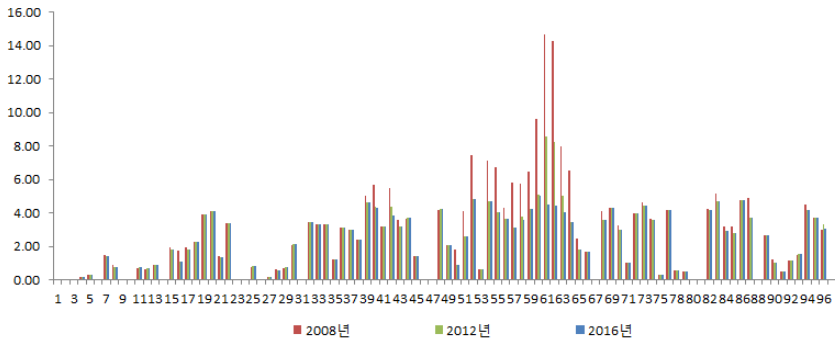
주요 국가들 중에서 관세율을 낮춘 국가는 호주가 유일하였다. 호주는 우리나라 등 다른 국가들과 달리 농산물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공산품 특히 섬유류에 대해서는 농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유지하였다. 섬유류에 대해 고관세 정책을 펼치고 있는 미국, EU, 일본 등과 유사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다. 호주는 섬유류에 대해 최고 17.5%의 관세율을 부과하던 것을 2010년부터는 10%로 낮추고 2005년부터는 5%로 낮추는 관세율 인하정책을 추진하였다.<sup>8)</sup> 결과적으로

로 호주의 관세율 구조는 2009년까지 0, 4, 5, 7.5, 10, 17.5%였는데, 2010년 이후에는 0, 4, 5, 10%로, 그리고 2015년 이후에는 0, 4, 5%로 단순화하였다.

김한성(2013)에 의하면 호주는 1980년대 후반부터 관세를 대폭 인하하기 시작하여, 1996년에는 자동차와 섬유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 5%의 관세율을 적용하였으며<sup>8)</sup>, 이후 2000년대에는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섬유류의 관세율도 5%로 낮추어 거의 단일 관세율 구조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그림 II-6] 호주 HS 2단위별 평균 관세율

(단위: %)



자료: <https://tao.wto.org>(접속일: 2017.10.12.)

이 밖에 우리나라처럼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국가들을 선정하여 관세율 변화를 살펴보았다. FTA를 가장 많이 체결한 국가(지역)는 앞서 보았던 EU였고, 칠레도 다수의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였다. 칠레는 그동안 6% 단일 관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다수의 FTA가 체결된 현재까지도 6% 단일 관세율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중국,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국가(지역)와 FTA를 체결하였다. 캐나다 역시도 다수의 FTA가 체결되는 등의 관세 환경이 바뀌었지만, 뚜렷한 관세율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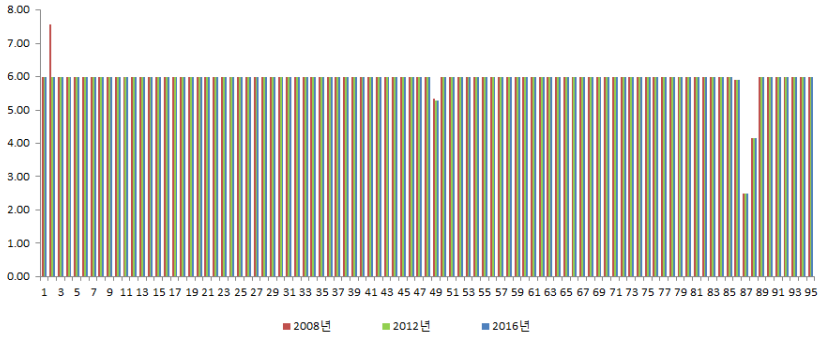
8) [https://www.aph.gov.au/Parliamentary\\_Business/Bills\\_Legislation/bd/bd0405/05bd001](https://www.aph.gov.au/Parliamentary_Business/Bills_Legislation/bd/bd0405/05bd001)  
(접속일: 2017.09.27.)

9) 김한성(2013), p.18.

개편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캐나다에서도 섬유류에 대한 관세율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7] 칠레 HS 2단위별 평균 관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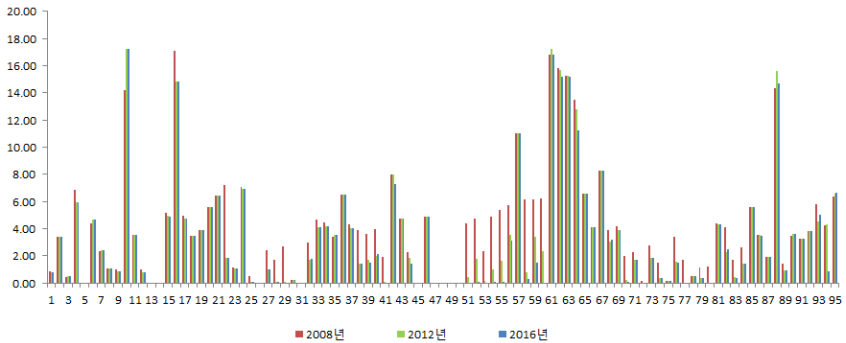
(단위: %)



자료: <https://tao.wto.org>(접속일: 2017.10.12.)

[그림 II-8] 캐나다 HS 2단위별 평균 관세율

(단위: %)



자료: <https://tao.wto.org>(접속일: 2017.10.12.)

〈표 II-11〉 FTA 주요국 체결 현황

FTA 체결국	
EU (38개)	가나, 남아프리카, 노르웨이, 레바논, 리히텐슈타인, 멕시코, 모로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보스니아, 세르비아, 스위스, 시리아, 아이슬란드, 알바니아, 알제리, 에콰도르, 요르단, 우크라이나, 유고슬라비아, 이스라엘, 조지아, 칠레, 카메룬, 캐나다, 코트디부아, 콜롬비아, 튀니지, 파푸아뉴기니, 팔레스타인, 페루, 피지, 한국, 헤르체코비나, Eastern and Southern Africa States Interim EPA, CARIFORUM States EPA, EU 해외지역 및 영토, Eurasian Economic Union EFTA
칠레 (22개)	과테말라, 니카라과, 말레이시아, 멕시코, 미국, 베트남,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일본, 중국, 캐나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태국, 터키, 파나마, 페루, 한국, 호주, 홍콩, EFTA, EU
중국 (14개)	뉴질랜드, 마카오, 스위스, 싱가포르, 아이슬란드, 칠레, 코스타리카, 파키스탄, 페루, 한국, 호주, 홍콩, ASEAN, EFTA
일본 (15개)	말레이시아, 멕시코, 몽고, 베트남, 브루나이, 스위스,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칠레, 태국, 페루, 필리핀, 호주, ASEAN
미국 (13개)	도미니카, 모로코, 바레인, 싱가포르, 오만, 요르단, 이스라엘, 칠레, 콜롬비아, 파나마, 페루, 한국, 호주
캐나다 (12개)	온두라스, 요르단,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페루, 한국, EFTA, EU
호주 (11개)	아세안, 칠레, 중국,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미국

자료: <http://rtais.wto.org/UI/PublicAllIRTAList.aspx>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접속일: 2017.09.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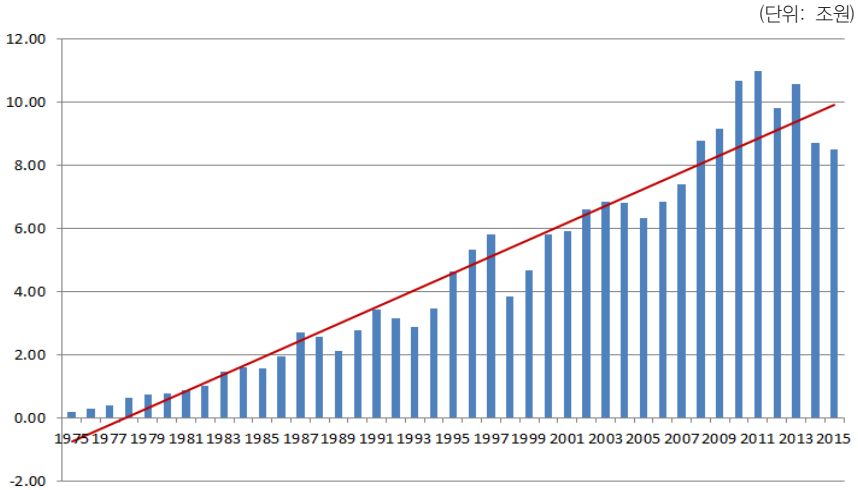
### 3. 관세 세수입 규모

#### 가. 우리나라 관세 세수

앞서 설명하였듯이,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까지 꾸준히 관세율을 인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2000년 이후에는 동시다발적인 FTA 정책을 추진하면서 현재까지 총 15개의 FTA를 발효하여 총 52개 국가에 대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FTA 양허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관세율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관세 세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관세율 인하로 인해 수입이 증가하면서 또한 경제 성장에 따른 수입 증가 효과가 합쳐지면서 오히려 관세 세수는 그동안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II-9] 관세 세수 규모 추이



자료: kosis, e-나라지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작성

1975년~1991년 관세 세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3&tblId=TX\\_13301\\_A065&conn\\_path=13](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3&tblId=TX_13301_A065&conn_path=13)(접속일: 2017.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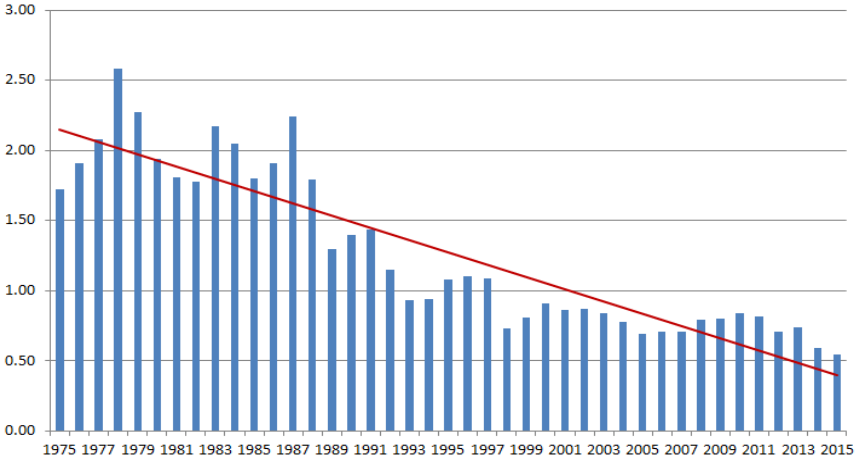
1992년~2016년 관세 세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0&tblId=TX\\_11007\\_A785&conn\\_path=1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0&tblId=TX_11007_A785&conn_path=12)(접속일: 2017.6.8.)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성장 규모와 비교해 보면 GDP 대비 관세 세수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는 관세 세수 증가가 경제 성장 속도만큼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지속적인 관세율 인하와 그 이후 동시다발적인 FTA 발효에 따른 관세율 인하가 반영된 결과로 여겨진다.

[그림 II-10] GDP 대비 관세 수입비중

(단위: %)



자료: kosis, e-나라지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작성

1975년~1991년 관세 세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3&tblId=TX\\_13301\\_A065&conn\\_path=13](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3&tblId=TX_13301_A065&conn_path=13)(접속일: 2017.6.8.)

1992년~2016년 관세 세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0&tblId=TX\\_11007\\_A785&conn\\_path=1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0&tblId=TX_11007_A785&conn_path=12)(접속일: 2017.6.8.)

1975년~2016년 GDP: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2736](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2736)(접속일: 2017.6.8.)

## 나. 주요국의 관세 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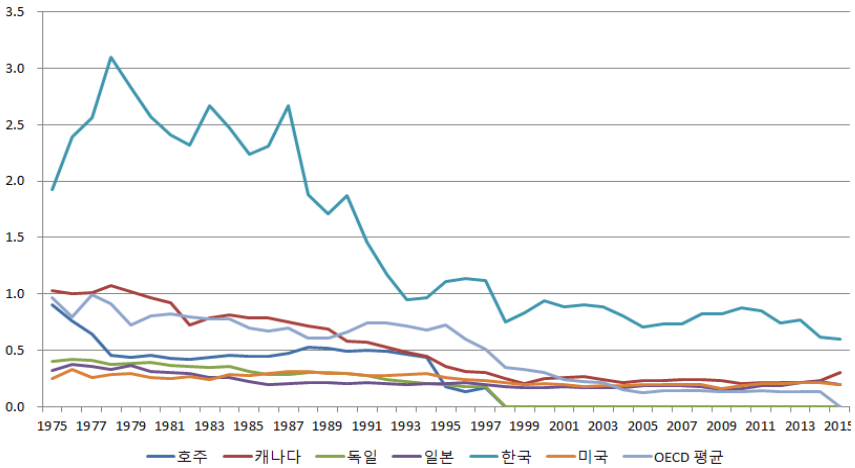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GDP 대비 관세 세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들의 GDP 대비 관세 세수 비중을 우리나라 것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OECD 회원국에는 다수의 EU 회원국들이 포함되어 있어 OECD 평균이 낮게 나타난 측면이 있다. EU 회원국들의 경우에는 EU 내 회원국들 간의 교역 비중이 높고 이러한 EU 내 회원국들 간의 교역에서는 관세 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비회원국들과의 교역에 대한 관세 세수도 대부분 개별 국가가 아닌 EU로 귀속된다. 따라서 EU 회원국들의 관세 세수 비중이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OECD 평균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sup>10)</sup> 그럼

에도 미국과 일본을 보면, 지난 1975년 이후 GDP 대비 관세 세수 비중이 0.3~0.2%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호주와 캐나다도 GDP 대비 관세 세수 비중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OECD 평균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림 II-11] 주요국의 GDP 대비 관세수입 비중

(단위: %)



주: OECD 평균은 2014년 자료가 가장 최신 자료임.

자료: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REV#>에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그래프 작성 (접속일: 2017.6.8.)

10) 그림에서 EU 회원국의 예시로 독일을 제시하였음.

---

## Ⅲ. FTA 확대에 따른 관세율 구조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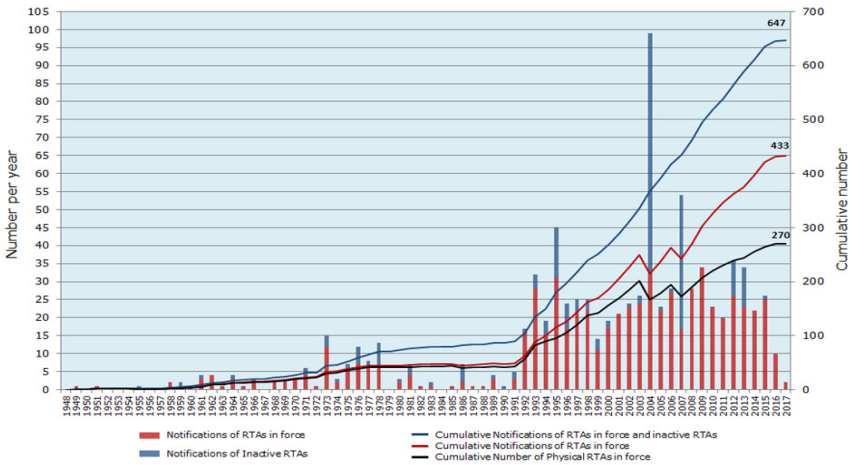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의 FTA 발효를 시작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다수의 FTA를 체결하였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동시다발적으로 발효된 FTA 확대가 우리나라 관세율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에 수입된 모든 품목 자료를 활용해서 이들 품목들이 우리나라로 수입될 때 적용한 관세율을 분석하여, FTA별, 산업별로 협정세율이 어느 정도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향후 FTA 협정세율이 우리나라 관세율 체계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 1. 우리나라 FTA 현황

#### 가. 전 세계 FTA 추세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FTA 체결이 급격히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을 보면 1990년대 초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무역협정에는 FTA뿐만 아니라 관세동맹(Customs Union) 등 다양한 형태의 양자 또는 다자간 무역협정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III-1]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 현황



주: 협정발효년도를 기준으로 GATT/WTO에 통보된 협정

자료: WTO 홈페이지,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region\\_e/reglac\\_e.htm](https://www.wto.org/english/tratop_e/region_e/reglac_e.htm)(접속일: 2017.4.12.)

## 나. 우리나라 FTA 발효 및 협상 현황

이처럼 1990년대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다수의 국가들 간의 지역무역협정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우리나라는 WTO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다자간 관세인하 및 무역협정에 중심을 두면서 양자 간 지역무역협정에는 소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벗어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1999년부터 칠레와 FTA 협상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한·칠레 FTA를 2004년 4월 발효하였다.

현재 2017년 8월 기준으로 15개의 FTA가 발효되어 총 52개 국가와의 FTA가 발효 중에 있다.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등과의 FTA가 발효되었다.<sup>11)</sup>

그리고 추가로 우리나라와 FTA 협상이 진행 중인 협상으로는 한·중·일 FTA, ASEAN 10개국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이 참여해서 다자

11) 자료: FTA강국, KOREA, [www.fta.go.kr](http://www.fta.go.kr)(접속일: 2017.4.12.)

간 협상이 진행 중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이하 RCEP), 한·에콰도르 SECA, 한·이스라엘 FTA 등이 있다.<sup>12)</sup>

〈표 III-1〉 우리나라의 FTA 발효 현황

FTA	발효 시기	FTA	발효 시기
한·칠레 FTA	2004년 4월 1일	한·터키 FTA	2013년 5월 1일
한·싱가포르 FTA	2006년 3월 2일	한·호주 FTA	2014년 12월 12일
한·EFTA FTA	2006년 9월 1일	한·캐나다 FTA	2015년 1월 1일
한·ASEAN FTA	2007년 6월 1일	한·뉴질랜드 FTA	2015년 12월 20일
한·인도 CEPA	2010년 1월 1일	한·중국 FTA	2015년 12월 20일
한·EU FTA	2011년 7월 1일	한·베트남 FTA	2015년 12월 20일
한·페루 FTA	2011년 8월 1일	한·콜롬비아 FTA	2016년 7월 15일
한·미 FTA	2011년 8월 1일		

자료: FTA 강국 KOREA, 우리나라의 FTA 현황,

<http://www.fta.go.kr/main/situation/kfta/ov/>(접속일: 2017.4.12)

## 2. 주요 FTA별 관세율 구조 현황 및 특징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15개의 FTA가 발효 중에 있다. 현재 발효 중인 15개의 FTA들 중에서 교역규모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 FTA가 발효된 기간이 분석 가능한 정도의 기간을 가진 FTA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런 기준에 의해 한·미 FTA, 한·EU FTA 그리고 한·아세안 FTA를 중심으로 관세율 구조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한다.<sup>13)</sup>

12) 자료: FTA강국, KOREA, [www.fta.go.kr](http://www.fta.go.kr)(접속일: 2017.4.12.)

13) 한·호주 FTA는 2014년 12월 12일에 그리고 한·캐나다 FTA는 2015년 1월 1일에 발효되어 2015년 자료와 2016년 자료만 비교 가능하고, 한·뉴질랜드 FTA와 한·중 FTA는 2015년 12월 20일에 발효되어 2016년 자료만 존재해서 비교 가능한 기간이 너무 짧아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가. 한·미 FTA

### 1) 현황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FTA는 2012년 3월 15일부터 발효되었다. 2012년부터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FTA가 발효되면서 전체적으로 기본관세율로 수입되던 품목들이 한·미 FTA 세율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난다. 2011년까지 미국에서 수입된 품목의 약 60% 정도가 기본관세율로 수입되었었는데, 2012년 이후에는 그 비중이 약 30% 정도로 하락하였다.

그리고 일부 WTO 세율과 할당관세율로 수입되던 품목들도 한·미 FTA 세율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공산품과 농산물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한다.

〈표 III-2〉 미국 수입품 적용 관세율별 수입액 비중

(단위: %)

연도	FTA 세율	기본세율	WTO 세율	할당관세	기타	합계
2007	-	57.1	37.2	4.9	0.9	100.0
2008	-	57.5	30.4	10.9	1.2	100.0
2009	-	62.3	29.9	6.2	1.6	100.0
2010	-	62.0	30.6	5.6	1.8	100.0
2011	-	61.3	28.7	7.8	2.1	100.0
2012	18.6	53.5	23.6	3.6	0.7	100.0
2013	37.6	34.8	24.7	2.0	0.9	100.0
2014	36.0	34.5	24.1	4.5	0.8	100.0
2015	38.7	33.1	23.8	3.5	0.8	100.0
2016	39.8	29.7	24.6	4.7	1.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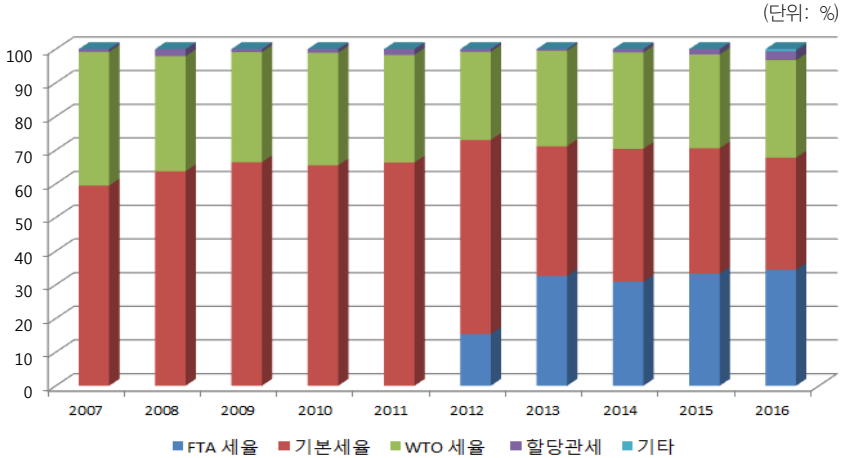
주: 기타 관세율로는 잠정관세, 조정관세, 덤핑방지관세, WTO 개발도상국 간의 양허관세,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등을 포함함.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미국에서 수입되는 공산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변화는 앞서 살펴본 미국 전체 수입되는 품목에 적용되는 관세율 변화와 거의 유사하다. 그 이유는 전체 수입액에서 공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농산물에 비해 월등히 많기 때

문이다. 따라서 앞서 보았듯이,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기본관세율로 수입되던 공산품들이 한·미 FTA 협정세율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난다. 2011년까지 미국에서 수입된 공산품의 약 60% 이상이 기본관세율로 수입되었었는데, 2012년 이후에는 그 비중이 약 30% 후반 정도로 하락하였다.

[그림 III-2] 미국 공산품 적용 관세율별 수입액 비중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III-3> 미국 공산품 적용 관세율별 수입액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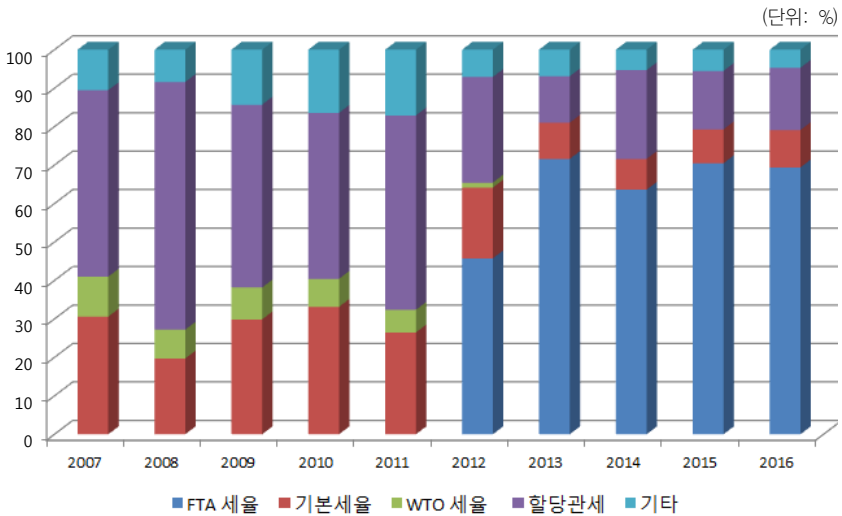
연도	FTA 세율	기본세율	WTO 세율	할당관세	기타	합계
2007	-	59.5	39.7	0.8	0.0	100.0
2008	-	63.7	34.2	2.1	0.0	100.0
2009	-	66.4	32.7	0.9	0.0	100.0
2010	-	65.5	33.4	1.1	0.0	100.0
2011	-	66.3	32.0	1.7	0.0	100.0
2012	15.4	57.6	26.2	0.8	0.0	100.0
2013	32.6	38.5	28.3	0.5	0.0	100.0
2014	30.9	39.5	28.6	1.0	0.0	100.0
2015	33.3	37.3	27.9	1.6	0.0	100.0
2016	34.5	33.3	29.0	2.7	0.6	100.0

주: 기타 관세율은 잠정관세, 조정관세, 덤핑방지관세, WTO 개발도상국 간의 양허관세,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등을 포함함.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한·미 FTA 발효 이후 농산물에 적용되는 관세율 변화는 공산품보다 더 특징적이다. 공산품과 달리 농산물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한·미 FTA 협정 세율이 적용되는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미 FTA 발효 이전에 기본관세율과 할당관세율로 수입되는 품목들의 상당수의 농산물이 한·미 FTA 협정세율로 전환되었다. 결과적으로 약 70% 정도의 미국산 농산물이 한·미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수입되고 있으며, 그 나머지 농산물은 할당관세율 적용이 약 15%, 기본관세율 적용이 약 10% 등이었다.

[그림 III-3] 미국 농산물 적용 관세율별 수입액 비중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III-4> 미국 농산물 적용 관세율별 수입액 비중

(단위: %)

연도	FTA 세율	기본세율	WTO 세율	할당관세	기타	합계
2007	-	30.6	10.4	48.5	10.5	100.0
2008	-	19.7	7.5	64.4	8.4	100.0
2009	-	29.9	8.3	47.6	14.3	100.0
2010	-	33.1	7.3	43.1	16.4	100.0
2011	-	26.5	5.9	50.6	17.1	100.0

〈표 III-4〉의 계속

(단위: %)

연도	FTA 세율	기본세율	WTO 세율	할당관세	기타	합계
2012	45.8	18.4	1.3	27.5	7.1	100.0
2013	71.6	9.4	0.0	12.1	6.9	100.0
2014	63.6	8.0	0.0	23.1	5.3	100.0
2015	70.4	8.8	0.0	15.2	5.5	100.0
2016	69.4	9.7	0.0	16.2	4.7	100.0

주: 기타 관세율로는 잠정관세, 조정관세, 덤핑방지관세, WTO 개발도상국 간의 양허관세,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등을 포함함.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 산업별 현황

이번에는 산업별로 미국에서 수입되는 품목들에 대해 적용되는 관세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자. 본고에서 사용한 산업 분류 기준은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분류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개별 산업 중에서 한·미 FTA 협정세율의 적용 비중이 절반이 넘는 산업으로는 음식료품 약 76.8%, 비금속광물제품 65.6%, 화학제품 63.1%, 기타 제조업 약 61.6%였다. 그리고 섬유 및 가죽제품도 48.8%가 한·미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어 거의 절반 정도가 한·미 FTA 협정세율의 혜택을 받았다.

앞서 농산물에 대한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를 산업별로 보면 농림수산물과 음식료품 산업에서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 비중이 2016년 각각 약 46.5%와 약 76.8%로 매우 높은 비중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농림수산품의 경우에는 여전히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비중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 및 석탄제품도 여전히 할당관세로 수입되는 품목의 비중이 높았다. 이는 나프타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무세의 할당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기본관세율이나 WTO 세율이 적용되는 비중이 높은 산업군으로는 우선 기본관세율의 경우에는 광산품이 약 91.4%, 금속제품 69.9%, 제1차 금속제품 61.7%, 인쇄 및 복제 60.7%, 수송장비 54.1%로 절반 이상이 여전히 한·

미 FTA 세율이 아닌 기본관세가 적용되어 수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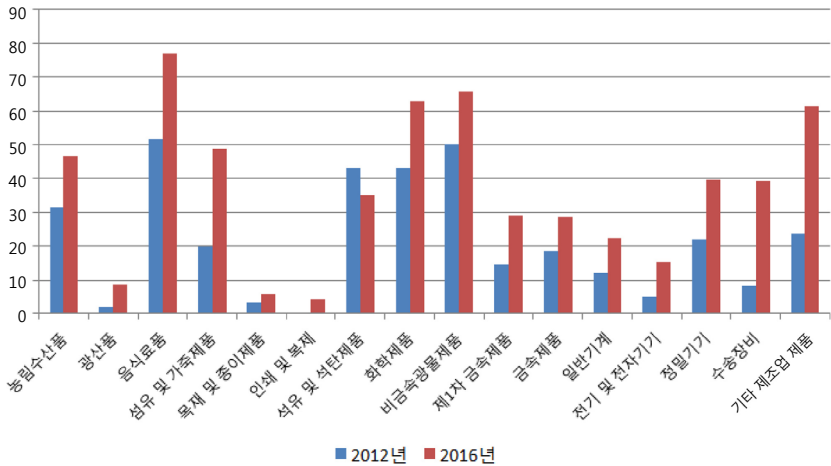
WTO 세율이 적용되는 비중이 높은 산업군으로는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이 WTO 세율로 수입되는 비중이 약 66.2%로 절반을 넘었는데, 이는 ITA 협정에 의해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원산지를 증명해야 하는 FTA 협정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 밖에 목재 및 종이제품의 약 49.1%가 WTO 세율을 적용받아 수입되고 있었다.

자동차 등을 포함하고 있는 수송장비 산업의 경우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 비중이 2016년에 39.3%로 2012년 8.3%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전체 산업 평균을 비교해 보면 한·미 FTA 발효 초기인 2012년에는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비중이 21.9%였지만, 2016년에는 36.9%로 증가하였다. 향후 기술할 한·EU FTA와 한·아세안 FTA와 비교할 때 한·미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는 비중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제일 낮았다. 참고로 한·EU FTA는 발효 초기인 2011년에는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비중이 17.7%였지만 2016년에는 52.2%로 증가하였고, 한·아세안 FTA는 2007년 8.8%에서 2016년에는 47.6%로 증가하였다.

[그림 III-4] 산업별 적용 관세율별 미국 수입액 비중(FTA 세율)

(단위: %)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III-5〉 산업별 적용 관세율별 미국 수입액 비중(2012년)

(단위: %)

구분	FTA 세율	기본세율	WTO 세율	할당관세	기타	합계
농림수산물	31.4	20.4	0.1	41.9	6.1	100.0
광산품	2.1	94.8	-	3.1	-	100.0
음식료품	51.6	33.9	2.2	5.8	6.5	100.0
섬유 및 가죽제품	20.0	75.3	4.7	0.0	-	100.0
목재 및 종이제품	3.5	37.1	59.2	0.0	0.2	100.0
인쇄 및 복제	0.0	99.7	0.3	-	-	100.0
석유 및 석탄제품	42.9	25.9	3.6	27.6	-	100.0
화학제품	42.9	20.8	34.5	1.8	0.0	100.0
비금속광물제품	50.5	39.9	9.1	0.5	-	100.0
제1차 금속제품	14.7	74.6	9.1	1.6	-	100.0
금속제품	18.4	76.7	5.0	-	-	100.0
일반기계	12.3	63.0	24.6	0.0	-	100.0
전기 및 전자기기	5.1	26.0	68.9	-	-	100.0
정밀기기	22.1	39.7	38.2	-	-	100.0
수송장비	8.3	86.5	5.2	-	-	100.0
기타 제조업 제품	23.8	61.0	15.2	-	-	100.0
평균	21.9	54.7	18.7	8.2	3.2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III-6〉 산업별 적용 관세율별 미국 수입액 비중(2016년)

(단위: %)

구분	FTA 세율	기본세율	WTO 세율	할당관세	기타	합계
농림수산물	46.5	9.7	0.0	36.6	7.2	100.0
광산품	8.6	91.4	-	-	-	100.0
음식료품	76.8	20.2	0.1	0.3	2.5	100.0
섬유 및 가죽제품	48.8	39.5	11.1	0.6	-	100.0
목재 및 종이제품	5.9	45.0	49.1	-	0.0	100.0
인쇄 및 복제	4.5	60.7	34.9	-	-	100.0
석유 및 석탄제품	34.8	2.3	0.4	54.9	7.6	100.0

〈표 III-6〉의 계속

(단위: %)

구분	FTA 세율	기본세율	WTO 세율	할당관세	기타	합계
화학제품	63.1	16.4	20.0	0.4	0.1	100.0
비금속광물제품	65.6	31.7	2.7	-	-	100.0
제1차 금속제품	29.0	61.7	9.3	-	-	100.0
금속제품	28.6	69.9	1.5	-	-	100.0
일반기계	22.5	36.4	39.8	0.7	0.5	100.0
전기 및 전자기기	15.5	18.2	66.2	-	0.1	100.0
정밀기기	39.5	26.3	33.3	-	0.9	100.0
수송장비	39.3	54.1	6.6	-	0.0	100.0
기타 제조업 제품	61.6	23.2	15.2	-	0.0	100.0
평균	36.9	37.9	19.3	15.6	1.9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번에는 미국 수입품목들에 적용된 관세율이 산업별로 어떻게 분포해 있는지를 살펴보자. 2016년 기준으로 한·미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어 수입된 품목들 중 화학제품의 비중이 28.4%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음식료품이 18.6%, 수송장비 11.9%였다. 이들 3개 산업군이 전체 한·미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품목들의 약 58.9%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기계 약 9.4%, 농림수산물 약 7.7%, 정밀기기 약 6.8% 등이 있으며, 이들 6개 산업군까지 포함하여 전체의 약 82.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화학제품의 경우에는 2012년에는 그 비중이 약 33.5%였는데, 다른 산업들의 수입품목들도 한·미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기본관세율로 수입되는 품목들은 수송장비가 약 22.2%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일반기계 약 20.5%, 화학제품 약 10.0%였다. 이들 3개 산업군이 전체 기본관세로 수입되는 품목들의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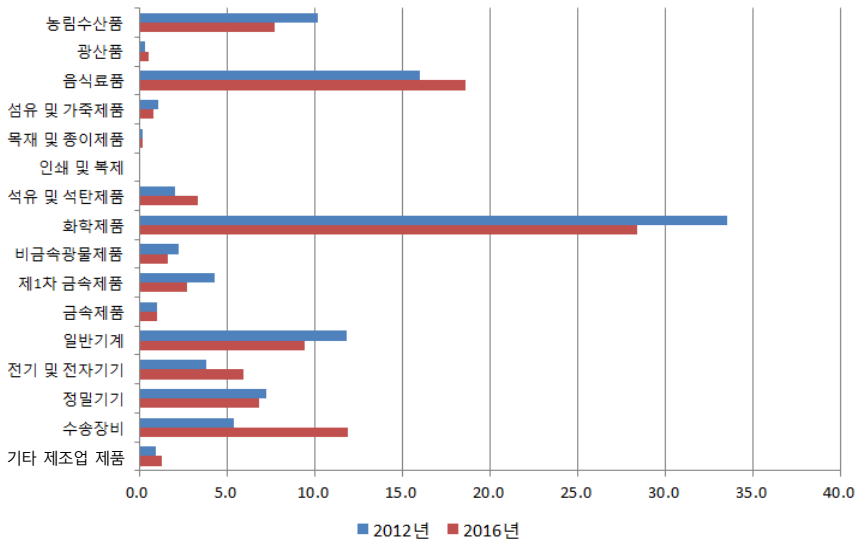
할당관세로 수입되는 품목들은 농림수산물과 석유 및 석탄제품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는 농림수산물에 대해 할당관

세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석유 및 석탄제품의 경우에는 나프타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할당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WTO 세율로 수입되는 비중을 살펴보면,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이 40.8%로 가장 높다. 이는 앞서 언급한 대로 ITA 협정에 의해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원산지를 증명해야 하는 FTA 협정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다음으로 일반기계 26.7%, 화학제품 14.5%로 이들 3개 산업군이 전체 WTO 세율로 수입되는 비중의 약 82.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III-5] 산업별 적용 관세율별 미국 수입액 비중(FTA 세율)

(단위: %)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III-7〉 산업별 적용 관세율별 미국 수입액 비중(2012년)

(단위: %)

구분	FTA 세율	기본세율	WTO 세율	할당관세	기타
농림수산물	10.2	2.4	0.0	71.0	49.5
광산물	0.3	5.5	-	2.6	-
음식료품	16.0	3.7	0.5	9.3	50.1
섬유 및 가죽제품	1.1	1.4	0.2	0.0	-
목재 및 종이제품	0.2	0.9	3.1	0.0	0.4
인쇄 및 복제	0.0	16.9	0.1	-	-
석유 및 석탄제품	2.0	0.4	0.1	6.8	-
화학제품	33.5	5.7	21.2	7.4	-
비금속광물제품	2.2	0.6	0.3	0.1	0.0
제1차 금속제품	4.3	7.6	2.1	2.4	-
금속제품	1.0	1.5	0.2	-	-
일반기계	11.8	21.2	18.5	0.2	-
전기 및 전자기기	3.8	6.9	40.7	-	-
정밀기기	7.2	4.6	9.8	-	-
수송장비	5.4	19.9	2.6	-	-
기타 제조업 제품	0.9	0.8	0.5	-	-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III-8〉 산업별 적용 관세율별 미국 수입액 비중(2016년)

(단위: %)

구분	FTA 세율	기본세율	WTO 세율	할당관세	기타
농림수산물	7.7	2.2	0.0	51.4	39.8
광산물	0.5	6.6	-	-	-
음식료품	18.6	6.6	0.1	0.6	20.4
섬유 및 가죽제품	0.8	0.9	0.3	0.1	-
목재 및 종이제품	0.2	2.4	3.1	-	0.0
인쇄 및 복제	0.0	0.1	0.1	-	-
석유 및 석탄제품	3.3	0.3	0.1	44.0	24.2

〈표 III-8〉의 계속

(단위: %)

구분	FTA 세율	기본세율	WTO 세율	할당관세	기타
화학제품	28.4	10.0	14.5	1.4	1.2
비금속광물제품	1.6	1.1	0.1	-	-
제1차 금속제품	2.7	7.8	1.4	-	-
금속제품	1.0	3.4	0.1	-	-
일반기계	9.4	20.5	26.7	2.6	7.5
전기 및 전자기기	5.9	9.4	40.8	-	1.5
정밀기기	6.8	6.1	9.2	-	5.4
수송장비	11.9	22.2	3.2	-	-
기타 제조업 제품	1.3	0.6	0.5	-	-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나. 한·EU FTA

### 1) 현황

우리나라와 EU 28개 회원국과의 FTA는 2011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sup>14)</sup> 2011년부터 우리나라와 EU와의 FTA가 발효되면서 전체적으로 기본관세율과 WTO 세율로 수입되던 품목들이 한·EU FTA 협정세율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난다. 2010년 이전까지 EU로부터 수입된 품목의 약 65% 정도가 기본관세율로 수입되었고 약 30% 조금 넘는 수준에서 WTO 세율로 수입되었는데, 2011년 이후에는 그 비중이 기본관세율의 경우 약 30% 미만으로 그 리고 WTO 세율은 약 15% 정도로 하락하였다.

14) EU 28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영국,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자료 : [http://www.fta.go.kr/main/situation/kfta/ov/\(2017.7.31\)](http://www.fta.go.kr/main/situation/kfta/ov/(2017.7.31))

〈표 III-9〉 EU 수입품 적용 관세율별 수입액 비중

(단위: %)

연도	FTA 세율	기본세율	WTO 세율	할당관세	기타	합계
2007	-	67.3	30.9	0.2	1.5	100.0
2008	-	64.8	31.7	2.1	1.4	100.0
2009	-	66.8	30.9	1.0	1.2	100.0
2010	-	63.8	33.8	1.2	1.3	100.0
2011	15.9	51.9	28.3	3.0	0.9	100.0
2012	45.1	34.2	18.7	1.5	0.5	100.0
2013	49.3	31.9	17.4	1.1	0.3	100.0
2014	50.8	31.3	16.4	1.2	0.3	100.0
2015	55.4	28.0	15.8	0.4	0.4	100.0
2016	58.3	24.6	15.4	0.2	1.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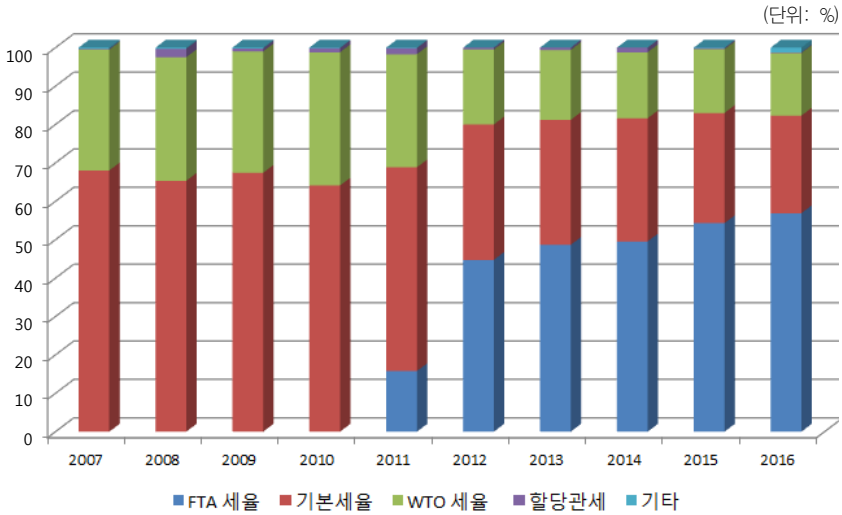
주: 기타 관세율은 잠정관세, 조정관세, 덤핑방지관세, WTO 개발도상국 간의 양허관세,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등을 포함함.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공산품과 농산물로 나눠서 살펴보면 공산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변화는 EU로부터 전체 수입되는 품목에 적용되는 관세율 변화와 거의 유사하다. 그 이유는 전체 수입액에서 공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농산물에 비해 월등히 많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미국과 유사하게 농산물에 적용되는 관세율 변화는 공산품보다 더 특징적이다. 농산물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한·EU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6년에는 농산물의 약 80.2%가 한·EU FTA 세율을 적용받았으며, 이들 품목들은 한·EU FTA 발효 이전에 기본관세율과 할당관세율로 수입되는 품목들의 상당수의 농산물이 FTA 협정세율로 전환된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미국과 유사한 현상이며, 미국의 경우에는 약 70%의 미국산 농산물이 한·미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수입되고 있었는데, EU는 이보다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I-6] EU 공산품 적용 관세율별 수입액 비중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III-10> EU 공산품 적용 관세율별 수입액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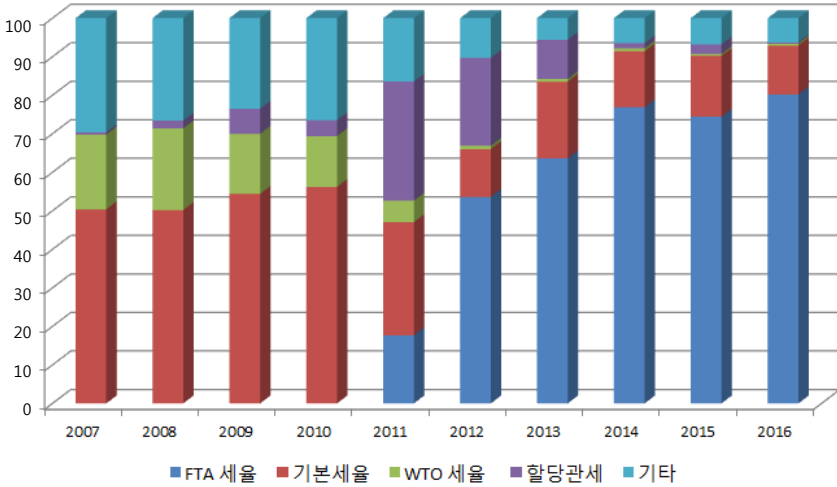
연도	FTA 세율	기본세율	WTO 세율	할당관세	기타	합계
2007	-	68.1	31.5	0.2	0.3	100.0
2008	-	65.4	32.2	2.2	0.3	100.0
2009	-	67.4	31.6	0.8	0.2	100.0
2010	-	64.1	34.7	1.1	0.1	100.0
2011	15.8	53.1	29.5	1.6	0.1	100.0
2012	44.7	35.2	19.5	0.5	0.0	100.0
2013	48.6	32.5	18.2	0.6	0.0	100.0
2014	49.6	32.1	17.2	1.2	0.0	100.0
2015	54.3	28.7	16.6	0.3	0.1	100.0
2016	56.9	25.4	16.3	0.2	1.2	100.0

주: 기타 관세율로는 잠정관세, 조정관세, 덤핑방지관세, WTO 개발도상국 간의 양허관세,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등을 포함함.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III-7] EU 농산물 적용 관세율별 수입액 비중

(단위: %)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III-11> EU 농산물 적용 관세율별 수입액 비중

(단위: %)

연도	FTA 세율	기본세율	WTO 세율	할당관세	기타	합계
2007	-	50.4	19.4	0.6	29.6	100.0
2008	-	50.2	21.2	2.0	26.6	100.0
2009	-	54.4	15.6	6.5	23.5	100.0
2010	-	56.2	13.2	4.1	26.5	100.0
2011	17.7	29.3	5.6	30.9	16.4	100.0
2012	53.6	12.4	0.9	22.8	10.3	100.0
2013	63.7	19.9	0.7	10.2	5.6	100.0
2014	77.0	14.5	0.8	1.3	6.5	100.0
2015	74.5	15.8	0.5	2.5	6.8	100.0
2016	80.2	12.7	0.5	0.3	6.3	100.0

주: 기타 관세율로는 잠정관세, 조정관세, 덤핑방지관세, WTO 개발도상국 간의 양허관세,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등을 포함함.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 산업별 현황

이번에는 산업별로 수입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자.

2016년 기준으로 개별 산업 중에서 한·EU FTA 협정세율의 적용 비중이 절반이 넘는 산업으로는 비금속 광물제품 약 84.2%, 수송장비 약 83.4%, 음식료품 약 83.0%, 광산물 68.9%, 화학제품 65.4%, 섬유 및 가죽제품 약 58.8%, 농림수산물 53.9% 등이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미국과 비교해 볼 때,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비중이 절반 이상 되는 산업군이 미국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EU FTA 발효 초기인 2011년과 비교해 봐도 다수 산업군에서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들어오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산업 평균을 비교해 보면 한·EU FTA 발효 초기인 2011년에는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비중이 17.7%였지만, 2016년에는 52.2%로 전체적으로 절반 이상이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선 미국의 경우에는 농림수산물과 음식료품에는 여전히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비중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EU에서는 할당관세 비중은 매우 미미하고 한·EU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다.

기본관세율이 적용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인 산업군은 인쇄 및 복제만이 유일했고, 기본관세율 적용 비중이 약 64.9%였다. 이는 미국의 경우와도 유사하다. 금속제품의 절반 정도는 기본관세율 수입되고 절반 정도는 한·EU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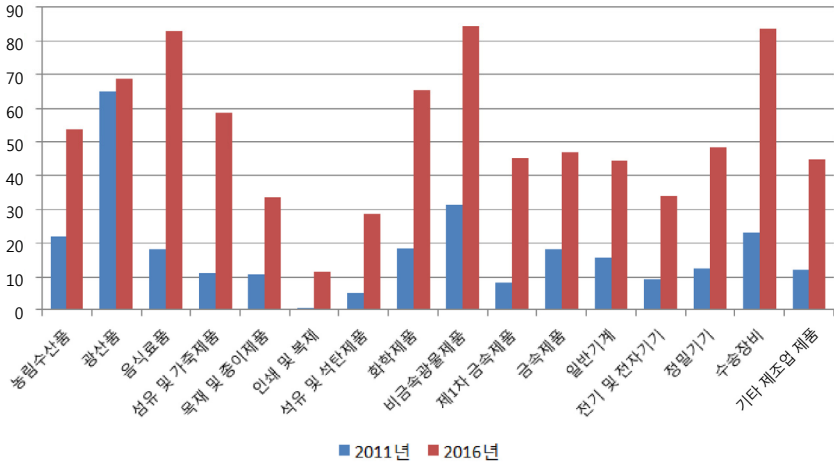
WTO 세율이 적용되는 비중이 높은 산업군들로는 목재 및 종이제품, 32.0%, 전기 및 전자기기 31.9%, 제1차 금속제품 30.1%였다. 미국에서는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의 경우 WTO 세율로 수입되는 비중이 약 66.2%로 절반을 넘었었는데, EU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낮았다. 목재 및 종이제품도 미국의 경우 약 49.1%가 WTO 세율을 적용받아 수입되고 있었는데, EU에서 수입되는 비중은 이보다 낮다.

특히 수송장비 산업을 미국과 비교해 보면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 비중이 2016년에 39.3%이지만, EU의 경우에는 83.4%로 2배 이상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림 III-8] 산업별 적용 관세율별 EU 수입액 비중(FTA 세율)

(단위: %)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III-12> 산업별 적용 관세율별 EU 수입액 비중(2011년)

(단위: %)

구분	FTA 세율	기본세율	WTO 세율	할당관세	기타	합계
농림수산물	21.9	54.5	0.1	22.0	1.6	100.0
광산물	65.2	25.1	0.0	9.6	-	100.0
음식료품	18.3	26.6	6.6	30.3	18.2	100.0
섬유 및 가죽제품	11.2	87.9	0.9	0.0	-	100.0
목재 및 종이제품	10.8	28.1	58.7	0.1	2.3	100.0
인쇄 및 복제	0.7	78.9	20.4	-	-	100.0
석유 및 석탄제품	5.3	89.9	4.5	0.3	-	100.0
화학제품	18.4	30.6	44.5	6.5	-	100.0
비금속광물제품	31.4	65.5	3.0	0.1	-	100.0
제1차 금속제품	8.3	57.6	32.1	2.0	-	100.0
금속제품	18.3	73.4	8.3	-	-	100.0
일반기계	15.9	55.7	27.9	0.5	-	100.0
전기 및 전자기기	9.6	42.7	47.8	-	-	100.0
정밀기기	12.5	60.1	27.4	-	-	100.0
수송장비	23.0	53.8	23.3	-	-	100.0
기타 제조업 제품	12.3	58.6	27.4	1.7	-	100.0
평균	17.7	55.6	20.8	6.6	7.4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III-13〉 산업별 적용 관세율별 EU 수입액 비중(2016년)

(단위: %)

구분	FTA 세율	기본세율	WTO 세율	할당관세	기타	합계
농림수산물	53.9	38.3	-	1.1	6.8	100.0
광산물	68.9	28.1	-	3.0	0.0	100.0
음식료품	83.0	10.0	0.6	0.2	6.1	100.0
섬유 및 가죽제품	58.8	40.5	0.6	0.0	-	100.0
목재 및 종이제품	33.6	31.0	32.0	-	3.5	100.0
인쇄 및 복제	11.6	64.9	23.5	-	-	100.0
석유 및 석탄제품	28.5	6.0	1.6	2.2	61.7	100.0
화학제품	65.4	14.7	19.5	0.4	0.0	100.0
비금속광물제품	84.2	14.9	0.8	-	-	100.0
제1차 금속제품	45.0	25.0	30.1	-	-	100.0
금속제품	47.0	47.4	5.6	-	-	100.0
일반기계	44.3	31.5	24.0	-	0.2	100.0
전기 및 전자기기	34.0	34.0	31.9	-	0.1	100.0
정밀기기	48.6	31.6	18.9	0.1	0.8	100.0
수송장비	83.4	16.2	0.5	-	-	100.0
기타 제조업 제품	44.8	27.2	27.9	-	0.1	100.0
평균	52.2	28.8	15.5	1.0	7.9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번에는 EU 수입품에 적용된 관세율이 산업별로 어떻게 분포해 있는지를 살펴보자. 2016년 기준으로 한·EU FTA 협정세율이 적용된 품목들 중 수송장비가 약 28.4%로 가장 높았고, 화학제품의 비중이 20.0%로 그다음이었으며, 일반기계가 약 16.0%를 차지하였다. 이들 3개 산업군이 전체 한·EU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품목들의 약 64.4%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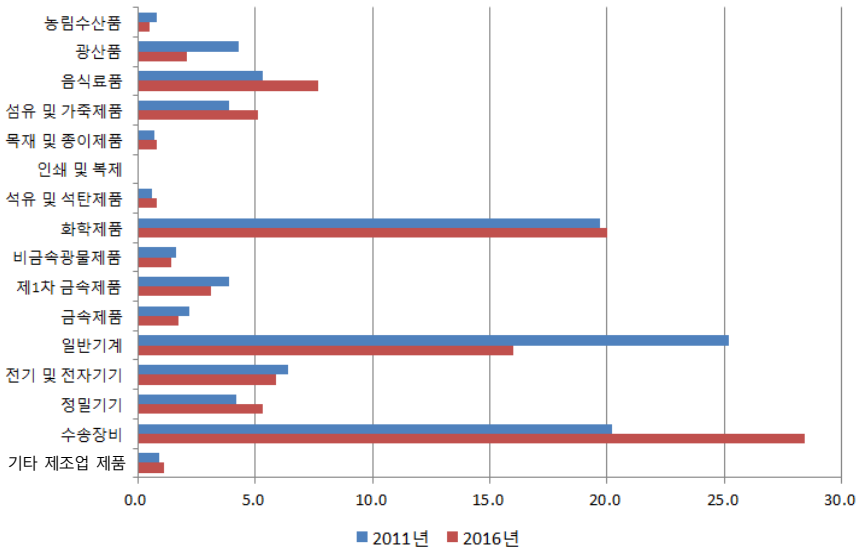
기본관세율로 수입되는 품목들은 일반기계 약 27.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전기 및 전자기기 약 14.2%, 수송장비 13.2%, 화학제품 약 10.7%였다. 이들 4개 산업군이 전체 기본관세로 수입되는 품목들의 약 65.3%를 차지하고 있다.

WTO 세율로 수입되는 비중을 살펴보면, 일반기계 32.9%, 화학제품 22.5%,

전기 및 전자기기 21.2% 등의 비중이 높았다. 이들 3개 산업군이 전체 WTO 세율로 수입되는 비중의 약 76.6%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 할당관세로 수입되는 품목들은 화학제품, 광산품, 석유 및 석탄제품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그림 III-9] 산업별 적용 관세율별 EU 수입액 비중(FTA 세율)

(단위: %)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III-14> 산업별 적용 관세율별 EU 수입액 비중(2011년)

(단위: %)

구분	FTA 세율	기본세율	WTO 세율	할당관세	기타
농림수산물	0.8	0.6	0.0	4.0	1.0
광산품	4.3	0.5	0.0	3.4	-
음식료품	5.3	2.5	1.1	46.3	96.1
섬유 및 가죽제품	3.9	9.8	0.2	0.0	-
목재 및 종이제품	0.7	0.6	2.2	0.0	2.9
인쇄 및 복제	0.0	0.1	0.0	-	-
석유 및 석탄제품	0.6	3.0	0.3	0.1	-
화학제품	19.7	10.5	26.8	36.8	-
비금속광물제품	1.6	1.1	0.1	0.0	-

〈표 III-14〉의 계속

(단위: %)

구분	FTA 세율	기본세율	WTO 세율	할당관세	기타
제1차 금속제품	3.9	8.5	8.4	4.8	-
금속제품	2.2	2.8	0.5	-	-
일반기계	25.2	28.1	24.8	3.8	-
전기 및 전자기기	6.4	9.1	18.0	-	-
정밀기기	4.2	6.4	5.1	-	-
수송장비	20.2	15.1	11.5	-	-
기타 제조업 제품	0.9	1.4	1.1	0.7	-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III-15〉 산업별 적용 관세율별 EU 수입액 비중(2016년)

(단위: %)

구분	FTA 세율	기본세율	WTO 세율	할당관세	기타
농림수산물	0.5	0.8	-	3.1	2.4
광산품	2.1	2.0	-	28.5	-
음식료품	7.7	2.2	0.2	5.3	22.0
섬유 및 가죽제품	5.1	8.5	0.2	1.3	-
목재 및 종이제품	0.8	1.9	3.1	-	3.4
인쇄 및 복제	0.0	0.1	0.1	-	-
석유 및 석탄제품	0.8	0.4	0.2	19.3	65.5
화학제품	20.0	10.7	22.5	38.3	0.1
비금속광물제품	1.4	0.6	0.1	-	-
제1차 금속제품	3.1	4.1	7.8	-	-
금속제품	1.7	4.1	0.8	-	-
일반기계	16.0	27.2	32.9	-	2.4
전기 및 전자기기	5.9	14.2	21.2	-	0.7
정밀기기	5.3	8.3	7.9	4.2	3.4
수송장비	28.4	13.2	0.6	-	-
기타 제조업 제품	1.1	1.6	2.7	-	0.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다. 한·아세안 FTA

### 1) 현황

우리나라와 아세안 10개 회원국과의 FTA는 상품무역 관련해서는 2007년 6월부터 발효되었다.<sup>15)</sup>

앞서 분석한 미국, EU와 달리 우리나라와 아세안 회원국 간에 FTA가 2007년부터 발효되었기 때문에 분석 자료 제약 상 FTA 발효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수는 없었다. 우리나라와 아세안 회원국 간에 FTA가 발효된 2007년부터 2016년까지를 추이를 분석해 보면 꾸준히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2016년에는 그 비중이 48.6%까지 증가하였다.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을 받는 비중이 5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미국보다는 높지만 EU에 비해서는 낮았다.

〈표 III-16〉 아세안 수입품 적용 관세율별 수입액 비중

(단위: %)

연도	FTA 세율	기본세율	WTO 세율	할당관세	기타	합계
2007	4.5	40.1	22.8	31.2	1.4	100.0
2008	31.5	30.0	17.4	20.0	1.1	100.0
2009	31.5	35.6	20.8	10.8	1.3	100.0
2010	37.2	37.8	18.5	5.4	1.1	100.0
2011	45.4	30.6	15.0	8.2	0.9	100.0
2012	44.8	32.1	14.2	8.2	0.7	100.0
2013	47.5	31.1	14.5	6.1	0.8	100.0
2014	49.3	29.8	15.9	3.9	1.1	100.0
2015	46.1	29.0	21.2	2.4	1.3	100.0
2016	48.6	23.3	24.0	3.2	0.9	100.0

주 : 기타 관세율은 잠정관세, 조정관세, 덤핑방지관세, WTO 개발도상국 간의 양허관세,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등을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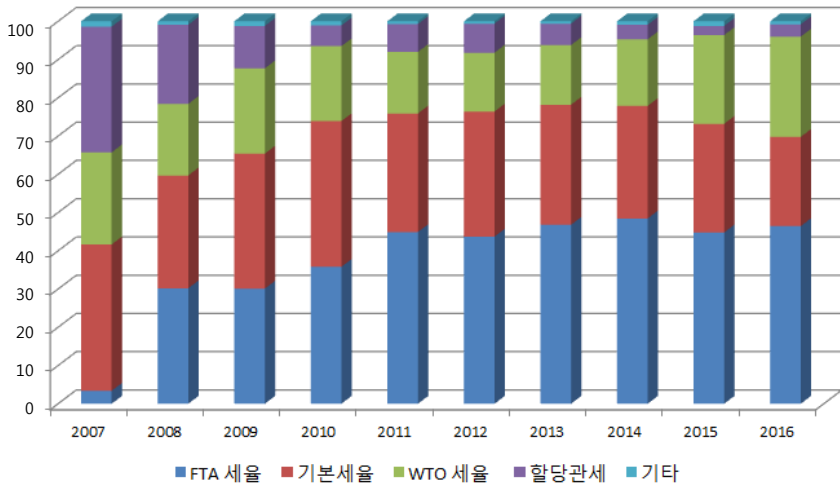
자료 :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5) ASEAN 10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자료: [http://www.fta.go.kr/main/situation/kfta/ov/\(2017.7.31\)](http://www.fta.go.kr/main/situation/kfta/ov/(2017.7.31))

공산품과 농산물로 나눠서 살펴보면 공산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변화는 앞선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전체 수입되는 품목에 적용되는 관세율 변화와 거의 유사하다. 농산물의 경우에 앞서 살펴본 미국, EU와 유사하게 농산물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비중이 공산품보다 더 커서 2016년에는 농산물의 약 72.8%가 한·아세안 FTA 세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농산물은 기본관세율로 수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0] 아세안 공산품 적용 관세율별 수입액 비중

(단위: %)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III-17〉 아세안 공산품 적용 관세율별 수입액 비중

(단위: %)

연도	FTA 세율	기본세율	WTO 세율	할당관세	기타	합계
2007	3.4	38.3	24.1	32.9	1.4	100.0
2008	30.2	29.5	18.7	20.7	0.9	100.0
2009	30.1	35.3	22.3	11.1	1.2	100.0
2010	35.8	38.1	19.6	5.4	1.1	100.0
2011	44.9	31.0	16.1	7.3	0.7	100.0
2012	43.7	32.7	15.4	7.6	0.6	100.0

〈표 III-17〉의 계속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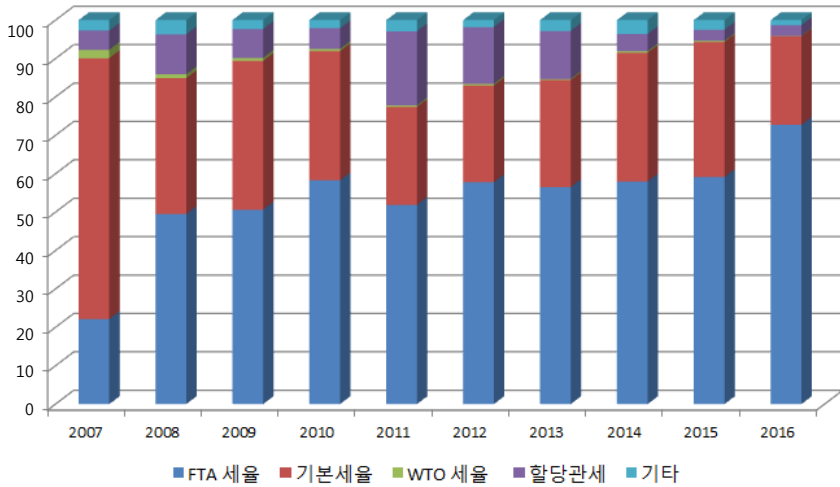
연도	FTA 세율	기본세율	WTO 세율	할당관세	기타	합계
2013	46.8	31.4	15.6	5.6	0.6	100.0
2014	48.4	29.4	17.4	3.8	0.9	100.0
2015	44.8	28.4	23.2	2.4	1.2	100.0
2016	46.4	23.3	26.2	3.2	0.8	100.0

주: 기타 관세율로는 잠정관세, 조정관세, 덤핑방지관세, WTO 개발도상국 간의 양허관세,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등을 포함함.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III-11] 아세안 농산물 적용 관세율별 수입액 비중

(단위: %)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III-18〉 아세안 농산물 적용 관세율별 수입액 비중

(단위: %)

연도	FTA 세율	기본세율	WTO 세율	할당관세	기타	합계
2007	22.2	68.0	2.2	5.0	2.7	100.0
2008	49.5	35.4	1.0	10.4	3.7	100.0
2009	50.6	38.7	0.8	7.5	2.3	100.0
2010	58.3	33.6	0.6	5.4	2.1	100.0
2011	51.9	25.5	0.4	19.3	2.9	100.0
2012	57.8	25.2	0.4	14.8	1.8	100.0
2013	56.5	27.8	0.3	12.5	2.8	100.0
2014	58.0	33.5	0.4	4.5	3.6	100.0
2015	59.2	35.2	0.3	2.9	2.5	100.0
2016	72.8	23.1	0.1	2.8	1.3	100.0

주: 기타 관세율은 잠정관세, 조정관세, 덤핑방지관세, WTO 개발도상국 간의 양허관세,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등을 포함함.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 산업별 현황

산업별로 아세안에서 수입되는 품목들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자. 먼저 2016년 기준으로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의 적용 비중이 절반이 넘는 산업으로는 섬유 및 가죽제품이 약 93.1%로 거의 대부분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었으며, 음식료품 약 82.3%, 화학제품 75.3%, 비금속광물제품 60.2%, 목재 및 종이제품 약 56.2%, 기타 제조업 약 58.8%, 일반기계 약 51.1%였다. 이는 한·아세안 FTA가 발효 초기인 2007년에 비해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적용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앞선 미국과 EU와 비교해 볼 때, 섬유 및 가죽제품이 약 93.1%로 거의 대부분 FTA 협정세율을 받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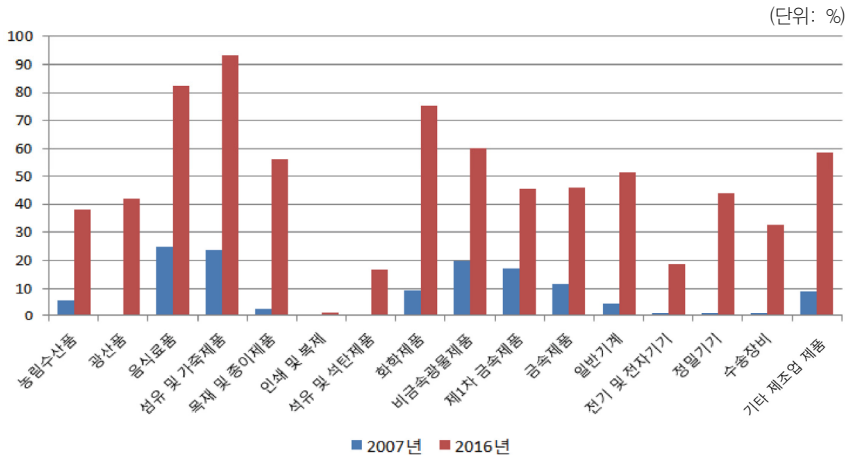
기본관세율이 적용되는 비중이 높은 산업군들로는 석유 및 석탄제품 약 78.3%, 수송장비 약 67.1%, 농림수산물 약 58.2% 등 절반 이상이 여전히 FTA 세율이 아닌 기본관세가 적용되어 수입되었다. 그리고 인쇄 및 복제 47.3%, 제1차 금속제품 47.0%, 광산품 약 42.6% 등이 그다음을 차지했다.

앞선 EU에서는 수송장비의 83.4%가 FTA 협정세율을 받고 있는 반면 아세안에서는 수송장비의 67.1%가 기본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WTO 세율이 적용되는 비중이 높은 산업군들로는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이 가장 높아 WTO 세율로 수입되는 비중이 약 71.4%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인쇄 및 복제가 51.1%로 절반을 넘었다.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ITA 협정에 의해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까다로운 원산지를 증명해야 하는 FTA 협정세율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에서 수입되는 인쇄 및 복제 산업품은 절반은 기본관세율이고 나머지 절반은 WTO 세율을 적용받아 수입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한·아세안 FTA 발효 초기인 2007년과 비교해 봐도 다수 산업군에서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들어오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전체 산업 평균을 비교해 보면 한·아세안 FTA 발효 초기인 2007년에는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비중이 8.8%에 불과하였지만, 2016년에는 47.6%로 거의 절반 가까이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비중이 증가한 만큼 기본관세율이 적용되는 비중이 감소하였는데, 기본관세율 적용 비중은 2007년 63.8%에서 2016년에는 33.6%로 감소하였다.

[그림 III-12] 산업별 적용 관세율별 아세안 수입액 비중(FTA 세율)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III-19〉 산업별 적용 관세율별 아세안 수입액 비중(2007년)

(단위: %)

구분	FTA 세율	기본세율	WTO 세율	할당관세	기타	합계
농림수산물	5.8	89.8	1.0	3.3	0.2	100.0
광산품	0.1	21.6	-	78.3	-	100.0
음식료품	24.7	64.2	2.7	3.1	5.3	100.0
섬유 및 가죽제품	23.6	74.7	0.5	0.5	0.7	100.0
목재 및 종이제품	2.6	50.4	27.9	-	19.0	100.0
인쇄 및 복제	-	66.0	34.0	-	-	100.0
석유 및 석탄제품	0.0	71.5	0.0	28.5	-	100.0
화학제품	9.2	60.4	30.1	0.0	0.3	100.0
비금속광물제품	19.9	79.9	0.2	-	-	100.0
제1차 금속제품	16.9	70.0	9.2	0.1	3.8	100.0
금속제품	11.6	64.1	24.3	-	-	100.0
일반기계	4.7	63.8	31.5	-	0.0	100.0
전기 및 전자기기	1.0	18.0	81.0	-	-	100.0
정밀기기	1.2	74.7	24.1	-	-	100.0
수송장비	1.1	98.2	0.7	-	-	100.0
기타 제조업 제품	8.9	52.7	38.5	-	-	100.0
평균	8.8	63.8	20.4	16.3	4.2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III-20〉 산업별 적용 관세율별 아세안 수입액 비중(2016년)

(단위: %)

구분	FTA 세율	기본세율	WTO 세율	할당관세	기타	합계
농림수산물	38.1	58.2	0.0	3.0	0.7	100.0
광산품	42.0	42.6	-	15.4	-	100.0
음식료품	82.3	11.9	0.1	1.6	4.0	100.0
섬유 및 가죽제품	93.1	5.8	0.0	0.1	1.0	100.0
목재 및 종이제품	56.2	19.8	16.9	-	7.1	100.0
인쇄 및 복제	1.6	47.3	51.1	-	-	100.0
석유 및 석탄제품	16.6	78.3	0.0	4.8	0.2	100.0
화학제품	75.3	8.9	13.3	1.8	0.6	100.0
비금속광물제품	60.2	39.6	0.2	-	-	100.0

〈표 III-20〉의 계속

(단위: %)

구분	FTA 세율	기본세율	WTO 세율	할당관세	기타	합계
제1차 금속제품	45.4	47.0	7.6	-	-	100.0
금속제품	45.9	34.5	19.6	-	-	100.0
일반기계	51.1	22.2	26.4	-	0.2	100.0
전기 및 전자기기	18.5	9.8	71.4	-	0.3	100.0
정밀기기	43.8	34.4	20.2	-	1.6	100.0
수송장비	32.8	67.1	0.1	-	-	100.0
기타 제조업 제품	58.8	9.5	31.6	-	0.0	100.0
평균	47.6	33.6	17.2	4.5	1.6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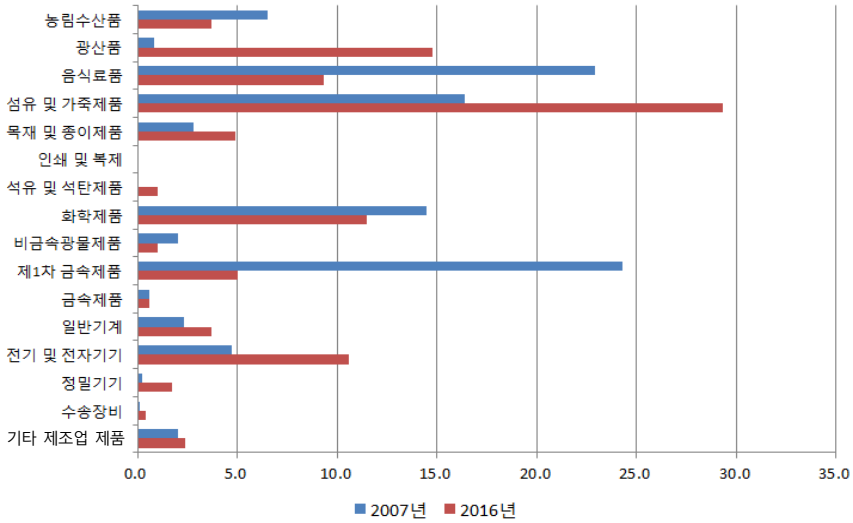
이번에는 아세안에서 수입된 품목들에 적용된 관세율이 산업별로 어떻게 분포해 있는지를 비교해 보자. 2016년 기준으로 FTA 협정세율이 적용된 산업들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예상대로 섬유 및 가죽제품으로 그 비중이 약 29.3%였다. 그리고 광산품 14.8%, 화학제품 11.5%, 전기 및 전자기기 10.6%였다. 이들 4개 산업군이 전체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품목들의 약 66.2%를 차지하고 있다. 앞선 미국, EU에서도 보듯이, 3~4개 산업군이 전체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품목들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기본관세율로 수입되는 품목들은 광산품이 14.7%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나머지 품목들은 거의 유사한 비중으로 고루게 분포되어 있었다. 할당관세로 수입되는 품목들도 광산품이 83.3%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 밖에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농림수산물과 석유 및 석탄제품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WTO 세율로 수입되는 비중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의 비중이 높았는데, 그 비중이 82.6%로 압도적으로 높다. 미국의 경우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의 비중이 40.8%로 아세안만큼 압도적으로 높지 않았다. 이에 비해 EU에서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의 비중은 21.2%로 상대적으로 낮다.

[그림 III-13] 산업별 적용 관세율별 아세안 수입액 비중(FTA 세율)

(단위: %)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III-21> 산업별 적용 관세율별 아세안 수입액 비중(2007년)

(단위: %)

구분	FTA 세율	기본세율	WTO 세율	할당관세	기타
농림수산물	6.5	11.3	0.2	0.5	0.7
광산품	0.8	20.2	-	93.7	-
음식료품	22.9	6.6	0.5	0.4	15.3
섬유 및 가죽제품	16.4	5.8	0.1	0.0	1.5
목재 및 종이제품	2.8	6.1	5.9	-	64.1
인쇄 및 복제	-	0.0	0.0	-	-
석유 및 석탄제품	0.0	10.3	0.0	5.3	-
화학제품	14.5	10.7	9.4	0.0	1.3
비금속광물제품	2.0	0.9	0.0	-	-
제1차 금속제품	24.3	11.3	2.6	0.0	17.1
금속제품	0.6	0.4	0.2	-	-
일반기계	2.3	3.5	3.0	-	0.0
전기 및 전자기기	4.7	9.6	75.7	-	-
정밀기기	0.2	1.2	0.7	-	-
수송장비	0.1	0.9	0.0	-	-
기타 제조업 제품	2.0	1.3	1.7	-	-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III-22〉 산업별 적용 관세율별 아세안 수입액 비중(2016년)

(단위: %)

구분	FTA 세율	기본세율	WTO 세율	할당관세	기타
농림수산물	3.7	5.5	0.0	4.4	4.0
광산품	14.8	14.7	-	83.3	-
음식료품	9.3	1.3	0.0	2.9	25.5
섬유 및 가죽제품	29.3	1.8	0.0	0.7	16.8
목재 및 종이제품	4.9	1.7	3.0	-	34.9
인쇄 및 복제	0.0	0.0	0.0	-	-
석유 및 석탄제품	1.0	4.7	0.0	4.5	0.6
화학제품	11.5	1.3	4.1	4.2	5.1
비금속광물제품	1.0	0.7	0.0	-	-
제1차 금속제품	5.0	5.0	1.7	-	-
금속제품	0.6	0.5	0.5	-	-
일반기계	3.7	1.6	3.9	-	1.0
전기 및 전자기기	10.6	5.5	82.6	-	8.6
정밀기기	1.7	1.3	1.6	-	3.4
수송장비	0.4	0.9	0.0	-	-
기타 제조업 제품	2.4	0.4	2.6	-	0.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3. 주요 산업별 관세율 구조 현황 및 특징

본 절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에 수입된 모든 품목에 대해 수입할 때 적용된 관세율이 기준으로 산업별로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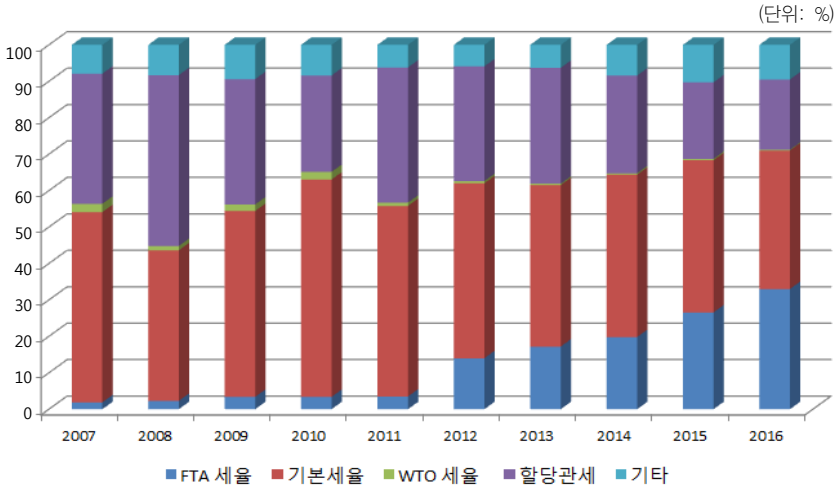
#### 가. 농림수산물

2016년 기준으로 농림수산품의 약 1/3 정도가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고 있다. 기본관세율로 수입되는 비중도 감소하고 있지만 특히 할당관세로 수입되는 비중이 감소하면서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농림수산품은 여러 FTA 중에서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비중이 11.5%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아세안과 중국이 각각 5.0%와 4.5%였다.

[그림 III-14] 농림수산물 적용 관세율별 수입액 비중



자료 :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III-23> 농림수산물 적용 관세율별 수입액 비중

(단위: %)

연도	FTA 세율	기본세율	WTO 세율	할당관세	기타	합계
2007	1.9	52.2	2.3	35.7	7.9	100.0
2008	2.3	41.3	1.2	46.9	8.3	100.0
2009	3.4	51.0	1.8	34.4	9.4	100.0
2010	3.4	59.7	2.1	26.5	8.4	100.0
2011	3.5	52.3	0.9	37.1	6.2	100.0
2012	14.0	48.0	0.6	31.5	5.9	100.0
2013	17.2	44.3	0.4	31.8	6.3	100.0
2014	19.8	44.5	0.4	26.8	8.4	100.0
2015	26.6	41.8	0.4	21.0	10.3	100.0
2016	33.0	38.0	0.2	19.3	9.5	100.0

주: 기타 관세율로는 잠정관세, 조정관세, 덤핑방지관세, WTO 개발도상국 간의 양허관세,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등을 포함함.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III-24〉 FTA별 전체 수입액 대비 농림수산물 수입액 비중

(단위: %)

연도	ASEAN	호주	칠레	EFTA	EU	인도	페루	싱가포르	터키	미국	캐나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콜롬비아
2007	0.9	-	0.6	0.3	-	-	-	0.0	-	-	-	-	-	-	-
2008	2.0	-	0.0	0.3	-	-	-	0.0	-	-	-	-	-	-	-
2009	2.4	-	0.7	0.3	-	-	-	0.0	-	-	-	-	-	-	-
2010	2.3	-	0.7	0.3	-	0.1	-	0.0	-	-	-	-	-	-	-
2011	1.9	-	0.8	0.3	0.5	0.1	0.0	0.0	-	-	-	-	-	-	-
2012	3.0	-	1.1	0.3	0.9	0.1	0.4	0.0	-	8.2	-	-	-	-	-
2013	3.3	-	1.3	0.5	0.9	0.4	0.4	0.0	0.0	10.4	-	-	-	-	-
2014	3.9	0.3	1.6	0.7	1.2	0.3	0.6	0.0	0.1	11.4	-	-	-	-	-
2015	4.5	3.2	1.7	0.8	1.3	0.5	0.6	0.0	0.1	12.5	1.3	0.0	0.0	0.0	-
2016	5.0	2.9	1.3	1.5	1.3	0.6	0.6	0.0	0.1	11.5	1.6	4.5	0.9	0.7	0.3

자료 :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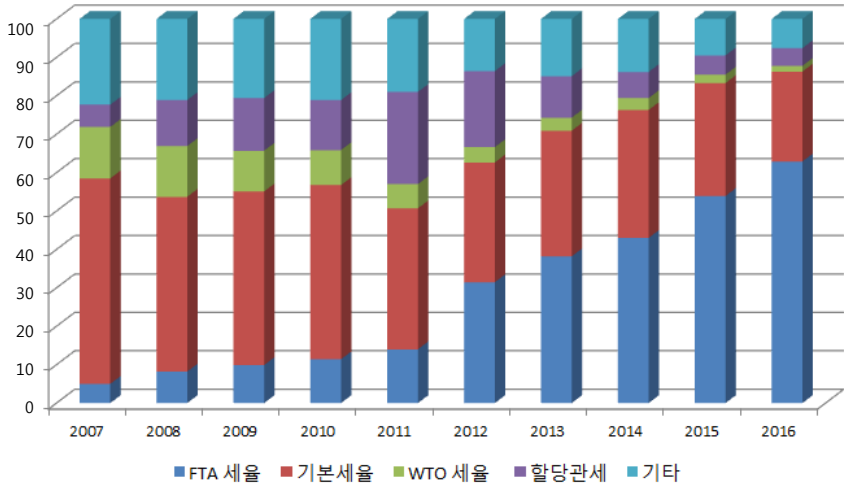
## 나. 음식료품

농림수산물에 비해 음식료품의 경우에는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비중이 배 이상 크다. 2016년 기준으로 음식료품이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비중은 약 62.9%로, 이로 인해 기본관세와 할당관세로 수입되는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다. 향후 분석될 다른 산업들과 비교해 보아도 음식료품의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비중이 가장 크다. 개별 FTA별로 비중 추이를 보면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향후에도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음식료품의 비중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음식료품은 다수의 FTA에서 수입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비중이 약 17.5%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EU에서 약 13.0%, 호주에서 약 11.0%, 아세안에서 약 9.3% 수입되고 있다. 이 밖에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한·중 FTA가 체결되면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도 약 4.3%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III-15] 음식료품 적용 관세율별 수입액 비중

(단위: %)



자료 :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III-25> 음식료품 적용 관세율별 수입액 비중

(단위: %)

연도	FTA 세율	기본세율	WTO 세율	할당관세	기타	합계
2007	5.0	53.5	13.4	5.8	22.3	100.0
2008	8.2	45.5	13.2	12.0	21.1	100.0
2009	9.9	45.2	10.6	13.7	20.6	100.0
2010	11.4	45.3	9.1	13.0	21.1	100.0
2011	14.0	36.7	6.3	24.0	19.0	100.0
2012	31.5	31.2	4.0	19.8	13.6	100.0
2013	38.2	32.7	3.4	10.8	14.9	100.0
2014	43.0	33.3	3.1	6.8	13.8	100.0
2015	53.9	29.4	2.2	5.0	9.5	100.0
2016	62.9	23.4	1.5	4.6	7.6	100.0

주: 기타 관세율로는 잠정관세, 조정관세, 덤핑방지관세, WTO 개발도상국 간의 양허관세,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등을 포함함.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III-26〉 FTA별 전체 수입액 대비 음식료품 수입액 비중

(단위: %)

연도	ASEAN	호주	칠레	EFTA	EU	인도	페루	싱가포르	터키	미국	캐나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콜롬비아
2007	2.5	-	2.0	0.4	-	-	-	0.1	-	-	-	-	-	-	-
2008	7.6	-	0.3	0.3	-	-	-	0.0	-	-	-	-	-	-	-
2009	7.3	-	2.1	0.5	-	-	-	0.0	-	-	-	-	-	-	-
2010	8.5	-	1.7	0.5	-	0.6	-	0.0	-	-	-	-	-	-	-
2011	8.6	-	1.5	0.6	2.4	0.7	0.1	0.0	-	-	-	-	-	-	-
2012	9.9	-	1.7	0.5	7.8	0.9	0.4	0.0	-	10.2	-	-	-	-	-
2013	9.3	-	2.0	0.5	9.8	1.2	0.4	0.0	0.1	14.9	-	-	-	-	-
2014	9.9	0.4	1.9	0.5	11.8	0.9	0.5	0.0	0.1	17.0	-	-	-	-	-
2015	8.9	9.6	2.1	0.6	12.5	0.8	0.6	0.0	0.1	17.0	1.5	0.0	0.0	0.1	-
2016	9.3	11.0	1.9	0.7	13.0	0.7	0.5	0.0	0.1	17.5	1.8	4.3	0.4	1.6	0.0

자료 :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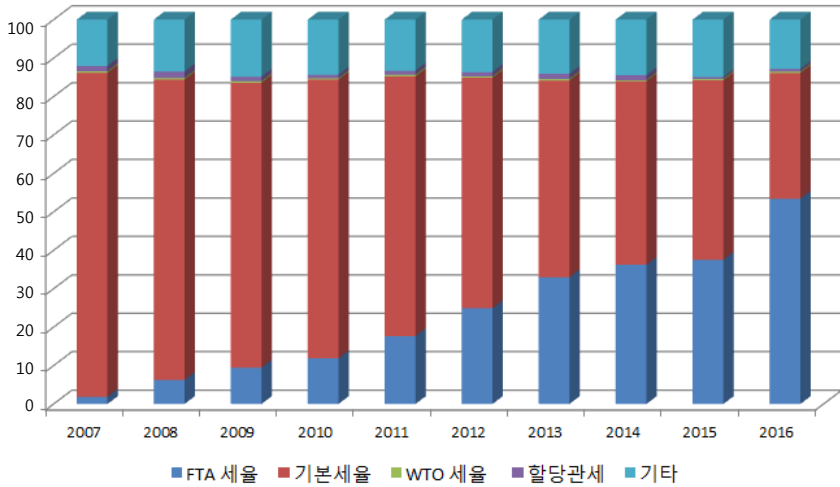
#### 다. 섬유 및 가죽제품

섬유 및 가죽제품도 음식료품처럼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비중이 큰 편이다. 2016년 기준으로 섬유 및 가죽제품이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비중은 약 53.5%로 절반 이상이다. 섬유 및 가죽제품은 FTA 체결 이전에는 대부분 기본관세율로 수입되었는데, 기본관세율로 수입되던 섬유 및 가죽제품들이 점점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섬유 및 가죽제품은 아세안, 중국, 베트남에서 주로 수입되고 있다. 한·아세안 FTA를 통해 수입되는 섬유 및 가죽제품의 비중이 2015년에는 26.2%까지 증가하였지만, 2016년에 새롭게 한·중 FTA를 통해 12.8%를 한·베트남 FTA를 통해 9.8%의 섬유 및 가죽제품이 수입되면서 그 비중이 약간 감소하였다. 그리고 EU에서도 섬유 및 가죽제품의 약 8.5%가 수입되고 있다.

[그림 III-16] 섬유 및 가죽제품 적용 관세율별 수입액 비중

(단위: %)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III-27> 섬유 및 가죽제품 적용 관세율별 수입액 비중

(단위: %)

연도	FTA 세율	기본세율	WTO 세율	할당관세	기타	합계
2007	1.9	84.3	0.4	1.4	12.0	100.0
2008	6.3	78.2	0.4	1.7	13.5	100.0
2009	9.5	74.1	0.4	1.2	14.8	100.0
2010	11.9	72.4	0.4	0.9	14.3	100.0
2011	17.7	67.6	0.5	1.0	13.3	100.0
2012	24.9	59.9	0.4	1.1	13.6	100.0
2013	33.0	51.2	0.4	1.3	14.1	100.0
2014	36.2	47.7	0.3	1.3	14.4	100.0
2015	37.6	46.7	0.4	0.5	14.9	100.0
2016	53.5	32.7	0.4	0.7	12.8	100.0

주: 기타 관세율은 잠정관세, 조정관세, 덤핑방지관세, WTO 개발도상국 간의 양허관세,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등을 포함함.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III-28〉 FTA별 전체 수입액 대비 섬유 및 가죽제품 수입액 비중

(단위: %)

연도	ASEAN	호주	칠레	EFTA	EU	인도	페루	싱가포르	터키	미국	캐나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콜롬비아
2007	1.7	-	0.0	0.2	-	-	-	0.0	-	-	-	-	-	-	-
2008	6.1	-	0.0	0.2	-	-	-	0.0	-	-	-	-	-	-	-
2009	9.3	-	0.0	0.2	-	-	-	0.0	-	-	-	-	-	-	-
2010	11.3	-	0.0	0.2	-	0.4	-	0.0	-	-	-	-	-	-	-
2011	14.7	-	0.0	0.2	1.9	0.8	0.0	0.0	-	-	-	-	-	-	-
2012	17.5	-	0.0	0.1	5.7	0.8	0.0	0.0	-	0.7	-	-	-	-	-
2013	23.6	-	0.0	0.1	7.0	1.1	0.0	0.0	0.1	1.0	-	-	-	-	-
2014	25.8	0.0	0.0	0.1	7.7	1.3	0.0	0.0	0.2	1.0	-	-	-	-	-
2015	26.2	0.0	0.0	0.1	8.2	1.7	0.1	0.0	0.2	0.9	0.1	0.1	0.0	0.0	-
2016	19.5	0.0	0.0	0.1	8.5	1.7	0.0	0.0	0.2	0.7	0.1	12.8	9.8	0.0	0.0

자료 :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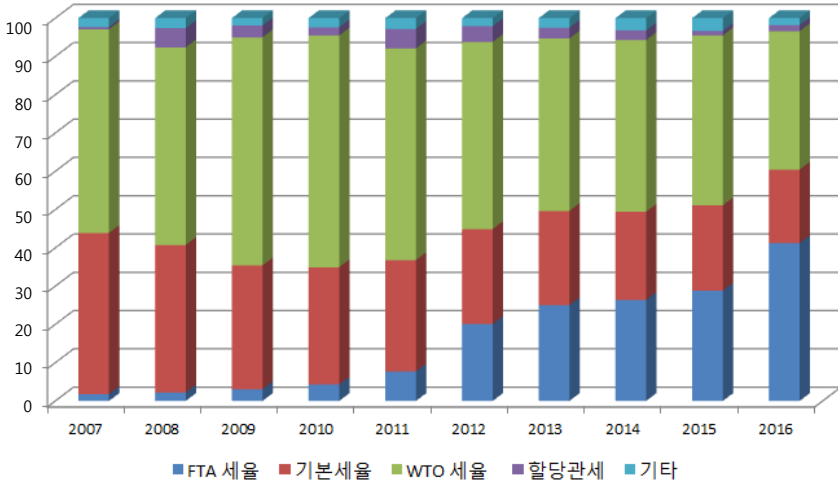
## 라. 화학제품

전체 화학제품 수입 중에서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비중은 점점 증가하여 2016년에는 약 41.3%를 차지하고 있다. 화학제품도 FTA 체결 이전에는 기본관세율과 WTO 양허세율로 수입되었는데, 기본관세율로 수입되던 화학제품들이 점점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화학제품은 EU와 미국에서 주로 수입되는데, 한·EU FTA를 통해 수입되는 화학제품의 비중은 2016년 기준 약 11.9%이고, 한·미 FTA를 통해 약 9.6% 정도가 수입되고 있다. 특히 2016년 이후 한·중 FTA가 발효된 이후에는 중국으로부터 약 11.4%의 화학제품이 수입되고 있다. 한·아세안 FTA를 통해 수입되는 화학제품 비중도 2007년 0.5%에서 4.9%까지 증가하였다.

[그림 III-17] 화학제품 적용 관세율별 수입액 비중

(단위: %)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III-29> 화학제품 적용 관세율별 수입액 비중

(단위: %)

연도	FTA 세율	기본세율	WTO 세율	할당관세	기타	합계
2007	1.8	42.1	53.2	0.6	2.3	100.0
2008	2.2	38.5	51.6	5.0	2.6	100.0
2009	3.1	32.3	59.6	3.1	1.9	100.0
2010	4.3	30.6	60.5	2.1	2.4	100.0
2011	7.7	29.1	55.3	5.1	2.8	100.0
2012	20.1	24.8	48.9	4.1	2.1	100.0
2013	25.0	24.6	45.0	2.8	2.5	100.0
2014	26.4	23.0	44.9	2.5	3.2	100.0
2015	28.8	22.3	44.4	1.2	3.3	100.0
2016	41.3	19.2	36.2	1.6	1.8	100.0

주: 기타 관세율로는 잠정관세, 조정관세, 덤핑방지관세, WTO 개발도상국 간의 양허관세,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등을 포함함.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III-30〉 FTA별 전체 수입액 대비 화학제품 수입액 비중

(단위: %)

연도	ASEAN	호주	칠레	EFTA	EU	인도	페루	싱가포르	터키	미국	캐나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콜롬비아
2007	0.5	-	0.5	0.6	-	-	-	0.2	-	-	-	-	-	-	-
2008	1.5	-	0.0	0.7	-	-	-	0.0	-	-	-	-	-	-	-
2009	2.0	-	0.3	0.7	-	-	-	0.1	-	-	-	-	-	-	-
2010	3.0	-	0.2	0.7	-	0.3	-	0.1	-	-	-	-	-	-	-
2011	3.4	-	0.2	0.8	2.6	0.6	0.0	0.1	-	-	-	-	-	-	-
2012	3.8	-	0.2	0.7	8.6	0.7	0.0	0.1	-	6.0	-	-	-	-	-
2013	3.8	-	0.2	0.8	9.9	0.8	0.0	0.1	0.3	9.2	-	-	-	-	-
2014	4.0	0.0	0.2	0.8	11.0	0.9	0.0	0.1	0.2	9.2	-	-	-	-	-
2015	4.3	0.6	0.3	0.8	11.6	1.0	0.0	0.1	0.1	9.7	0.2	0.1	0.0	0.0	-
2016	4.9	0.4	0.4	0.8	11.9	1.0	0.0	0.1	0.1	9.6	0.3	11.4	0.1	0.1	0.0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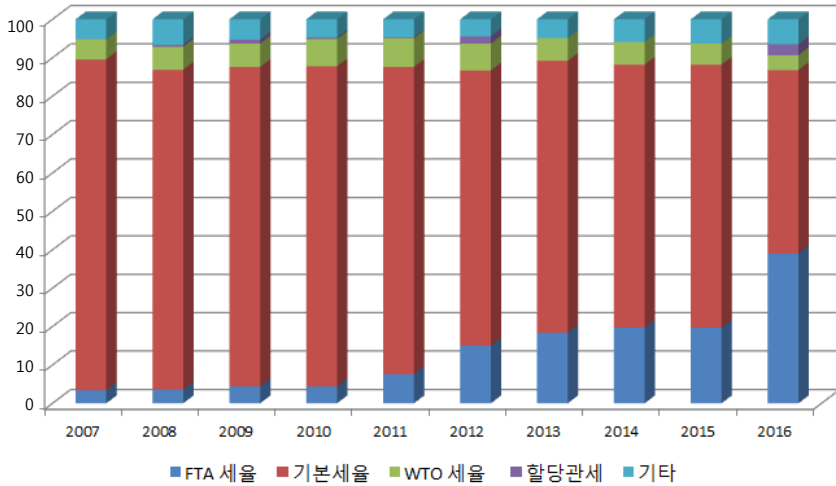
#### 마. 비금속광물제품

비금속광물제품도 그동안 주로 기본관세율을 통해 수입되던 물품들이 점점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으면서 FTA 협정세율 적용 비중이 2007년 3.4%에서 2016년에는 39.0%까지 증가하였다.

비금속광물제품도 화학제품과 유사하게 주로 EU와 미국에서 수입되었는데, 2016년 한·중 FTA 발효 이후 중국으로부터 EU와 미국에서 수입되던 비중보다 더 큰 비중으로 수입이 이루어졌다. 2016년 기준으로 한·EU FTA를 통해 수입된 비금속광물제품의 비중은 약 8.9%이고, 한·미 FTA를 통해 약 5.9% 정도가 수입되었는데, 한·중 FTA가 발효된 이후에는 중국으로부터 약 19.1%의 비금속광물제품이 수입되었다. 한·아세안 FTA를 통해 수입되는 비금속광물제품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2007년 0.7%에서 3.9%까지 증가하였다.

[그림 III-18] 비금속 광물제품 적용 관세율별 수입액 비중

(단위: %)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III-31> 비금속 광물제품 적용 관세율별 수입액 비중

(단위: %)

연도	FTA 세율	기본세율	WTO 세율	할당관세	기타	합계
2007	3.4	86.2	5.2	-	5.2	100.0
2008	3.6	83.3	6.0	0.5	6.6	100.0
2009	4.4	83.2	6.1	1.0	5.3	100.0
2010	4.4	83.3	7.1	0.4	4.7	100.0
2011	7.6	80.1	7.5	0.3	4.6	100.0
2012	15.0	71.6	7.0	1.9	4.4	100.0
2013	18.4	70.8	5.9	-	4.9	100.0
2014	19.7	68.5	5.9	-	5.9	100.0
2015	19.7	68.6	5.5	-	6.3	100.0
2016	39.0	47.8	3.9	2.8	6.5	100.0

주: 기타 관세율은 잠정관세, 조정관세, 덤핑방지관세, WTO 개발도상국 간의 양허관세,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등을 포함함.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III-32〉 FTA별 전체 수입액 대비 비금속 광물제품 수입액 비중

(단위: %)

연도	ASEAN	호주	칠레	EFTA	EU	인도	페루	싱가포르	터키	미국	캐나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콜롬비아
2007	0.7	-	0.0	0.2	-	-	-	2.6	-	-	-	-	-	-	-
2008	2.4	-	0.0	0.2	-	-	-	1.0	-	-	-	-	-	-	-
2009	2.5	-	0.0	0.1	-	-	-	1.8	-	-	-	-	-	-	-
2010	2.7	-	0.0	0.2	-	0.1	-	1.5	-	-	-	-	-	-	-
2011	2.7	-	0.0	0.2	2.6	0.2	0.0	1.9	-	-	-	-	-	-	-
2012	2.9	-	0.0	0.2	6.6	0.2	0.0	0.7	-	4.4	-	-	-	-	-
2013	3.2	-	0.0	0.2	7.4	0.2	0.0	0.1	0.1	7.3	-	-	-	-	-
2014	3.4	0.0	0.0	0.2	8.3	0.3	0.0	0.0	0.2	7.2	-	-	-	-	-
2015	3.8	0.1	0.1	0.2	8.5	0.4	0.0	0.0	0.2	6.3	0.0	0.1	0.0	0.0	-
2016	3.9	0.1	0.0	0.2	8.9	0.5	0.0	0.1	0.1	5.9	0.1	19.1	0.1	0.0	0.0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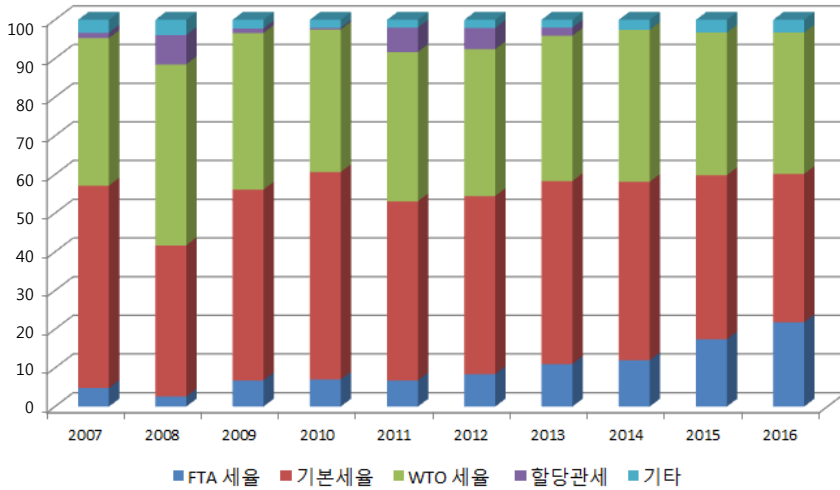
## 바. 제1차 금속제품

제1차 금속제품은 다수의 FTA가 발효되었지만, 여전히 약 38%는 꾸준히 WTO 양허세율로 수입되고 있으며, 그동안 기본관세율을 통해 수입되던 물품의 일부가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1차 금속제품의 FTA 협정세율 적용 비중은 2016년에 21.8%로 약 1/5만큼만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고 있어 다른 산업들에 비해 그 비중이 작다.

제1차 금속제품은 다양한 FTA 체결국가들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다른 산업과 달리 특별히 편중되어 수입되고 있는 FTA는 없었다. 2016년 기준으로 한·칠레 FTA를 통해 약 4.3%, 한·중 FTA 약 3.2%, 한·EU FTA 3.0%, 한·호주 FTA 2.8%, 한·인도 FTA 2.7% 등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림 III-19] 제1차 금속제품 적용 관세율별 수입액 비중

(단위: %)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III-33> 제1차 금속제품 적용 관세율별 수입액 비중

(단위: %)

연도	FTA 세율	기본세율	WTO 세율	할당관세	기타	합계
2007	4.8	52.3	38.1	1.4	3.3	100.0
2008	2.6	39.1	46.8	7.6	3.9	100.0
2009	6.8	49.3	40.5	1.2	2.2	100.0
2010	7.0	53.7	36.9	0.4	2.1	100.0
2011	6.8	46.3	38.6	6.3	2.0	100.0
2012	8.4	46.1	38.0	5.5	2.1	100.0
2013	11.0	47.3	37.6	2.1	2.0	100.0
2014	12.0	46.1	39.3	0.0	2.6	100.0
2015	17.4	42.5	36.9	-	3.3	100.0
2016	21.8	38.4	36.6	-	3.3	100.0

주: 기타 관세율은 잠정관세, 조정관세, 덤핑방지관세, WTO 개발도상국 간의 양허관세,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등을 포함함.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III-34〉 FTA별 전체 수입액 대비 제1차 금속제품 수입액 비중

(단위: %)

연도	ASEAN	호주	칠레	EFTA	EU	인도	페루	싱가포르	터키	미국	캐나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콜롬비아
2007	0.6	-	2.9	1.3	-	-	-	0.0	-	-	-	-	-	-	-
2008	1.6	-	0.7	0.3	-	-	-	0.0	-	-	-	-	-	-	-
2009	2.6	-	3.9	0.3	-	-	-	0.0	-	-	-	-	-	-	-
2010	1.8	-	4.2	0.3	-	0.7	-	0.0	-	-	-	-	-	-	-
2011	1.7	-	3.6	0.3	0.6	0.6	0.0	0.0	-	-	-	-	-	-	-
2012	1.7	-	3.2	0.2	1.7	0.5	0.1	0.0	-	1.0	-	-	-	-	-
2013	2.9	-	3.1	0.2	2.1	1.2	0.1	0.0	0.0	1.5	-	-	-	-	-
2014	2.7	0.0	3.4	0.2	2.8	1.5	0.1	0.0	0.0	1.3	-	-	-	-	-
2015	2.9	2.0	4.1	0.4	3.7	2.3	0.1	0.0	0.0	1.7	0.2	0.0	0.0	0.0	-
2016	2.9	2.8	4.3	0.3	3.0	2.7	0.0	0.0	0.0	1.5	0.9	3.2	0.0	0.2	0.0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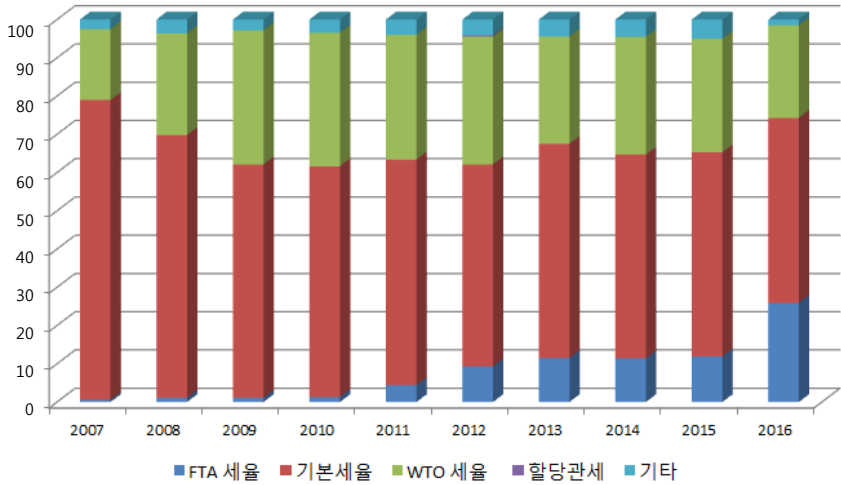
### 사. 금속제품

금속제품도 제1차 금속제품과 유사하게 다수의 FTA가 발효되었지만,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수입되는 비중은 높지 않다. 특히 2015년까지는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수입되는 비중이 약 11.9%에 불과하였다. 2016년에 25.9%로 거의 2배 증가한 이유는 한·중 FTA 발효로 인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16년에 한·중 FTA를 통해 수입된 금속제품의 비중은 13.0%였다. 그동안 금속제품은 한·EU FTA를 통해 수입되던 비중이 약 7.5%였다. 특이한 것은 한·중 FTA가 발효되었다고 해서 그동안 EU, 미국, 아세안 등에서 수입되던 수입품이 중국으로 전환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EU, 미국, 아세안 등으로부터 수입되던 수입 비중에는 변화가 없다.

[그림 III-20] 금속제품 적용 관세율별 수입액 비중

(단위: %)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III-35> 금속제품 적용 관세율별 수입액 비중

(단위: %)

연도	FTA 세율	기본세율	WTO 세율	할당관세	기타	합계
2007	0.6	78.3	18.5	-	2.5	100.0
2008	1.1	68.7	26.6	-	3.6	100.0
2009	1.1	61.1	35.1	-	2.8	100.0
2010	1.3	60.4	35.0	-	3.4	100.0
2011	4.4	59.0	32.6	-	4.0	100.0
2012	9.3	52.9	33.5	0.3	4.1	100.0
2013	11.5	56.0	28.1	-	4.4	100.0
2014	11.4	53.3	30.8	-	4.5	100.0
2015	11.9	53.4	29.7	-	5.0	100.0
2016	25.9	48.4	24.2	-	1.5	100.0

주: 기타 관세율은 잠정관세, 조정관세, 덤핑방지관세, WTO 개발도상국 간의 양허관세,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등을 포함함.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III-36〉 FTA별 전체 수입액 대비 금속제품 수입액 비중

(단위: %)

연도	ASEAN	호주	칠레	EFTA	EU	인도	페루	싱가포르	터키	미국	캐나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콜롬비아
2007	0.2	-	0.0	0.4	-	-	-	0.1	-	-	-	-	-	-	-
2008	0.7	-	0.0	0.4	-	-	-	0.0	-	-	-	-	-	-	-
2009	0.7	-	0.0	0.4	-	-	-	0.0	-	-	-	-	-	-	-
2010	0.8	-	0.0	0.4	-	0.1	-	0.0	-	-	-	-	-	-	-
2011	1.0	-	0.0	0.6	2.7	0.1	0.0	0.0	-	-	-	-	-	-	-
2012	1.0	-	0.0	0.6	5.9	0.1	0.0	0.0	-	1.5	-	-	-	-	-
2013	1.2	-	0.0	0.6	7.1	0.2	0.0	0.0	0.0	2.4	-	-	-	-	-
2014	1.5	0.0	0.1	0.6	6.8	0.2	0.0	0.0	0.1	2.2	-	-	-	-	-
2015	1.5	0.0	0.0	0.8	6.6	0.2	0.0	0.0	0.0	2.5	0.1	0.1	0.0	0.0	-
2016	1.7	0.0	0.0	0.8	7.5	0.2	0.0	0.0	0.1	2.5	0.1	13.0	0.0	0.0	0.0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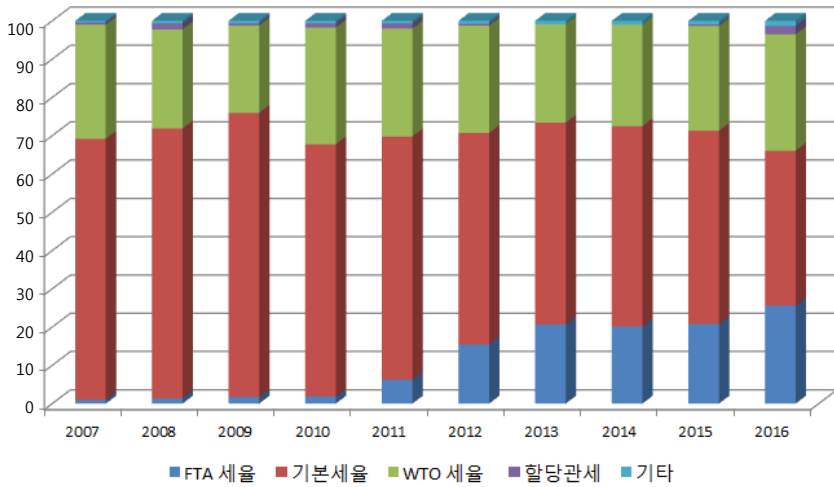
### 아. 기계류

일반기계와 정밀기기를 합친 기계류를 분석해 보면, 제1차 금속제품과 유사하게 다수의 FTA가 발효되었지만 여전히 약 30%는 꾸준히 WTO 양허세율로 수입되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기본관세율을 통해 수입되던 물품의 일부가 FTA 협정세율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류는 EU에서 수입되는 비중이 가장 컸는데 2016년 기준으로 한·EU FTA를 통해 수입된 기계류의 비중은 약 11.8%이다. 그다음으로 한·미 FTA를 통해 약 5.0%가 수입되었는데, 한·중 FTA가 발효된 이후에는 중국으로부터 약 4.4%의 기계류가 수입되었다. 한·아세안 FTA와 한·EFTA FTA를 통해 수입되는 기계류는 각각 약 2.0%와 약 1.6%이다.

[그림 III-21] 기계류 적용 관세율별 수입액 비중

(단위: %)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III-37> 기계류 적용 관세율별 수입액 비중

(단위: %)

연도	FTA 세율	기본세율	WTO 세율	할당관세	기타	합계
2007	1.0	68.2	29.8	0.6	0.4	100.0
2008	1.4	70.4	25.9	1.6	0.6	100.0
2009	1.7	74.2	22.8	0.6	0.6	100.0
2010	1.9	65.9	30.5	1.1	0.6	100.0
2011	6.3	63.5	28.2	1.4	0.6	100.0
2012	15.5	55.2	28.1	0.5	0.7	100.0
2013	20.7	52.7	25.7	-	0.9	100.0
2014	20.1	52.4	26.5	-	1.0	100.0
2015	20.8	50.5	27.4	0.4	0.9	100.0
2016	25.6	40.5	30.4	2.2	1.3	100.0

주: 기타 관세율은는 잠정관세, 조정관세, 덤핑방지관세, WTO 개발도상국 간의 양허관세,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등을 포함함.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III-38〉 FTA별 전체 수입액 대비 기계류 수입액 비중

(단위: %)

연도	ASEAN	호주	칠레	EFTA	EU	인도	페루	싱가포르	터키	미국	캐나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콜롬비아
2007	0.1	-	0.0	0.9	-	-	-	0.0	-	-	-	-	-	-	-
2008	0.2	-	0.0	1.2	-	-	-	0.0	-	-	-	-	-	-	-
2009	0.3	-	0.0	1.5	-	-	-	0.0	-	-	-	-	-	-	-
2010	0.5	-	0.0	1.3	-	0.0	-	0.1	-	-	-	-	-	-	-
2011	0.8	-	0.0	1.6	3.7	0.1	0.0	0.1	-	-	-	-	-	-	-
2012	1.1	-	0.0	1.6	9.6	0.1	0.0	0.0	-	3.1	-	-	-	-	-
2013	1.4	-	0.0	1.8	12.6	0.1	0.0	0.0	0.1	4.8	-	-	-	-	-
2014	1.6	0.0	0.0	1.7	11.9	0.1	0.0	0.0	0.1	4.7	-	-	-	-	-
2015	1.7	0.0	0.0	1.6	11.5	0.1	0.0	0.0	0.2	5.4	0.2	0.0	0.0	0.0	-
2016	2.0	0.0	0.0	1.6	11.8	0.1	0.0	0.0	0.2	5.0	0.2	4.4	0.0	0.0	0.0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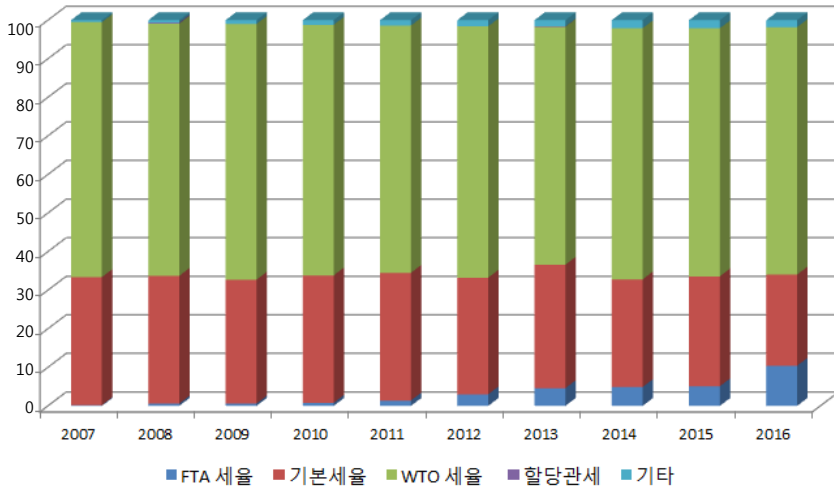
#### 자. 전기 및 전자기기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은 WTO ITA 협정에 의해 IT 품목들의 관세율이 무세이기 때문에 FTA를 통해 수입되는 비중이 다른 산업들에 비해 작다.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이 필요한데, WTO 협정세율이 무세이기 때문에 굳이 FTA 협정세율로 수입할 필요성이 낮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기 및 전자기기 품목은 아세안, EU, 미국 등에서 수입되었는데, 2016년 한·중 FTA가 발효된 이후로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전기 및 전자기기 품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도 전기 및 전자기기 품목이 중국으로부터 얼마만큼 수입되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림 III-22] 전기 및 전자기기부문 적용 관세율별 수입액 비중

(단위: %)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III-39> 전기 및 전자기기부문 적용 관세율별 수입액 비중

(단위: %)

연도	FTA 세율	기본세율	WTO 세율	할당관세	기타	합계
2007	0.2	33.2	66.1	0.0	0.5	100.0
2008	0.6	33.1	65.4	0.3	0.6	100.0
2009	0.6	32.1	66.3	-	1.0	100.0
2010	0.8	33.0	64.9	-	1.2	100.0
2011	1.4	33.1	64.1	-	1.4	100.0
2012	3.0	30.2	65.1	-	1.6	100.0
2013	4.6	32.0	61.7	0.1	1.6	100.0
2014	4.9	27.9	65.1	-	2.1	100.0
2015	5.1	28.5	64.3	-	2.1	100.0
2016	10.4	23.6	64.1	0.0	1.8	100.0

주: 기타 관세율은 잠정관세, 조정관세, 덤핑방지관세, WTO 개발도상국 간의 양허관세,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등을 포함함.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III-40〉 FTA별 전체 수입액 대비 전기 및 전자기기 수입액 비중

(단위: %)

연도	ASEAN	호주	칠레	EFTA	EU	인도	페루	싱가포르	터키	미국	캐나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콜롬비아
2007	0.1	-	0.0	0.1	-	-	-	0.1	-	-	-	-	-	-	-
2008	0.4	-	0.0	0.1	-	-	-	0.0	-	-	-	-	-	-	-
2009	0.4	-	0.0	0.1	-	-	-	0.0	-	-	-	-	-	-	-
2010	0.6	-	0.0	0.1	-	0.0	-	0.0	-	-	-	-	-	-	-
2011	0.7	-	0.0	0.1	0.6	0.0	0.0	0.0	-	-	-	-	-	-	-
2012	0.8	-	0.0	0.1	1.6	0.0	0.0	0.0	-	0.4	-	-	-	-	-
2013	1.2	-	0.0	0.1	2.2	0.0	0.0	0.0	0.0	0.9	-	-	-	-	-
2014	1.4	0.0	0.0	0.1	2.2	0.1	0.0	0.0	0.0	1.0	-	-	-	-	-
2015	1.7	0.0	0.0	0.1	2.0	0.1	0.0	0.0	0.0	1.1	0.0	0.0	0.0	0.0	-
2016	2.3	0.0	0.0	0.1	2.1	0.1	0.0	0.0	0.0	1.2	0.0	4.5	0.1	0.0	0.0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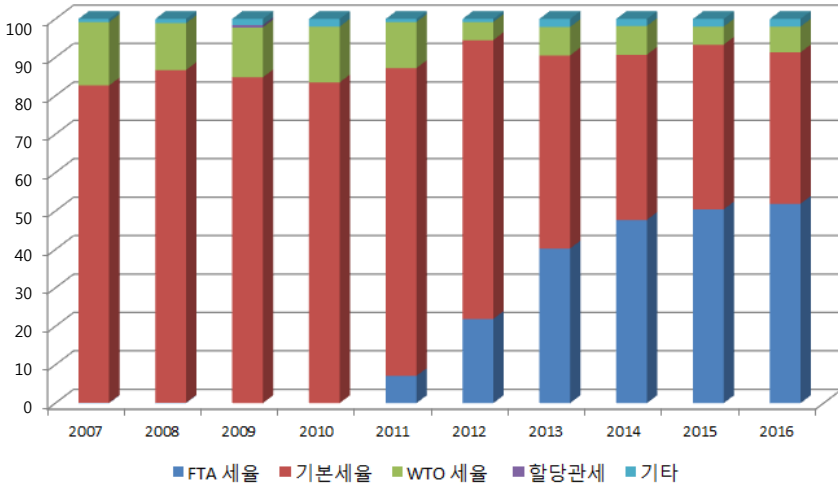
### 차. 수송장비

마지막으로 수송장비를 살펴보면 약 절반 정도(51.9%)가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수입되고 있다.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대부분 기본관세율로 수입되던 수입품들이 FTA 협정세율로 전환되었다. 그 만큼 기본관세율로 수입되던 비중이 감소하였다.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수입되고 수송장비의 대부분이 EU로부터 수입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2016년 기준으로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수입되는 수송장비가 약 51.9%인데, 이 중에서 39.2%가 한·EU FTA를 통해 수입되고 있다. 2015년에는 한·EU FTA를 통해 수입된 수송장비의 비중이 43.2%에 이르기도 하였다. 그다음으로 한·미 FTA를 통해 수입되는 비중은 약 9.2%로 이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밖에 한·중 FTA를 통해 약 2.6%가 수입되고 있다.

[그림 III-23] 수송장비 적용 관세율별 수입액 비중

(단위: %)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III-41> 수송장비 적용 관세율별 수입액 비중

(단위: %)

연도	FTA 세율	기본세율	WTO 세율	할당관세	기타	합계
2007	0.1	82.6	16.5	-	0.8	100.0
2008	0.1	86.6	12.2	-	1.1	100.0
2009	0.0	84.8	13.0	0.6	1.6	100.0
2010	0.0	83.4	14.5	-	2.0	100.0
2011	7.1	80.1	12.0	-	0.8	100.0
2012	21.9	72.5	4.7	-	0.8	100.0
2013	40.3	50.3	7.4	-	2.1	100.0
2014	47.7	43.0	7.5	-	1.8	100.0
2015	50.5	42.9	4.7	-	2.0	100.0
2016	51.9	39.4	6.7	-	2.0	100.0

주: 기타 관세율은 잠정관세, 조정관세, 덤핑방지관세, WTO 개발도상국 간의 양허관세,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등을 포함함.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III-42〉 FTA별 전체 수입액 대비 수송장비 수입액 비중

(단위: %)

연도	ASEAN	호주	칠레	EFTA	EU	인도	페루	싱가포르	터키	미국	캐나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콜롬비아
2007	0.0	-	0.0	0.0	-	-	-	0.0	-	-	-	-	-	-	-
2008	0.0	-	0.0	0.0	-	-	-	0.0	-	-	-	-	-	-	-
2009	0.0	-	0.0	0.0	-	-	-	0.0	-	-	-	-	-	-	-
2010	0.0	-	0.0	0.0	-	0.0	-	0.0	-	-	-	-	-	-	-
2011	0.0	-	0.0	0.0	7.1	0.0	0.0	0.0	-	-	-	-	-	-	-
2012	0.0	-	0.0	0.0	19.4	0.0	0.0	0.0	-	2.5	-	-	-	-	-
2013	0.0	-	0.0	0.0	33.1	0.1	0.0	0.0	0.0	7.1	-	-	-	-	-
2014	0.1	0.0	0.0	0.0	40.9	0.1	0.0	0.0	0.0	6.5	-	-	-	-	-
2015	0.2	0.1	0.0	0.0	43.2	0.1	0.0	0.0	0.0	6.7	0.1	0.0	0.0	0.0	-
2016	0.1	0.1	0.0	0.0	39.2	0.2	0.0	0.0	0.1	9.2	0.2	2.6	0.2	0.0	0.0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4. 소결

### 가. 주요 FTA별 분석

현재 다수의 FTA가 발효되었지만, FTA 체결 국가들 중에서 교역규모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한·미 FTA, 한·EU FTA 그리고 한·아세안 FTA를 중심으로 교역구조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들 거대 FTA에서 나타난 특징은 우선 FTA 이전에는 기본관세율로 수입되는 비중이 약 60~70% 수준이었는데, 그 비중은 25% 정도로 감소하였다는 것이다.<sup>16)</sup>

그리고 2016년 기준으로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비중을 비교해 보면 한·미 FTA 경우에는 한·미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비중은 39.8%였지

16) 거대 경제권과의 FTA에서는 기본관세율 적용 비율이 많이 낮아졌지만, 그 밖의 대다수 FTA에서는 이와는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전체적으로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비중은 약 1/4 정도이다.

만, 한·아세안 FTA 경우에는 수입 비중이 48.6%이고, 한·EU FTA의 경우에는 수입 비중이 58.3%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개별 FTA별로 협정세율 적용비중이 상이하였으며, 한·EU FTA의 경우 협정세율 적용 비중이 다른 FTA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농산물 수입에서 나타난다. FTA 발효 이전에 기본관세율과 할당관세율로 수입되는 상당수의 농산물들이 FTA 협정세율로 전환되었다. 한·미 FTA의 경우 약 69.4%의 미국산 농산물이 한·미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수입되고 있으며, 한·EU FTA의 경우에는 약 80.2%의 농산물이 FTA 협정세율로, 그리고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농산물 비중은 72.8%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상당수의 농산물 수입이 FTA 협정세율로 전환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탄력관세제도에 대한 정책변화를 시사하고 있다. 농산물 분야에 대해서는 탄력관세제도 운용은 FTA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필요가 있다. 공산품에 비해 농산물은 압도적으로 FTA 활용률이 높고, 원산지 요건도 충족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관세율보다 FTA 협정세율이 더 낮으면서 FTA 협정세율도 점진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농산물에 대한 탄력관세는 FTA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자연재해 등으로 공급 부족이 발생해 국내 시장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일시적으로 탄력관세제도를 활용할 필요는 여전히 있다. 탄력관세제도 운용 목적이 경제 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관세법」 개정이 용이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탄력관세 고유의 목적에 적합한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탄력관세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거대 FTA별로 FTA 협정세율 적용 비중이 절반이 넘는 산업을 비교해 보면 한·미 FTA에서는 음식료품 76.8%, 비금속광물제품 65.6%, 화학제품 63.1%, 기타 제조업 61.6% 등으로 4개 산업군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한·EU FTA에서는 비금속 광물제품 84.2%, 수송장비 83.4%, 음식료품 83.0%, 광산품 68.9%, 화학제품 65.4%, 섬유 및 가죽제품 58.8%, 농림수산물 53.9% 등으로 7개 산업군에서 FTA 협정세율 적용비중이 절반이 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분석 대상 16개 산업군의 거의 절반 정도에 육박하고 있고 한·아세안 FTA도 이와 유사하게 섬유 및 가죽제품의 93.1%가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고 있고, 음식료품 82.3%, 화학제품 75.3%, 비금속광물제품 60.2%, 목재 및 종이제품 56.2%, 기타 제조업 58.8%, 일반기계 51.1% 등으로 7개 산업군에서 FTA 협정세율 적용비중이 절반이 넘었다. 한·미 FTA와 비교해 볼 때, 한·EU FTA와 한·아세안 FTA에서는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비중이 절반 이상 되는 산업군이 훨씬 더 많았고, 이들 FTA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FTA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I-43〉 주요 FTA별 FTA 협정세율 비중이 높은 산업군(2016년)

FTA	FTA 협정세율 적용 비중이 50% 이상인 산업군
한·미 FTA	음식료품(76.8%), 비금속광물제품(65.6%), 화학제품(63.1%), 기타 제조업(61.6%)
한·EU FTA	비금속 광물제품(84.2%), 수송장비(83.4%), 음식료품(83.0%), 광산품(68.9%), 화학제품(65.4%), 섬유 및 가죽제품(58.8%), 농림수산물(53.9%)
한·아세안 FTA	섬유 및 가죽제품(93.1%), 음식료품(82.3%), 화학제품(75.3%), 비금속광물제품(60.2%), 목재 및 종이제품(56.2%), 기타 제조업(58.8%), 일반기계(51.1%)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FTA별로 주력으로 수입되는 산업군이 상이하였다. 한·미 FTA의 경우에는 화학제품과 음식료품, 한·EU FTA에서는 수송장비와 화학제품 및 일반기계, 그리고 한·아세안 FTA에서는 섬유 및 가죽제품, 광산품, 그리고 화학제품이었다. 각 FTA별로 비교 우위에 있는 산업군들이 다수의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나. 주요 산업별 분석

산업별로 구분하여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비중을 비교해 보면 산업별로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016년 기준으로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비중이 높은 산업으로는 음식료품이 약 62.9%로 가장 높았고, 섬유 및 가죽제품이 약 53.5%, 수송장비는 약 51.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화학제품은 약 41.3%, 비금속광물제품은 약 39.0%, 농림수산품은 약 33.0%가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어 중간 위치에 있고, 나머지 중에서 금속제품 25.9%, 기계류 25.6%, 제1차 금속제품 21.8%, 전기 및 전자기기는 10.4%로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비중이 다른 산업들에 비해 그 비중이 작다. 특히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은 WTO ITA 협정에 의해 WTO 양허세율이 무세이기 때문에 FTA를 통해 수입되는 비중이 다른 산업들에 비해 작았다.

〈표 III-44〉 산업별 FTA 협정세율 적용 비중

상위	중위	하위
음식료품 (62.9%) 섬유 및 가죽제품(53.5%) 수송장비(51.9%)	화학제품(41.3%) 비금속광물제품(39.0%) 농림수산품(33.0%)	금속제품(25.9%) 기계류(25.6%) 제1차 금속제품(21.8%) 전기 및 전자기기(10.4%)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비중이 높은 음식료품은 농림수산품과 함께 우리나라 관세율 체계에서 농산물로 분류된다. 농림수산품과 음식료품은 우리나라에서 고관세를 통해 국내 농산물 시장을 보호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분석결과 농림수산품과 음식료품은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비중이 높은 편이었고, 특히 음식료품은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비중이 다른 산업들 대비 가장 높았다. 높은 기본관세율과 WTO 양허세율을 통해 국내 농산물 시장을 보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FTA를 통해 이러한 정

책의 효과는 많이 반감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음식료품에 대한 FTA 협정세율 적용 비중도 한·미 FTA에서는 76.8%, 한·EU FTA에서는 83.0%, 한·아세안 FTA에서도 82.3%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농산물은 다른 품목들에 비해 더 높은 관세를 적용하여 국내 시장을 보호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에 이르는 아주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FTA 확산으로 인해 이러한 높은 관세율이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내 농산물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효과 없이 대외적으로 보호 수준이 과다하는 부정적인 인식만 남길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관세율 정책 방향을 설정할 때 농산물에 대한 높은 기본관세율과 FTA 협정세율 간의 관세율 차이, 그리고 이로 인한 농산물 품목의 무역전환효과 등을 감안하여 기본관세율 구조를 개선할 때 참고할 필요가 있다.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농림수산품은 여러 FTA 중에서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비중이 11.5%로 가장 높았고, 음식료품도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비중이 약 17.5%로 가장 높았다. 그 밖에 EU, 호주, 아세안,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농산물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중심관세율 체계에서 예외로 운용하고 있는 섬유 및 가죽제품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섬유 및 가죽제품에 대해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중심관세율 8%보다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분석결과에서 보듯이 섬유 및 가죽제품은 예상대로 아세안, 중국, 베트남에서 주로 수입되고 있다. 한·아세안 FTA를 통해 수입되는 섬유 및 가죽제품의 비중은 2015년에는 26.2%까지 증가하였고, 2016년에는 19.5%였다. 2016년에 새롭게 한·중 FTA를 통해 12.8%, 한·베트남 FTA를 통해 9.8%의 섬유 및 가죽제품이 수입되었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한·아세안 FTA를 통해 섬유 및 가죽제품의 93.1%가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고 있다. 향후에도 이들 FTA 체결 국가들로부터 섬유 및 가죽제품은 꾸준히 수입될 것으로 여겨진다. 섬유 및 가죽제품에 대한 현재의 고관세 정책은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섬유 및 가죽제품에 대한 높은 기본관세율과 FTA

협정세율 간의 관세율 차이, 그리고 이로 인한 무역전환효과 등을 감안하여 기본관세율 구조를 개선할 때 참고할 필요가 있다.

수송장비 산업에서는 거의 한·EU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수송장비 비중이 매우 높았다. 2016년 기준으로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수송장비가 약 51.9%인데, 이 중에서 39.2%가 한·EU FTA를 통해 수입되고 있다. 2015년에는 수입 비중이 43.2%에 이르기도 하였다. 산업별 분석에서 특정 FTA의 수입 비중이 이처럼 높은 경우는 없었다. 우리나라가 현재 일본과의 FTA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역전환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참고로 한·미 FTA를 통해 수입되고있는 수송장비의 수입 비중은 9.8%이다. 수송장비와 달리 제1차 금속제품의 경우에는 특정 FTA가 아닌 여러 FTA들로부터 수입되어 특별히 수입이 편중되지 않은 산업도 있었다.

그리고 한·중 FTA가 발효된 이후에는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기계류, 전기 및 전자기기 품목은 EU와 미국에서 주로 수입되는데, 한·중 FTA가 발효된 이후에는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한·중 FTA가 2015년 12월에 발효되어 자료의 한계로 인해 분석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2016년 한 해 자료만을 보았을 때 한·중 FTA 발효로 인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한 산업이 다수 눈에 띈다.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은 10.4% 중에서 4.5%, 금속제품은 25.9% 중에서 13.0%, 비금속광물은 39.0% 중에서 19.1%, 화학제품은 41.3% 중에서 11.4%, 섬유 및 가죽제품은 53.5% 중에서 12.8%로 증가하였다. 추후에 한·중 FTA가 우리나라 기본관세율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산업별 FTA 협정세율 적용 비중이 높은 국가들을 보면 9개 산업들 기준으로 EU가 6개 산업에서, 중국은 5개 산업에서, 그리고 미국은 4개 산업에서 상위(1위 혹은 2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III-45〉 산업별 FTA 협정세율 적용 비중이 높은 국가(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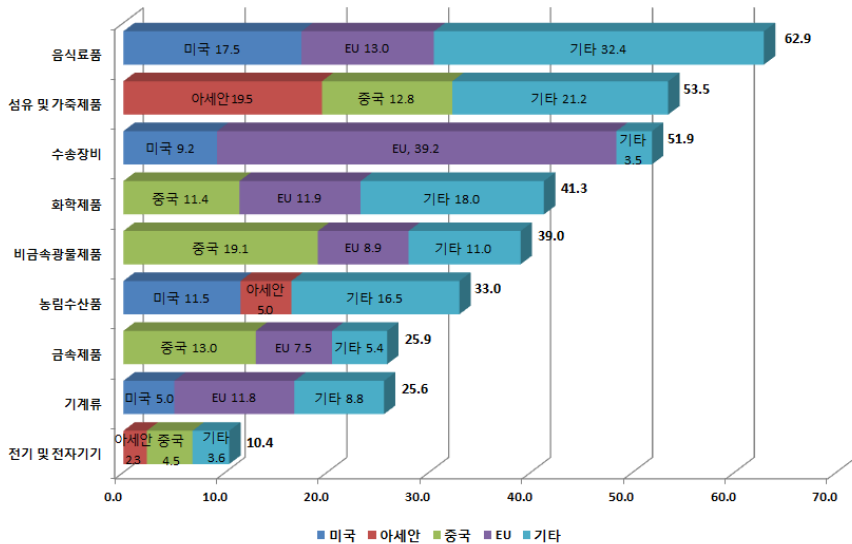
(단위: %)

구분	FTA 협정세율 적용 비중	비중 1위	비중 2위
음식료품	62.9	미국(17.5)	EU(13.0)
섬유 및 가죽제품	53.5	아세안(19.5)	중국(12.8)
수송장비	51.9	EU(39.2)	미국(9.2)
화학제품	41.3	EU(11.9)	중국(11.4)
비금속광물제품	39.0	중국(19.1)	EU(8.9)
농림수산물	33.0	미국(11.5)	아세안(5.0)
금속제품	25.9	중국(13.0)	EU(7.5)
기계류	25.6	EU(11.8)	미국(5.0)
전기 및 전자기기	10.4	중국(4.5)	아세안(2.3)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III-24〕 산업별 FTA 협정세율 적용 비중이 높은 국가(2016년)

(단위: %)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 밖에 제1차 금속제품은 다른 산업들과는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제1차 금속제품은 다양한 FTA 체결 국가들로부터 수입되어 다른 산업과 달리 특별히 편중되어 수입되고 있는 FTA는 없었다. 그리고 금속제품의 경우에는 특이하게 한·중 FTA가 발효되었다고 해서 그동안 EU, 미국, 아세안 등에서 수입되던 수입품이 중국으로 전환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EU, 미국, 아세안 등으로부터 수입되던 수입 비중에는 변화가 없이 추가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

## IV. 관세율 변화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분석

---

일반적으로 FTA의 주 목적은 무역자유화이며 이를 위해 FTA 회원국 간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세 등을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우리나라는 2017년 말 기준으로 52개국과 FTA를 발효하였으며, 한·GCC FTA, 한·일 FTA 등 추가적인 FTA를 체결하기 위해 여건 조성, 협상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FTA는 크게 두 가지 효과를 가진다. 첫 번째 효과는 무역창출효과이고 두 번째 효과는 무역전환효과이다. FTA로 인해 회원국에 대한 관세 등이 철폐되어 회원국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한다. 이는 국내 소비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재화를 소비할 수 있게 해주며 결국 소비자 잉여의 증가로 이어진다.

반면 관세철폐로 정부의 관세수입이 감소한다. 그리고 국내 생산자도 수입품의 공급 증가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며 이는 결국 생산자 잉여의 감소로 이어진다. 이론적으로 정부의 관세수입 감소분과 생산자 잉여 감소분보다 소비자 잉여 증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회적 후생은 증가하고 이를 소위 무역창출효과라고 부른다. 하지만 한 재화를 생산하는 데 있어 FTA 회원국이 비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경우, FTA로 인한 관세철폐로 한 재화를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FTA 비회원국으로부터 FTA 회원국으로 수입국이 전환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킨다. 이를 소위 '무역전환효과'라고 부른다. 따라서 무역창출효과는 무역전환효과에 의해 상쇄된다. 하지만 만약 FTA 회원국이 한 재화를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국가라면 무역전환효과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FTA로 인해 사회적 후생이 증가할지 아니면 감소할지는 실증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해봐야 할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FTA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만약 FTA로 인해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한다면 이는 FTA의 무역창출효과를 상쇄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무역전환효과의 원인은 한 재화를 비효율적으로 생산

하는 회원국의 관세율과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회원국의 관세율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이 관세율 격차는 FTA 체결 전에는 없었으나 FTA 체결 후 회원국의 관세율이 하락했기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관세율 격차를 줄인다면 무역전환효과는 완화될 수 있으며, 이는 대외관세율 인하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다.

이 정책은 기존 연구들에 의해 이론적 및 실증적으로 분석되었다. (Giovanni Maggi, 2014; Richardson, 1993; Bagwell and Staiger, 1997a, 1997b and 1999a; Bond et al, 2004; Ornelas(2005a, 2005b); Saggi and Yildiz, 2010) 기존 연구들 중 Richardson(1993)은 FTA 상황 속에서 대외관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관세수입을 극대화하는 정책이며, 이는 소국가에서도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Bagwell and Staiger(1999b)는 게임이론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FTA 상황에서 회원국은 비회원국에 대한 대외관세율을 인하하여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Richardson(1993)과 Bagwell and Staiger(1999b)에서 제시한 대외관세율 인하효과를 소위 '관세상보성효과' (tariff complementarity effects)라고 부른다.

하지만 FTA 회원국과 FTA 비회원국 간의 관세율 격차를 지나치게 줄일 경우 FTA에 따른 무역창출효과가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한다는 관점에서 대외관세율 인하정책을 통해 무역전환효과를 완화하되 FTA의 무역창출효과가 크게 감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대외관세율 인하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하지만 최적의 대외관세율 인하수준을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대외관세율 인하가 사회적 후생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살펴본다. 특히 FTA로 인한 관세율 철폐가 진행 중인 상황과 FTA가 완전 철폐된 상황을 설정하고 각 상황에서 대외관세율 인하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FTA로 인해 회원국 간 관세율이 철폐되기 전에 대외관세율을 지나치게 낮게 인하할 경우 수입품목에 따라 FTA 협정세율보다 대외관세율이 더 낮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FTA로 인해 무역창출효과가 무역전환효과보다 더 크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오히려 사회적 후

생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일반균형모형을 사용하여 FTA 체결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심관세를 인하가 사회적 후생 및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우리나라는 현재 중심관세를 8%를 유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국가 연산 가능한 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이하 CGE 모형)인 Global Trade Analysis Project(GTAP) 모형을 사용하여 중심관세율이 8%에서 5%로 인하하는 시나리오로 설정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한다.

FTA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하한다. 따라서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기까지 거치기간이 존재한다. 이 과정에서 기본관세율을 인하할 경우 기본관세율이 FTA 협정세율보다 더 낮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FTA 협정세율 인하가 진행되는 기간에 기본관세율을 인하하는 경우와 FTA 협정세율 인하가 완료된 시점에서 기본관세율을 인하하는 경우가 각각 다른 경제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론적 논의에 따르면 FTA 협정세율 인하가 완료된 시점에서 대외관세율 인하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FTA 미체결국가에게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지만 특정 상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탄력관세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탄력관세제도는 일시적인 경제적인 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이다. 탄력관세제도 중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도가 할당관세제도이다. 할당관세제도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기본관세율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이 모두 가능하나 일반적으로는 하향 조정한다. 할당관세제도는 FTA 비회원국의 대외관세율을 일시적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중심관세율 인하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 만약 할당관세가 사회적 후생 및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대외관세율 인하정책이 시행되기 전까지 할당관세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FTA 체결이 확대되고 대외관세율이 인하될수록 할당관세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대외관세율이 인하정책이 시행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할당관세제도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할당관세제도에서 가장 큰 지원 비중을 가진 원유(LPG 제조용)에 대해 할당관세제도 효과를 추정하고, 추정 결과를 토대로 향후 할당관세제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FTA 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지역) 중에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FTA를 중심으로 이들 FTA가 체결될 경우 중심관세율 변화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분석 대상 FTA로는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 국가들과의 FTA와 일본과의 FTA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는 현 상황에서 한·GCC FTA와 한·일 FTA가 체결되어 FTA가 더욱 확대될 경우 중심관세율 체계 변화의 경제적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한다. 한·GCC FTA가 체결된다면 원유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원유를 GCC 국가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FTA 미체결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원유에 대한 관세율도 철폐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한·GCC FTA가 체결될 경우 모든 국가에 대해 원유에 대한 수입 관세율을 철폐한다고 가정하고 중심관세율 변화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한·일 FTA가 체결된다면 전체적으로 수입 관세율이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관세율이 50% 또는 70% 철폐된다고 가정하고 중심관세율 인하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 1. CGE 모형<sup>17)</sup>

본 연구는 FTA가 확대되고 있는 정책 환경에서 중심관세율 체계의 변화가 우리나라의 사회적 후생 및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현재 FTA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심관세율 체계가 아직 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향후 중심관세율이 변화한다는 가상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한다.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분석방법은 현재 경제 상태에 정책변화 충격(shock)을 실시한 후 그 경제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

17) 본 연구의 GTAP 모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Erwin L. Corong et al.(2017)과 Brockmeier(2001), 그리고 정재호(2008)를 토대로 저자가 작성한 것이다.

를 살펴보는 것이며, 가장 보편화된 분석방법이 CGE 모형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CGE 모형은 이론적 모형과 그 모형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자료(사회계정행렬, SAM)로 구성된다. CGE 모형의 장점 중 하나는 실제 자료를 활용하여 정책변화에 따른 경제성장률(GDP 변화율), 사회적 후생 등의 변화를 수치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CGE 모형은 정태모형(static model)으로 외생적으로 경제적 충격(economic shock)이 주어졌을 때 초기 균형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는 모형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CGE 모형은 다국가 CGE 모형인 GTAP 모형이다. 본 연구의 GTAP 모형은 정태모형으로 단기 및 중장기와 같은 시간적 개념을 사용하여 분석결과를 해석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GTAP 모형은 크게 가계부문, 기업부문, 정부부문, 해외부문으로 구분되며, 해외부문은 FTA 회원국과 그 외 국가(rest of world)로 구분된다.

GTAP 모형에는 한 국가를 대표하는 지역가계(regional household)가 존재한다. 지역가계는 예산제약하에서 효용 극대화를 한다. 이때 효용함수는 콥-더글라스함수(Cobb-Douglas function)이다. 지역가계는 한 국가의 모든 경제주체들의 소득을 모으고 이를 일반가계지출, 정부지출, 저축으로 사용한다. 여기서 지역가계의 소득은 GDP와 유사한 개념이다.

정부와 일반가계는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수준을 결정한다. 이때 정부의 효용함수는 콥-더글라스함수(Cobb-Douglas function)이고, 일반가계(private household)의 효용함수는 CDE(Constant Difference of Elasticity) 효용함수이다. 정부와 일반가계는 국산재와 수입재가 결합된 재화를 소비하며, 이 재화를 소위 '아밍턴 재화'라고 한다. 아밍턴 재화 소비에 대한 정부와 일반가계의 의사결정은 아밍턴 함수(Armington Import Aggregation)에 의해 결정된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정부 및 일반가계가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국산재와 수입재가 결합된 아밍턴 재화를 구매한다는 것이다.

지역가계의 총저축은 모두 총투자로 이어진다. 총저축액은 요소시장에서 유보되는 자본에 대한 감가상각, 가계의 저축, 정부의 저축, 해외저축의 합으로 산출된다. 모든 국가들의 저축은 세계은행(global bank)을 통해 각 국

가의 투자자금으로 사용된다. 세계은행은 투자자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극대화하도록 국가들에게 자본을 배분한다. 그리고 투자재의 생산함수는 레온티에프(Leontief) 함수라고 가정한다. 즉 1단위 투자재는 레온티에프 함수를 토대로 투자용 재화들을 일정비율로 결합하여 생산된다.

본 연구의 GTAP 모형은 23개의 산업을 갖는다. 각 산업별로 대표 기업 하나 있다고 가정한다. 기업의 생산기술은 다투입·다산출이다. 기업은 일반가계의 노동과 자본과 중간투입재를 결합하여 제품을 생산한다. 노동과 자본 간의 관계는 CES(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함수로 나타난다. 기업은 국산재와 수입재가 결합된 중간투입재를 사용한다. 따라서 아밍턴 가정에 의해 기업은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국산재와 수입재가 결합된 중간투입재를 구입한다. 기업은 정부, 일반가계, 다른 기업에게 제품을 판매한다. 이때 발생한 수입은 모두 중간투입재화를 구매하고 생산에 필요한 노동과 자본 등에 대한 비용으로 사용된다. 기업이 생산한 제품은 CET(Constant Elasticity of Transformation) 함수를 통해 내수재와 수출재로 전환되어 판매된다.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위한 노동과 자본, 그리고 중간투입재의 수요량이 결정된다. 기업이 노동과 자본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중간투입재의 가격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GTAP 모형에서는 소득세, 소비세, 법인세, 수입세, 수출세가 있다. 정부, 일반가계, 기업, 정부는 국산재와 수입재를 소비하면서 소비세를 지역가계에 납부한다. 일반가계의 요소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기업의 제품 판매 수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부과된다. 기업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수입세, 수출품에 대해서는 수출세를 부과한다. 해외 국가에 귀속되는 판매 수입금은 모두 수출품을 구매하거나 수입세나 수출세 형태로 지역가계의 세수입에 반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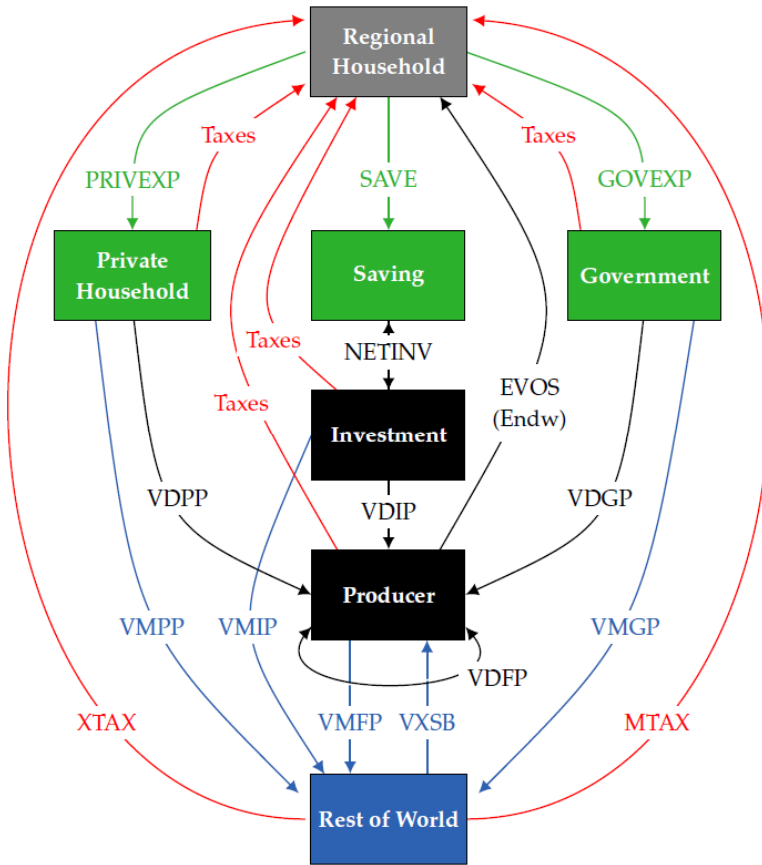
본 GTAP 모형의 시장 균형조건은 다음의 4가지와 같다.

- 각 생산부문에서 기업의 이윤은 0이다.
- 재화의 공급과 수요가 일치한다.

- 모든 노동과 자본은 사용된다.
- 총 저축의 합은 총 투자와 일치한다.

다음 그림은 앞서 제시한 한 국가 내에서 각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자세히 보여준다.

[그림 IV-1] 다국가 GTAP 모형 내 개방형 소국경제 개관



자료: Erwin L. Corong et al.(2017, p.10), Figure 1 Circular Flow in a Regional Economy

〈표 IV-1〉 다국가 GTAP 모형 내 개방형 소국경제 변수 설명

변수	설명
Regional Household	지역가계
Private Household	민간가계
Government	정부
Saving	저축부문
Investment	투자부문
Producer	생산자
Rest of World	기타세계
Taxes	세금(소득세, 법인세, 상품세, 관세)
PRIVEXP	민간소비
GOVEXP	정부지출
SAVE	지역저축
NETINV	지역투자
EVOS	요소소득
MTAX	수입세
XTAX	수출세
VMPP	민간수입
VMIP	투자부문수입
VMGP	정부수입
VMFP	생산자수입
VXSB	생산자수출
VDFP	생산자수요
VDPP	민간수요
VDGP	정부수요

자료: Erwin L. Corong et al.(2017, p.85), Table A.3, GTAP Data Base Input file 토대로 저자 작성

## 가. 모수 설정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퍼듀대학교(Purdue University)에서 구축한 GTAP 모형 안에 설정되어 있는 모수 값을 사용한다.<sup>18)</sup> GTAP 모형에서 사용한 탄력성 모수는 경제주체의 행태변화를 보여준다. GTAP 모형은 교역국과 관련된 두 개의 대체탄력성(source substitution elasticity)이 있다. 첫 번째 탄력성은 내수재와 수입재 간 대체탄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내수재와 수입재의 비중이 내수재의 상대가격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준다. 두 번째 탄력성은 수입재의 교역국 간 대체탄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각 교역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재화의 비중이 교역국의 수입재 상대가격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준다.

GTAP 모형은 요소와 관련하여 두 개의 탄력성을 가진다. 첫 번째는 요소대체탄력성이고, 두 번째는 요소이동탄력성이다. 요소대체탄력성은 노동과 자본의 비중이 노동과 자본의 상대가격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낸다. 요소이동탄력성은 요소가 산업간 이동이 완벽한지 아니면 불완전한지를 나타낸다. 본 연구의 GTAP 모형에서는 노동과 자본은 산업간 이동이 자유로움과 토지와 자연자원은 산업간 이동이 자유롭지 못함을 가정한다. 내수재와 수입재 간 탄력성, 수입재의 교역국 간 탄력성, 요소대체탄력성은 다음의 <표 IV-2>에 제시된 바와 같다.

---

18) 본 연구에서는 GTAP 모형의 탄력성 모수를 사용하였다. 보다 면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경제주체의 행태변화 등을 반영한 탄력성 모수를 계량모형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탄력성 모수를 추정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연구과제이고 관련 자료의 한계 등으로 본 연구는 모든 탄력성 모수를 새롭게 추정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탄력성 모수 추정을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하여,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표 IV-2〉 주요 행태 모수(behavioral parameters) I

구분	내수재와 수입재 간 대체탄력성	수입재의 교역국 간 대체탄력성	요소대체 탄력성
농림수산물	2.78	5.67	0.508
광산물	5.10	13.2	0.200
음식료품	2.15	4.48	1.120
섬유 및 가죽제품	3.78	7.59	1.260
목재 및 종이, 인쇄	3.09	6.31	1.260
원유	5.20	10.4	0.200
석탄 및 석유제품(원유 제외)	2.10	4.20	1.260
화학제품	3.30	6.60	1.260
비금속광물제품	4.20	8.40	1.260
제1차 금속제품	2.95	5.90	1.260
금속제품	3.75	7.50	1.260
기계	4.05	8.10	1.260
전기 및 전자기기	4.40	8.80	1.260
운송장비	3.16	6.37	1.260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3.75	7.50	1.260
전력, 가스 및 증기	2.80	5.60	1.260
건설	1.90	3.80	1.400
도소매서비스,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	1.90	3.80	1.680
운송서비스	1.90	3.80	1.680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1.90	3.80	1.260
금융 및 보험 서비스	1.90	3.80	1.260
부동산 및 임대, 사업서비스	1.90	3.80	1.260
기타	1.92	3.82	1.260

자료: GTAP 모형의 사회계정행렬(SAM)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한편 GTAP 모형은 소비자 수요에 대한 소득탄력성과 가격탄력성을 갖는다. 소득탄력성은 소득이 변화함에 따라 상품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민감하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준다. 가격대체탄력성은 상품 가격이 변화할 때 그

상품의 수요가 얼마나 민감하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낸다. 가격대체탄력성은 자기가격 대체탄력성과 교체가격 대체탄력성으로 구분된다. 자기가격 대체탄력성은 상품 *i*의 가격변화가 상품 *i*의 수요를 어느 정도 변화시키는지 나타내는 것이라면, 교체가격 대체탄력성은 상품 *j*의 가격변화가 상품 *i*의 수요를 어느 정도 변화시키는지 나타낸다. 이때 상품 *i*와 상품 *j*가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가졌다면 교체가격 탄력성은 음(-)의 값을 갖고 상품 *i*와 상품 *j*가 서로 대체적인 관계를 가졌다면 양(+의 값을 갖는다. 만약 상품 *i*와 상품 *j*가 서로 독립적인 관계를 가진다면 교체가격 탄력성은 0이 된다. 본 연구의 GTAP 모형에서 우리나라의 수요에 대한 소득탄력성과 가격대체탄력성은 다음의 <표 IV-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IV-3> 주요 행태 모수(behavioral parameters) II

구분	소득탄력성	가격대체탄력성
농림수산물	0,227	0,770
광산물	1,040	0,310
음식료품	0,394	0,535
섬유 및 가죽제품	0,503	0,472
목재 및 종이, 인쇄	1,030	0,311
원유	0,911	0,337
석탄 및 석유제품(원유 제외)	0,911	0,337
화학제품	1,030	0,311
비금속광물제품	1,030	0,311
제1차 금속제품	1,030	0,311
금속제품	1,030	0,311
기계	1,030	0,311
전기 및 전자기기	1,030	0,311
운송장비	1,030	0,311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1,030	0,311
전력, 가스 및 증기	1,040	0,310
건설	1,040	0,310
도소매서비스,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	1,220	0,282
운송서비스	0,911	0,337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0,911	0,337
금융 및 보험 서비스	1,140	0,292
부동산 및 임대, 사업서비스	1,240	0,275
기타	1,170	0,296

자료: GTAP 모형의 사회계정행렬(SAM)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 나. 분석 자료

본 연구의 GTAP 모형에서 사용한 자료는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들의 경제를 묘사하는 것으로, 경제를 구성하는 경제주체들의 행위가 서로 어떠한 상호관계를 갖는지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GTAP 모형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사회계정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라고 불린다.

본 연구는 퍼듀대학교에서 제공하는 GTAP 데이터베이스 9의 사회계정행렬을 사용한다. 이 자료는 2011년의 세계 경제를 나타내며, 140개 국가, 57개 산업, 5개 요소(토지, 비숙련노동자, 숙련노동자, 자본, 자연자원)로 구분된다.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GTAP 자료를 11개 국가, 23개 산업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sup>19)</sup> 일본의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경우에는 11개(또는 12개 국가), 23개 산업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GTAP 자료는 2011년 기준이기 때문에 2011년 이후 발효된 FTA의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1년 이후 발효된 9개의 국가를 별도로 구분하고 각 FTA에 따른 효과를 고려하여 2016년 기준 FTA 체결 국가 간 산업별 수입 실적관세율을 사용하여 GTAP 자료를 업데이트하였다.<sup>20)</sup>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수입액과 수입금액 자료를 사용하여 산업별 수입 실적관세율을 산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의 경우 자료의 부족으로 산업별 수입 실적관세율을 추정할 수 없었다. 이에 다른 FTA 체결 국가들의 2016년 기준 산업별 수입 실적관세율은 2011년 기준 수입 실적관세율에서 50% 인하된 수준이라고 가정하고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하였다.

19) 2016년 7월 한·콜롬비아 FTA가 발효되었고 2017년 3월 한·중미 FTA가 가시명한 상황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분석국가를 설정함에 있어서 FTA 발효시점 기준을 2015년 12월로 사용하였다. 콜롬비아를 본 연구대상 국가로 선정하지 않은 이유는 한·콜롬비아 FTA 발효시점이 2016년 7월로 그 이후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만 FTA 관세율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2015년 이후 발효된 FTA를 고려하여 연구대상 국가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0) GTAP 모형의 사회계정행렬에는 실적관세율(ad valorem tariff) 자료가 입력되어 있다. 여기서 실적관세율(%)은 관세수입액(import tariff revenue)을 수입금액(cif value of imports)으로 나누고 100을 곱한 것이다. 본 연구는 GTAP 모형에서 사용한 동일한 개념의 2016년 기준 실적관세율 자료를 사용하여 사회계정행렬의 실적관세율을 업데이트하였다.

이렇게 산업별 FTA 실적관세율 매트릭스를 작성하여 자료로 사용할 때 장점은 2016년 기준으로 FTA별로 특정 산업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실제 관세율을 모형 분석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적관세율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FTA 체결로 인해 모든 수입품에 FTA 협정세율인 무세(0%)가 적용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도 보았듯이, 산업별, FTA별로 FTA 협정세율 적용 비율에 다양해서 이러한 일률적인 적용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산업별, FTA별로 정리된 관세율을 이용하여 2016년 기준으로 중심관세율을 인하할 경우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의 경우 FTA가 2015년 12월에 발효되었다. 베트남은 아세안 국가에 속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의 협정세율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국가를 별도로 구분하기보다는 아세안 국가를 분석대상 국가로 구분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IV-4〉 국가 분류

구분	국가	FTA 발효 시기
1	한국	
2	아세안	2007년 6월
3	EU	2011년 7월
4	페루	2011년 8월
5	미국	2012년 3월
6	터키	2013년 5월
7	호주	2014년 12월
8	캐나다	2015년 1월
9	중국	2015년 12월
10	뉴질랜드	2015년 12월
11	일본	
12	기타국가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IV-5〉 국가별 산업별 관세율: 기타국가에 일본이 포함된 경우

구분	EU	아세안	미국	호주	중국	뉴질랜드	캐나다	터키	페루	기타국가
농림수산물	3.814	8.277	2.090	1.024	21.507	5.638	1.970	8.187	1.676	5.394
광산품	0.510	0.461	0.017	0.099	1.278	0.023	0.001	0.029	0.000	1.249
원유	0.704	1.140	2.613	1.727	3.000	3.000	0.000	0.000	0.000	2.527
음식료품	7.868	4.861	9.085	18.948	15.393	22.415	8.564	9.836	7.042	7.646
섬유 및 가죽제품	4.041	0.799	3.687	2.405	8.952	1.183	6.126	7.583	2.199	5.824
목재, 종이, 인쇄제품	2.211	2.697	0.113	2.304	4.172	1.248	0.063	1.798	0.000	0.793
석유 및 석탄제품	0.878	3.170	1.269	1.521	2.496	5.020	3.092	0.444	0.496	1.201
화학제품	1.565	1.309	1.365	0.716	3.431	2.186	2.188	0.572	0.192	4.243
비금속광물제품	1.295	3.303	2.561	0.958	8.048	0.442	3.599	0.698	7.691	5.999
제1차 금속제품	1.068	0.125	1.675	0.650	1.186	0.282	0.184	0.385	0.010	1.122
금속제품	3.164	1.913	4.070	4.099	2.170	1.549	2.339	1.497	7.837	3.934
일반기계 및 정밀기기	2.223	2.101	1.586	3.066	4.483	0.925	2.757	1.484	0.700	4.094
전기 및 전자기기	2.196	0.448	0.909	6.570	1.624	3.049	1.976	2.125	3.614	1.106
수송장비	0.568	4.073	0.297	1.743	3.964	1.146	3.962	1.024	8.000	5.230
기타 제조업 제품	2.153	0.778	1.529	0.944	3.418	2.419	1.009	1.467	7.384	5.346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IV-6〉 국가별 산업별 관세율: 기타국가에 일본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구분	EU	아세안	미국	호주	중국	뉴질랜드	캐나다	타키	페루	일본	기타국가
농림수산물	3.814	8.277	2.090	1.024	21.507	5.638	1.970	8.187	1.676	17.310	4.881
광산물	0.510	0.461	0.017	0.099	1.278	0.023	0.001	0.029	0.000	3.049	1.240
원유	0.704	1.140	2.613	1.727	3.000	3.000	0.000	0.000	0.000	0.000	2.527
음식료품	7.868	4.861	9.085	18.948	15.393	22.415	8.564	9.836	7.042	13.287	7.078
섬유 및 가죽제품	4.041	0.799	3.687	2.405	8.952	1.183	6.126	7.583	2.199	9.071	4.799
목재, 종이, 인쇄제품	2.211	2.697	0.113	2.304	4.172	1.248	0.063	1.798	0.000	2.304	2.304
석유 및 석탄제품	0.878	3.170	1.269	1.521	2.496	5.020	3.092	0.444	0.496	5.613	0.995
화학제품	1.565	1.309	1.365	0.716	3.431	2.186	2.188	0.572	0.192	5.201	2.587
비금속광물제품	1.295	3.303	2.561	0.958	8.048	0.442	3.599	0.698	7.691	6.394	4.692
제차 금속제품	1.068	0.125	1.675	0.650	1.186	0.282	0.184	0.385	0.010	1.442	0.879
금속제품	3.164	1.913	4.070	4.099	2.170	1.549	2.339	1.497	7.837	6.684	2.161
일반기계 및 정밀기기	2.223	2.101	1.586	3.066	4.483	0.925	2.757	1.484	0.700	4.610	3.138
전기 및 전자기기	2.196	0.448	0.909	6.570	1.624	3.049	1.976	2.125	3.614	2.709	0.497
수송장비	0.568	4.073	0.297	1.743	3.964	1.146	3.962	1.024	8.000	6.733	3.084
기타 제조업 제품	2.153	0.778	1.529	0.944	3.418	2.419	1.009	1.467	7.384	6.589	3.507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본 연구는 GTAP 자료의 57개 산업과 산업연관표의 30개 대분류 산업을 서로 최대한 맞추어 다음의 표에서 보듯이 23개의 산업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원유는 할당관세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산업이므로 산업분류 시 석탄 및 석유제품에서 원유를 별도로 구분하였다.

〈표 IV-7〉 산업 분류

구분	GTAP	산업연관표
1	농림수산물	농림수산물
2	광산물	광산물
3	음식료품	음식료품
4	섬유 및 가죽제품	섬유 및 가죽제품
5	목재 및 종이, 인쇄	목재 및 종이, 인쇄
6	원유	석탄 및 석유제품
7	석탄 및 석유제품(원유 제외)	
8	화학제품	화학제품
9	비금속광물제품	비금속광물제품
10	제1차 금속제품	제1차 금속제품
11	금속제품	금속제품
12	일반기계 및 정밀기기	기계 및 장비
		정밀기기
13	전기 및 전자기기	전기 및 전자기기
14	운송장비	운송장비
15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16	전력, 가스 및 증기	전력, 가스 및 증기
17	건설	건설
18	도소매서비스,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	도소매서비스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
19	운송서비스	운송서비스
20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21	금융 및 보험 서비스	금융 및 보험 서비스

〈표 IV-7〉의 계속

구분	GTAP	산업연관표
22	부동산 및 임대, 사업서비스	부동산 및 임대
		사업서비스
23	기타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 서비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문화 및 기타 서비스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본 연구의 사회계정행렬 구조는 GTAP 모형 내 각 경제주체의 경제활동 및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다음의 표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IV-8〉 GTAP 모형의 사회계정행렬(SAM)

구분	생산 활동	상품		요소	조세	최종수요		정부	저축 투자	무역 마진	기타 국가	합계
		수입재	국내재			국가	가계					
생산 활동			국내재 국내 생산									국내 판매
수입재	수입 중간재 수요										수출	총수요
국내재	국내 중간재 수요											
요소 생산	임금 및 자본임대료											
조세	법인세, 간접세	수입세	수출세	소득세			소비세	소비세	소비세			총재수입
국가				순 요소 소득	조세수입							총소득
가계						가계지출						가계소득
정부						정부지출						정부소득
저축 투자				감가상각		국내저축				해외저축		총저축
무역 마진	수입 무역마진											자본유출
기타 국가		수입										총수입
합계	총생산가치	총공급		요소지출	총재지출	총지출	가계 소비지출	정부 소비지출	총투자	자본유입	총수출	

자료: Burfischer(2011, p.48) Table 3.2 Accounts in a Social Accounting Matrix with a Regional Household

## 2. 중심관세율 인하효과 분석

### 가. 중심관세율 5%로 인하

본 연구는 FTA 체결 확대로 인해 관세구조가 변화는 상황에서 중심관세율 체계 변화가 어떠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오는지를 분석한다. FTA 체결 확대로 인해 동일한 수입물품에 대해 FTA 회원국 여부에 따라 적용받는 관세율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FTA는 무역장벽을 완화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해 FTA 회원국에 대해 무관세나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FTA 체결로 인해 수입이 증가하는 등 무역창출효과가 기대되지만 재화를 비효율적으로 생산하는 FTA 회원국의 경우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역외국에 대한 관세율 즉 대외관세율이 더 높아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감소하는 무역전환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FTA 체결이 확대될수록 우리나라에 수출하던 역외국은 수출선이 약화되거나 상실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역외국의 무역긴장이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FTA의 취지를 고려해볼 때 대외관세율을 FTA와 거의 유사하게 인하하는 것은 또 다른 무역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FTA 협정세율과 기본세율 간의 격차가 지나치게 크지 않도록 중심관세율을 재조정하거나 차등 관세율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중심관세율을 재조정하는 방안과 차등 관세율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재호(2008)가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정재호(2008)는 최적의 차등 관세율 구조를 모색하게 될 경우 사회적 후생 증가는 크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정재호(2008)는 관세율 체계 변화로 인한 비용을 감안하였을 때 최적 관세율 체계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중심관세율 체계를 유지하되, 중심관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FTA 환경에서 최적의 차등 관세율을 추정하기보다는 중심관세율이 인하하였을 때 경제적 파급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는 중심관세율 재조정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GTAP 모형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한다. 본 연구는 시나리오 분석 시

정책적 제약을 고려하기 위해 정부 세수입이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GTAP 모형은 시간의 개념이 없는 정태모형이지만 FTA 관세인하 일정이 중장기적으로 설정되고 중심관세율 인하효과가 온전하게 발생하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생산과 투자가 증가할 경우 자본축적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산업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수입품에 대해 중심관세율 8%를 적용한다.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중심관세율이 8%에서 5%로 인하하는 시나리오를 설정한다. 이 수준은 현재 WTO DDA 협상이 진전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동안 DDA 협상 중 비농산물 분야에서 논의된 관세율 인하 수준을 감안할 때에도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중심관세율이 8%에서 5%로 37.5%가 인하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산업의 실적관세율을 37.5% 인하한 것으로 시나리오를 설정한다. 다만 농림수산물과 음식료품의 경우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관세율이 지나치게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최대 10%까지만 인하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한편 중심관세율이 8%에서 5%로 낮아지면, FTA 체결 국가들의 실적관세율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재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석 자료는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2016년 기준의 실적관세율 자료이다. 시나리오에 따라 중심관세율을 5%로 37.5% 인하할 경우에는 산업별, FTA별로 FTA 협정세율 이외에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서 관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결국 산업별, FTA별 실적관세율도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대외관세율 인하가 산업별, FTA별로 얼마나 인하될지는 새로운 연구과제로 수행할 만큼의 큰 주제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산업별로 FTA별 실적관세율이 20%에서 50%까지 인하된다고 가정하였다.

본 연구는 대외관세율 인하수준에서 일정 비율만큼 FTA 실적관세율을 인하는 시나리오를 추가하여, 대외관세율이 인하된 상황에서 FTA 실적 관세율이 하락이 사회적 후생 및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시나리오 1〉은 다음과 같다.

- 〈시나리오 1〉 모든 산업에 대해 대외관세율을 37.5%(8% → 5%) 인하하  
되, 농림수산물과 음식료품의 대외관세율은 10%만 인하
- 〈시나리오 1-1〉 대외관세율 인하로 인해 FTA 실적관세율 20% 인하  
( $7.5\% = 37.5 \times 20\%$ )
- 〈시나리오 1-2〉 대외관세율 인하로 인해 FTA 실적관세율 30% 인하  
( $11.25\% = 37.5 \times 30\%$ )
- 〈시나리오 1-3〉 대외관세율 인하로 인해 FTA 실적관세율 40% 인하  
( $15.0\% = 37.5 \times 40\%$ )
- 〈시나리오 1-4〉 대외관세율 인하로 인해 FTA 실적관세율 50% 인하  
( $18.75\% = 37.5 \times 50\%$ )

현재 FTA가 체결된 상황에서 대외관세율(중심관세율)을 인하할 경우 무역전환효과 등이 사회적 후생과 경제성장효과에 반영된다. 따라서 다음 표에서 제시된 분석결과는 2016년 기준으로 FTA가 체결된 상황에서 우리나라 중심관세율을 8%에서 5%로 인하하여 대외관세율이 인하될 경우, 사회적 후생과 경제성장률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중심관세율을 8%에서 5%로 인하(대외관세율이 37.5% 인하)하고 이로 인해 FTA 실적관세율이 20% 인하한다면, 사회적 후생은 약 15억달러(약 1조 5천억원)<sup>21)</sup> 증가하고 국내총생산(GDP)이 0.41% 증가하였다.

FTA 실적관세율이 20%보다 더 인하된다면 사회적 후생 및 국내총생산에는 더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한다. 산업별 FTA 실적관세율이 더 낮아진다는 의미는 FTA 협정세율 적용비중이 더 증가하거나 혹은 FTA 협정세율 적용비중은 그대로지만 FTA 협정세율 이외의 세율로 수입되는 품목의 관세부담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이다. 따라서 관세율 하락으로 인해 그만큼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져 사회적 후생 및 국내총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21) 본 연구에서 1달러는 1,000원으로 가정하였다.

〈표 IV-9〉 〈시나리오 1〉의 분석결과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중심관세율 <sup>1)</sup>	시나리오	FTA 실적 관세율	사회적 후생 변화	GDP 변화율
시나리오 1	8% → 5% 인하 (37.5% 인하)	시나리오 1-1	20% 인하	1,500.3	0.41
		시나리오 1-2	30% 인하	1,579.2	0.42
		시나리오 1-3	40% 인하	1,707.5	0.45
		시나리오 1-4	50% 인하	1,834.0	0.47

주: 1) 농림수산물 및 음식료품의 경우에는 최대 10%까지만 인하할 수 있다고 가정함.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시나리오 1-2〉의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대외관세율 인하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후생과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크기는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가장 크다. 우리나라 대외관세율 인하정책으로 인해 사회적 후생이 감소한 FTA 회원 국가는 미국, 페루, EU이며 그중에서도 미국과 EU의 사회적 후생 감소폭이 크게 나타난다. 이는 수입과 수출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수출입은 증가하지만 대외관세율 인하로 미국과 EU와의 무역이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부표 1〉~〈부표 2〉 참조)

하지만 〈시나리오 1〉의 분석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 기준 산업별 FTA 실적관세율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관세율은 개별 품목별로 적용되지만, 개별 품목별로는 분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개별 품목을 산업으로 구분하여 평균 관세율을 계산하여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그 결과 앞에서도 보았듯이 FTA별로 비교 우위로 인해 FTA 협정세율 적용 비중이 높은 품목과 산업이 있기 때문에 대외관세율보다 FTA 협정 관세율이 더 낮기도 하지만 더 높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심관세율을 8%에서 5%로 인하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는 음식료품, 섬유 및 가죽제품, 석유 및 석탄제품, 제1차 금속제품, 금속제품, 전기 및 전자기기에서 대외관세율이 FTA

실적관세율보다 낮았다. EU의 경우에는 음식료품, 섬유 및 가죽제품, 목재, 종이, 인쇄제품, 석유 및 석탄제품, 제1차 금속제품, 금속제품, 전기 및 전자 기기에서 대외관세율이 FTA 실적관세율보다 낮았다. 따라서 현재의 실적관세율이 산업별, FTA별로 주어진 것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실제 경제에서는 이보다 더 세분화된 품목들 간에 교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부 품목들 간에 무역전환효과가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것보다 크게 완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 모형 분석의 한계로 인해 현실을 다 반영하지는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고 2016년 기준 연도에 중심관세율을 8%에서 5%로 인하할 경우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대외관세율이 8%에서 5%로 인하됨으로 인해 무역전환효과가 완화되었으나 일부 산업의 경우 FTA의 무역창출효과가 감소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과 EU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또한 중국과 일본이 포함되어 있는 기타국가들의 사회적 후생 증가가 나타난다. 현재의 실적관세율 수준에서 대외관세율을 8%에서 5%로 인하하면 미국과 EU에서 수입되던 품목들이 다른 국가 또는 FTA로 전환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만약 우리나라가 2016년을 기준으로 중심관세율을 8%에서 5%로 인하한다면, 우리나라의 사회적 후생은 증가하지만 미국과 EU는 수출 감소로 인해 후생이 감소하여 그만큼 FTA에 대한 우리나라와 미국과 EU 간에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중심관세율의 인하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은 증가하지만 모든 FTA 회원국의 국민총생산(GDP)은 감소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중심관세율 인하로 인해 산업별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향상되고 이것이 순수출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FTA 회원국의 경우에는 정반대의 결과가 초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10〉 〈시나리오 1-2〉의 국가별 사회적 후생 변화와 GDP 변화율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시나리오 1-2	
	사회적 후생 변화	GDP 변화율
호주	2.5	-0.03
뉴질랜드	14.0	-0.01
중국	511.4	-0.02
한국	1,579.2	0.42
아세안	8.7	-0.03
캐나다	43.1	-0.02
미국	-253.4	-0.03
페루	-0.5	-0.02
EU	-190.3	-0.03
터키	25.8	-0.02
기타국가	468.8	0.00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나. 섬유류 관세율 인하

앞서 보았듯이,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공산품에 중심관세율 8%를 적용하고 있지만 섬유 및 가죽제품의 경우에는 중심관세율보다 높은 관세율(13~16%)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WTO DDA 협상에서는 섬유류에 대해서도 다른 공산품과 동일하게 관세가 인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앞선 산업별 분석에서도 섬유류에 대한 FTA 협정세율 적용 비중이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편이라 우리나라가 섬유류에 대해 중심관세율 8%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섬유 및 가죽제품의 중심관세율을 다른 공산품과 마찬가지로 5%까지 인하된다고 가정하고 분석하였다.

- 〈시나리오 섬유〉 섬유 및 가죽제품은 65.5% (현행 수준 약 14.5% → 5.0%) 인하한다. 그 밖의 가정은 〈시나리오 1-2〉와 동일하다.

그 결과 섬유 및 가죽제품의 중심관세율 인하가 전체적인 사회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국가들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다. 이는 아마도 이미 아세안 등으로부터 섬유류 수입이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만 중심관세율 인하폭이 클수록 무역전환효과의 완화로 인해 아세안 국가 등으로부터의 수입이 감소하고 기타국가 등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아세안 국가의 사회적 후생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개별 산업 분석에는 분명 한계가 있음을 강조한다. 본 연구에서는 관세율 변화가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산업을 대분류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섬유 및 가죽제품의 경우에도 서로 다른 산업들이 묶여 있기 때문에 산업별 효과는 이러한 개별 섬유 및 가죽제품 산업들의 효과를 보면서 분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표 IV-11〉 〈시나리오 섬유〉의 분석결과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중심관세율1)	섬유 및 가죽제품	사회적 후생 변화	GDP 변화율
시나리오 1-2	8% → 5% 인하 (37.5% 인하)	9.0% (37.5% 인하)	1,579.2	0.42
시나리오 섬유	8% → 5% 인하 (37.5% 인하)	5.0% (65.5% 인하)	1,561.6	0.42

주: 1) 농림수산물 및 음식료품의 경우에는 최대 10%까지만 인하할 수 있다고 가정함.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다. FTA 최종 관세인하율 반영

본 연구는 FTA별로 최종 관세인하율을 조사하여 현재 FTA 실적관세율이 최종 관세인하율만큼 하락한 상황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무역전환효과는 최종 단계에서의 FTA 실적관세율에서 가장 크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FTA 관세율 인하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관세율을 인하하는 것보다 그 일정이 거의 완료된 시점에서 대외관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중요

할 것이다. 또한 이 경우, 인하된 대외관세율이 FTA 실적관세율보다 일반적으로 높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FTA의 무역창출효과가 대외관세율 인화로 상쇄되는 문제점이 크게 완화될 것이다.

〈시나리오 2〉에서는 인하된 대외관세율이 국가별 FTA 실적관세율보다 낮을 수 없다고 가정하였다. 〈시나리오 2〉 상황에서 대외관세율 인하하였을 때 농림수산품의 대외관세율이 FTA 실적관세율보다 낮은 경우가 있어 이 경우 현재 실적 대외관세율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림수산품의 실적관세율만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그 밖에 모든 산업의 실적관세율은 37.5%(음식료품의 경우, 10%) 인하하는 〈시나리오 2〉를 설정하였다.

- 〈시나리오 2〉 현재 각 국가의 FTA 실적관세율은 최종 관세인하율만큼 모두 인하된다고 가정한다. 모든 산업에 대해 대외관세율을 37.5% (8% → 5%) 인하하되, 농림수산품과 음식료품의 대외관세율은 10%만 인하한다. 이때 인하된 대외관세율은 국가별 FTA 실적관세율보다 낮을 수 없다.<sup>22)</sup>

---

22) 〈시나리오 2〉는 FTA에 따른 관세인하효과를 온전히 반영한 후 중심관세율 인하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FTA 최종 인하율 반영 시나리오 분석결과와 FTA 최종 인하율 반영 및 중심관세율 인하 시나리오 분석결과를 서로 비교하였다. 〈시나리오 1〉의 분석처럼 FTA 최종 관세인하율을 사회계정행렬에 반영한 뒤, 중심관세율 인하효과를 분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주요 분석결과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12〉 FTA 회원국별 최종 관세인하율

(단위: %)

구분	EU	아세안	미국	호주	중국	뉴질랜드	캐나다	터키	페루
농림수산물	96.1	73.6	98.5	86.9	65.2	84.5	87.6	46.7	93.1
광산물	100.0	100.0	100.0	100.0	99.5	100.0	100.0	100.0	100.0
원유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음식료품	98.9	82.8	100.0	95.5	77.8	94.8	90.4	60.4	97.4
섬유 및 가죽제품	100.0	100.0	100.0	100.0	90.1	100.0	100.0	99.7	100.0
목재, 종이, 인쇄제품	100.0	96.8	100.0	98.7	92.3	100.0	100.0	100.0	100.0
석유 및 석탄제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화학제품	100.0	99.4	100.0	100.0	99.0	100.0	99.9	99.0	100.0
비금속광물제품	100.0	100.0	100.0	100.0	94.1	100.0	100.0	100.0	100.0
제1차 금속제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금속제품	100.0	100.0	100.0	100.0	98.2	100.0	100.0	100.0	100.0
일반기계 및 정밀기기	100.0	100.0	100.0	100.0	99.4	100.0	100.0	100.0	100.0
전기 및 전자기기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송장비	100.0	100.0	100.0	100.0	89.1	100.0	100.0	100.0	100.0
기타 제조업 제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011년 이후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의 관세인하 일정이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중심관세율(대외관세율)을 인하하면 FTA 협정세율과 대외관세율 간의 격차가 감소한다. 이는 무역전환효과가 완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결과는 사회적 후생과 경제성장효과에 반영될 것이다. <표 IV-13>의 기준 시나리오는 중심관세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면서 FTA 실적관세율은 최종 관세인하율만큼 인하한 것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사회적 후생은 약 18,295 백만달러(약 18조원) 증가하고 국내총생산은 3.68% 증가하였다. 이 상황에서 중심관세율을 8%에서 5% 인하할 경우, 사회적 후생은 약 19,560 백만달러(약 19.6조원) 증가하고 국내총생산은 4.02% 증가하였다. 따라서 FTA 관세인하 일정이 최종 완료된 이후 중심관세율 인하에 따른 사회적 후생 증가분은 약 1,265억달러(약 1.3조원)이며 국내총생산 증가분은 약 0.34%p이다.

대외관세율 인하로 가장 크게 사회적 후생 및 경제성장이 증가한 국가는 우리나라이며, 그다음은 기타국가이다. 반면, 대외관세율 인하로 가장 크게 사회적 후생이 감소한 국가는 미국과 EU이다. 이는 대외관세율 인하로 미국과 EU와의 교역이 감소하고 기타국가와의 교역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FTA로 인해 기타국가로부터의 수입이 감소하고 미국과 EU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여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였으나 대외관세율 인하로 무역전환효과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외관세율 인하 시 수입이 1% 이상 증가하는 산업은 원유, 화학제품, 제1차 금속제품, 금속제품, 일반기계 및 정밀기계, 기타 제조업 제품이다. 이때 화학제품, 제1차 금속제품에 대해 미국과 EU는 상대적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기타국가는 증가한다. 따라서 이 산업에 대해 무역전환효과가 대외관세율 인하로 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부표 4>~<부표 5> 참조)

〈표 IV-13〉 〈시나리오 2〉의 분석결과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중심관세율 <sup>1)</sup>	FTA 관세율	사회적 후생 변화	GDP 변화율
기준 시나리오 (A)		최종 관세인하율 반영	18,294.6	3.68
시나리오 2 (B)	8% → 5% (37.5% 인하)	최종 관세인하율 반영	19,560.1	4.02
중심관세율 변화 효과 (B-A)			1,265.5	0.34

주: 1) 농림수산물 및 음식료품의 경우에는 최대 10%까지만 인하할 수 있다고 가정함.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IV-14〉 〈시나리오 2〉의 국가별 사회적 후생 변화

(단위: 백만달러, %, %p)

시나리오	기준 시나리오 (A)		시나리오 2 (B)		변화분 (B-A)	
	사회적 후생 변화	GDP 변화율	사회적 후생 변화	GDP 변화율	△ 사회적 후생 변화	△ GDP 변화율
호주	327.2	0.01	300.8	-0.03	-26.4	-0.04
뉴질랜드	12.4	0.06	18.9	0.04	6.5	-0.02
중국	2,298.6	0.10	2,226.7	0.06	-71.9	-0.04
<b>한국</b>	<b>18,294.6</b>	<b>3.68</b>	<b>19,560.1</b>	<b>4.02</b>	<b>1,265.5</b>	<b>0.34</b>
아세안	-866.7	-0.10	-921.7	-0.14	-55	-0.04
캐나다	-345.0	0.00	-314.3	-0.02	30.7	-0.02
미국	-793.5	0.03	-1,099.0	0.00	-305.5	-0.03
페루	-34.8	-0.03	-36.5	-0.06	-1.7	-0.03
EU	-3,840.7	0.01	-4,219.3	-0.02	-378.6	-0.03
터키	-421.5	-0.05	-416.1	-0.08	5.4	-0.03
기타국가	-773.0	0.00	-296.0	0.00	477	0.00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3. 한·GCC FTA와 한·일 FTA 효과분석

#### 가. 한·GCC FTA

현재 우리나라는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국가와 FTA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협상이 중단된 상황이다.<sup>23)</sup> 하지만 최근 GCC 국가는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하였으며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 가능성도 다시 언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한·GCC FTA를 분석에 추가한 이유는 우리나라 원유, 천연가스, 역청유 등에 대한 관세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원유의 약 67%가 GCC 국가로부터 수입되고 있어 한·GCC FTA 체결은 곧 우리나라 원유 관세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GCC FTA 체결로 원유에 대해 무세(0%)가 적용되면, 현재 우리나라가 실시하고 있는 원유다변화 정책에 의해 다른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원유에 대해서도 무세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만약 다른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원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일정 정도의 관세율을 부과한다면 무세가 적용되는 GCC 즉 중동국가들에 대한 원유 수입 의존도는 지금보다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GCC FTA 체결로 인해 원유 관세가 무세(0%)가 되면, 이는 곧 우리나라가 전체 원유 수입에 대해 무세화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효과가 나타난다. 원유 수입이 우리나라 전체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관세 수입도 상당하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관세율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본 연구는 2011년 이후 시행된 FTA의 관세인하 일정이 완료된 상황에서 한·GCC FTA가 발효된 경우를 가정하였다. 본 연구는 한·GCC FTA가 발효된 이후 중심관세율 인하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한·GCC FTA가 체결될 경우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원유의 관세율이 무세(0%)가 된다고 가정하였다. 그리고 이 가정을 토대로 다음의 <시나리오 3>을 설정하였다.

---

23) GCC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으로 구성된다.

- 〈시나리오 3〉 :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원유의 관세율은 0%이다. 그 밖의 가정은 〈시나리오 2〉와 동일하다.

앞선 〈시나리오 2〉에서 보았듯이, 기존 FTA의 관세인하 일정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상황에서 사회적 후생은 약 18,295백만달러(약 18조원) 증가하였고 국내총생산은 3.68% 증가하였다. 이 상황에서 중심관세율을 인정한 경우 사회적 후생과 국내총생산이 증가하여, 사회적 후생 증가분은 약 1,265억달러(약 1.3조원)이며 국내총생산 증가분은 약 0.34%p였다.

기존 FTA의 관세인하 일정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한·GCC FTA가 체결되어 모든 국가로부터의 원유 수입관세율이 무세(0%)가 될 경우, 사회적 후생은 약 18,170백만달러(약 18조원) 증가하고 국내총생산은 3.96% 증가하였다. 기존 FTA의 관세철폐만 이루어진 상황의 경우보다 사회적 후생은 소폭 감소하였고 국내총생산은 0.28%p 증가한 것이다. 한·GCC FTA가 발효된 상황에서 중심관세율을 추가로 인하할 경우 사회적 후생은 19,452백만달러로 증가하고 국내총생산은 4.19% 증가하였다. 결국 한·GCC FTA가 체결된 이후 중심관세율을 추가로 인하하면 약 1,282백만 달러 증가하고 국내총생산은 0.23%p 증가하였다.

기존 FTA로 인해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대외관세율 인하는 사회적 후생 및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무역전환효과가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한·GCC FTA가 체결되어 FTA가 더욱 확대된 상황을 한·GCC FTA가 체결되지 않은 상황(원유 수입 무관세가 아닌 경우)과 비교해 보면 사회적 후생은 소폭 감소하였고 국내총생산 변화율은 증가하였다. 본 모형에서는 세수 중립성을 가정하였다. 원유의 무관세화는 세수손실을 발생시킨다. 하지만 원유의 무관세로 원유 관련 산업의 가격경쟁력이 향상되어 국내총생산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원유의 무관세로 인한 세수손실을 상쇄할 것이다. 하지만 국내총생산의 증가로 인해 세수입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그 증가수준이 원유의 무관세로 인한 세수손실분을 다 상쇄하지 못할 경우 본 모형의 세수 중립적 가정에 따라 물품세가 증가하며 이는 결과

적으로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킨다. 본 연구결과는 한·GCC FTA 체결로 인해 원유 관세율이 무세(0%)가 되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세수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이것이 결과적으로 사회적 후생의 감소로 이어졌으나 그 크기가 작음을 보여준다. 또한 원유의 무관세로 원유와 관련된 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어 경제성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원유 수입 무관세로 인한 수입효과를 살펴보면, 기존 FTA 관세철폐 스케줄이 완료되고 중심관세율이 인하된 상황에서 수입과 한·GCC FTA가 추가로 체결된 상황에서 중심관세율이 인하된 상황을 비교해 보면 원유에 대한 수입은 2.21%p 증가하지만 원유와 관련된 산업의 수입은 1.05%p 감소한다. 수출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큰 변화가 없지만 원유에 대한 수출 변화율의 감소분이 0.73%p로 가장 크게 감소한다. 이때 원유 관련 산업의 수출은 크지는 않지만 0.03%p 증가한다. 따라서 원유에 대한 무관세로 인해 원유의 수입이 증가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원유 관련 산업의 수입이 감소하고 수출은 증가한다. 원유에 대한 관세철폐로 원유 수입재의 가격 경쟁력은 향상되고 기업이 생산한 물품의 수요는 내수재보다 수출재가 좀 더 증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표 IV-15〉 〈시나리오 3〉의 분석결과

(단위: 백만달러, %, %p)

구분	중심관세율 <sup>1)</sup>	원유 실적 관세율	사회적 후생 변화	GDP 변화율
기준 시나리오 (A)	-	-	18,294.6	3.68
시나리오 2 (B)	8% → 5% (37.5% 인하)	37.5% 인하	19,560.1	4.02
기준 시나리오 3 (C)	-	무세(0%)	18,170.4	3.96
시나리오 3 (D)	8% → 5% (37.5% 인하)	무세(0%)	19,452.6	4.19
중심관세율 인하효과 (B-A)			1,265.5	0.34%p
원유 무관세 효과 (C-A)			- 124.2	0.28%p
한·GCC FTA체결 후 중심관세율 인하효과 (D-C)			1,282.2	0.23%p

주: 1) 농림수산물 및 음식료품의 경우에는 최대 10%까지만 인하할 수 있다고 가정함.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IV-16〉 한·GCC FTA의 수입·수출효과

(단위: %, %p)

구분	수입 변화율			수출 변화율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변화분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변화분
	A	B	C=B-A	D	E	F=E-D
농림수산물	4.83	4.83	0.00	7.53	7.37	0.00
광산품	2.12	2.47	0.35	0.53	0.65	0.01
원유	3.42	5.63	2.21	11.88	1.48	-0.73
음식료품	15.72	15.69	-0.03	21.27	21.23	-0.01
섬유 및 가죽제품	15.18	15.18	0.00	20.4	20.28	-0.02
목재, 종이, 인쇄제품	7.5	7.56	0.06	0.73	0.69	-0.01
석유 및 석탄제품	3.21	2.16	-1.05	10.75	6.06	0.03
화학제품	6.98	7.03	0.05	9.8	8.31	-0.02
비금속광물제품	7.58	7.66	0.08	6.42	6.23	0.02
제1차 금속제품	5.63	5.64	0.01	4.06	3.76	-0.01
금속제품	13.48	13.56	0.08	3.69	3.63	-0.01
일반기계 및 정밀기기	8.98	9.11	0.13	6.93	6.98	-0.02
전기 및 전자기기	5.79	5.83	0.04	1.34	1.37	-0.01
전력, 가스 및 증기	2.55	2.13	-0.42	-0.56	-1.35	-0.01
수송장비	8.77	8.86	0.09	7.27	7.27	-0.01
기타 제조업 제품	13.17	13.24	0.07	11.26	11.42	-0.02
건설	3.67	3.72	0.05	-5.28	-5.21	-0.01
도소매서비스 등	4.15	4.17	0.02	-5.36	-5.28	-0.01
운송서비스	2.02	1.93	-0.09	-0.77	-1.03	0.03
방송서비스 등	3.3	3.34	0.04	-5.51	-5.38	-0.01
금융 및 보험 서비스	4.57	4.66	0.09	-6.82	-6.63	-0.02
사업서비스 등	4.75	4.94	0.19	-7.17	-6.99	-0.01
기타 서비스	5.07	5.17	0.10	-7.26	-7.09	-0.01

자료: GTAP 분석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 나. 한·일 FTA

한·일 FTA는 2000년 초에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2004년 이후로 추가적인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sup>24)</sup> 우리나라가 다수의 국가들과 FTA를 체결 하였지만, 거대 경제권으로서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일 FTA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011년 이후 시행된 FTA의 관세인하 일정이 완료된 상황에서 한·일 FTA가 발효된 경우를 가정하였다. 한·일 FTA가 체결될 경우 모든 산업의 관세율이 50% 또는 70%로 인하된다고 가정한다. 또한 기존 FTA에 한·일 FTA가 추가적으로 체결된 상황을 가정하고 이후에 중심관세율을 인하할 경우 사회적 후생 및 경제성장 효과를 추정하였다.

- 〈시나리오 4-1〉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모든 수입품과 수출품에 대한 관세율이 50% 인하된다. 그 밖의 가정은 〈시나리오 2〉와 동일하다.
- 〈시나리오 4-2〉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모든 수입품과 수출품에 대한 관세율이 70% 인하된다. 그 밖의 가정은 〈시나리오 2〉와 동일하다.

기존 FTA의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한·일 FTA가 체결되어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관세율이 50% 인하된 경우 사회적 후생은 1,185백만달러(약 11.9억원) 증가하고 국내총생산은 0.43%p 증가한다. 이 상황에서 중심관세율 인하정책을 시행할 경우 사회적 후생은 추가적으로 475백만달러 증가하고 국내총생산은 0.70%p 증가한다. 동일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관세율이 70% 인하된 경우 사회적 후생은 1,855백만달러(약 18.6억원) 증가하고 국내총생산은 0.59%p 증가한다. 이 상황에서 중심관세율 인하정책을 시행할 경우 사회적 후생은 추가적으로 474백만달러 증가하고 국내총생산은 0.70%p 증가한다. 본 연구결과는 FTA로 인해 관세철폐가 이루어지고 한·일 FTA가 추가적으로 체결될 경우 대외관세율 인하정책은 사회적

24) 국제무역연구원, 한국FTA 추진현황, 한·일 FTA, [http://www.kita.net/newtri/new\\_fta\\_info/ListFtaStatus.jsp?selectedNationCode=999](http://www.kita.net/newtri/new_fta_info/ListFtaStatus.jsp?selectedNationCode=999), 접속일: 2017.10.27.

후생 및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TA 확대로 인해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였으나 대외관세를 인하가 이를 완화하였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사회적 후생의 증가와 경제성장률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관세율이 50% 인하(기준 시나리오 4-1)된 이후 추가로 우리나라 중심관세율을 5%로 인하(시나리오 4-1)하면 중국의 사회적 후생이 가장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우리나라, 기타국가 등의 순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미국과 EU는 사회적 후생이 감소하며, 그중에서도 EU의 사회적 후생이 가장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FTA 및 대외관세율 인하로 대외무역이 증가하여 사회적 후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수입변화를 보면 한·일 FTA 체결 후(관세율 50% 인하) 대외관세율 인하로 광산물, 원유, 제1차 금속제품, 전기 및 전자기기의 수입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다. 이때 동일한 산업에서 기타국가의 수출이 증가하는 반면 미국 또는 EU의 수출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일 FTA로 관세율이 70% 인하된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 이는 FTA로 인한 무역전환효과가 대외관세율 인하정책으로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관세율이 50% 인하(기준 시나리오 4-1)된 이후 추가로 우리나라 중심관세율을 5%로 인하(시나리오 4-1)할 경우의 국가별 국내총생산 변화율의 변화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대외관세율 인하로 0.70%p 증가하며, 이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가장 크게 나타난다. 또한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관세율이 70% 인하(기준 시나리오 4-2)된 이후 추가로 우리나라 중심관세율을 5%로 인하(시나리오 4-2)할 경우의 국가별 국내총생산 변화율의 변화를 비교한 경우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수출 변화율을 보면 대외관세율 인하 후 광업과 목재·종이·인쇄제품에서 각각 38.59%p와 16.44%p 증가하고 있다. 이는 대외관세율 인하함에 따라 산업별로 가격 경쟁력이 향상되고 이것이 수출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표 IV-17〉 〈시나리오 4-1〉과 〈시나리오 4-2〉의 분석결과

(단위: 백만달러, %, %p)

구분	중심관세율 <sup>1)</sup>	일본 FTA 관세율	사회적 후생 변화	GDP 변화율
기준 시나리오 (A)	-	-	18,294.6	3.68
시나리오 2 (B)	37.5% 인하 (8% → 5%)	-	19,560.1	4.02
기준 시나리오 4-1 (C)	-	50% 인하	19,479.4	4.11
시나리오 4-1 (D)	37.5% 인하 (8% → 5%)	50% 인하	19,954.5	4.81
기준 시나리오 4-2 (E)	-	70% 인하	20,149.6	4.27
시나리오 4-2 (F)	37.5% 인하 (8% → 5%)	70% 인하	20,623.4	4.97
기준 FTA 관세철폐 및 중심관세율 인하효과 (B-A)			1,265.5	0.34%p
한·일 관세율 50% 인하 및 중심관세율 인하효과 (D-C)			475.1	0.70%p
한·일관세율 70% 인하 및 중심관세율 인하효과 (F-E)			473.8	0.70%p

주: 1) 농림수산물 및 음식료품의 경우에는 최대 10%까지만 인하할 수 있다고 가정함.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IV-18〉 〈시나리오 4-1〉의 국가별 사회적 후생 변화 및 국내총생산 변화율

(단위: 백만달러, %, %p)

시나리오	기준 시나리오 4-1 (A)		시나리오 4-1 (B)		변화분 (B-A)	
	사회적 후생 변화	GDP 변화율 변화	사회적 후생 변화	GDP 변화율	△ 사회적 후생 변화	△ GDP 변화율
호주	182.91	-0.09	351.16	-0.09	168.25	0.00
뉴질랜드	-68.00	-0.08	-31.90	-0.07	36.10	0.01
중국	1,485.94	0.05	2,606.37	0.04	1,120.43	-0.01

〈표 IV-18〉 계속

(단위: 백만달러, %, %p)

시나리오	기준 시나리오 4-1 (A)		시나리오 4-1 (B)		변화분 (B-A)	
	사회적 후생 변화	GDP 변화율 변화	사회적 후생 변화	GDP 변화율	△ 사회적 후생 변화	△ GDP 변화율
한국	1,9479.36	4.11	1,9954.48	4.81	475.12	0.70
일본	-1,017.75	0.00	-709.29	-0.01	308.46	-0.01
아세안	-26.35	-0.04	308.61	-0.05	334.96	-0.01
캐나다	-296.14	-0.01	-290.28	-0.02	5.86	-0.01
미국	-1,025.84	0.01	-1,046.76	-0.01	-20.92	-0.02
페루	-31.85	-0.05	-28.55	-0.06	3.30	-0.01
EU	-3,849.82	-0.01	-4,296.80	-0.03	-446.98	-0.02
터키	-390.85	-0.06	-377.58	-0.08	13.27	-0.02
기타국가	-500.33	0.00	-60.22	0.00	440.11	0.00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IV-19〉 〈시나리오 4-2〉의 국가별 사회적 후생 변화 및 국내총생산 변화율

(단위: 백만달러, %, %p)

시나리오	기준 시나리오 4-2 (A)		시나리오 4-2 (B)		변화분 (B-A)	
	사회적 후생 변화	GDP 변화율 변화	사회적 후생 변화	GDP 변화율	△ 사회적 후생 변화	△ GDP 변화율
호주	165.86	-0.09	333.75	-0.09	167.89	0.00
뉴질랜드	-74.63	-0.09	-38.57	-0.08	36.06	0.01
중국	1,197.70	0.04	2,321.46	0.04	1,123.76	0.00
한국	20,149.59	4.27	20,623.40	4.97	473.81	0.70
일본	37.40	0.07	338.46	0.06	301.06	-0.01
아세안	-212.89	-0.05	123.74	-0.06	336.63	-0.01
캐나다	-312.99	-0.01	-307.39	-0.03	5.60	-0.02
미국	-1,144.62	0.01	-1,164.13	-0.01	-19.51	-0.02
페루	-33.37	-0.05	-30.11	-0.06	3.26	-0.01
EU	-4,069.87	-0.01	-4,516.64	-0.03	-446.77	-0.02
터키	-406.51	-0.07	-393.33	-0.08	13.18	-0.01
기타국가	-517.79	0.00	-79.08	0.00	438.71	0.00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IV-20〉 시나리오별 한·일 FTA의 수입효과

(단위: %, %p)

구분	수입 변화율					
	기준 시나리오 4-1	시나리오 4-1	변화분	기준 시나리오 4-2	시나리오 4-2	변화분
	A	B	B-A	D	E	E-D
농림수산물	6.94	6.98	0.04	7.77	7.82	0.05
광산물	1.89	3.17	1.28	1.94	3.22	1.28
원유	2.70	9.65	6.95	2.79	9.75	6.96
음식료품	8.87	8.89	0.02	9.56	9.59	0.03
섬유 및 가죽제품	11.39	11.35	-0.04	11.64	11.60	-0.04
목재, 종이, 인쇄제품	8.02	8.20	0.18	8.32	8.50	0.18
석유 및 석탄제품	3.48	2.26	-1.22	3.73	2.50	-1.23
화학제품	9.18	9.87	0.69	9.94	10.62	0.68
비금속광물제품	3.86	3.40	-0.46	4.05	3.59	-0.46
제1차 금속제품	8.49	9.05	0.56	9.21	9.76	0.55
금속제품	14.29	15.01	0.72	14.85	15.57	0.72
일반기계 및 정밀기기	7.23	7.60	0.37	7.58	7.95	0.37
전기 및 전자기기	10.05	11.32	1.27	10.39	11.65	1.26
전력, 가스 및 증기	3.09	1.48	-1.61	3.13	1.53	-1.60
수송장비	10.70	11.31	0.61	11.20	11.81	0.61
기타 제조업 제품	6.29	6.24	-0.05	6.48	6.43	-0.05
건설	3.80	4.06	0.26	3.90	4.16	0.26
도소매서비스 등	4.44	4.61	0.17	4.54	4.72	0.18
운송서비스	2.17	1.91	-0.26	2.25	1.99	-0.26
방송서비스 등	3.46	3.65	0.19	3.56	3.75	0.19
금융 및 보험 서비스	4.78	5.22	0.44	4.93	5.37	0.44
사업서비스 등	4.77	5.55	0.78	4.94	5.72	0.78
기타 서비스	5.21	5.69	0.48	5.37	5.85	0.48

자료: GTAP 분석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표 IV-21〉 시나리오별 한·일 FTA의 수출효과: 미국, EU, 기타 국가

(단위: %p)

구분	수출 변화율					
	관세율 50% 인하			관세율 70% 인하		
	미국	EU	기타국가	미국	EU	기타국가
농림수산물	0.00	0.03	-0.06	0.06	0.02	-0.02
광산물	0.00	0.04	0.16	0.05	0.04	0.18
원유	-0.09	-0.50	0.12	0.19	-0.50	0.32
음식료품	-0.01	0.01	-0.36	0.03	0.01	-0.03
섬유 및 가죽제품	0.00	0.02	-0.56	0.07	0.02	-0.16
목재, 종이, 인쇄제품	0.00	0.01	-0.01	0.05	0.01	-0.11
석유 및 석탄제품	0.03	-0.17	-0.06	-0.27	-0.17	-0.52
화학제품	-0.01	-0.14	-0.43	-0.21	-0.14	-0.09
비금속광물제품	0.00	0.07	0.01	0.19	0.08	-0.41
제1차 금속제품	0.01	-0.03	-0.32	-0.09	-0.02	0.18
금속제품	0.01	0.01	-0.08	0.02	0.01	0.07
일반기계 및 정밀기기	0.00	0.05	-0.23	0.09	0.05	-0.27
전기 및 전자기기	0.00	-0.04	-0.60	-0.15	-0.04	0.60
전력, 가스 및 증기	-0.02	0.02	0.07	0.01	0.01	-0.07
수송장비	0.00	0.01	-0.02	0.03	0.02	-0.02
기타 제조업 제품	-0.01	0.03	0.05	0.09	0.04	-0.15
건설	-0.03	0.04	0.42	0.06	0.04	-0.03
도소매서비스 등	-0.01	0.02	0.25	0.05	0.02	-0.04
운송서비스	0.00	0.01	0.32	0.01	0.01	-0.05
방송서비스 등	-0.01	0.01	0.15	0.03	0.01	-0.05
금융 및 보험 서비스	-0.01	0.02	0.18	0.04	0.02	-0.04
사업서비스 등	-0.02	0.04	0.24	0.04	0.03	-0.02
기타 서비스	-0.01	0.02	0.25	0.06	0.02	-0.04

주: 본 표에 제시된 값은 각 국가별로 기준 (시나리오 4-1)의 수출 변화율과 (시나리오 4-1)의 수출 변화율과 기준 (시나리오 4-2)의 수출 변화율과 (시나리오 4-2)의 수출 변화율의 차이를 나타냄.

자료: GTAP 분석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 4. 할당관세제도 효과분석

앞서 언급하였듯이, 할당관세제도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탄력관세제도로 원활한 물자수급, 국내가격 안정, 산업경쟁력 강화, 유사물품 간 현저한 세율 불균형을 위해 특정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중심관세율보다 낮게 적용한다. 할당관세는 일시적인 경제적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 적용기간이 대개 1년 또는 상하반기 6개월을 기준으로 운용된다.

특정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가 적용된다는 것은 중심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외관세율이 일시적으로 인하되는 효과를 갖는다. 앞서 보았듯이, 최근 할당관세 정책방향은 물가 안정에서 산업경쟁력 지원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할당관세 적용 품목수도 2011~2012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현재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품목들 중 다수가 농산물이고 일부 공산품에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할당관세 적용 품목들 중에서도 다른 품목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할당관세로 수입되는 액수가 큰 품목이 원유(나프타 및 LPG용)이다. 본 연구는 할당관세 수입액 규모가 가장 큰 원유를 중심으로 할당관세제도의 효과를 살펴본다. 할당관세효과 추정방법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만약 원유의 할당관세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의 사회적 후생 변화분과 국내 총생산 변화율을 추정한 후, 추정된 결과를 할당관세가 적용된 경우의 결과와 비교하는 것이다. 원유에 대해 실적관세율은 2.53%이나 할당관세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2.98%이다. 따라서 할당관세 실적관세율을 0.45%p 인상할 경우 사회적 후생 변화 및 국내총생산 변화율을 추정한다.

- 〈시나리오 할당〉 원유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유의 실적관세율은 2.53%에서 2.98%로 인상된다.

다음의 분석결과는 할당관세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사회적 후생이 3백만 달러 감소하고 국내총생산(GDP)은 0.05% 감소했을 것임을 보여준다. 이는 다시 말하면 할당관세 적용으로 인해 원유 수입과 수출이 증대되어 사회적

후생이 3백만달러 증가하고 국내총생산도 0.05%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를 보면 국내총생산의 상승분에 비해 사회적 후생 증가분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세수중립이라는 가정 때문이다.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는 원유의 수입가격을 인하시키고 결과적으로 원유와 관련된 산업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하여 사회적 후생 및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세수중립을 가정한다. 할당관세는 관세수입을 감소시키지만 경제성장에 의해 그 수입 감소분이 어느 정도 상쇄된다. 원유에 대한 관세수입 감소분이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입 증가분보다 더 클 경우에는 판매세를 인상하여 세수를 중립적으로 유지한다. 따라서 할당관세로 인한 관세수입의 인하로 판매세가 인상되고 그 정도가 클수록 사회적 후생은 감소할 것이다.

〈표 IV-22〉 〈시나리오 할당〉의 분석결과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사회적 후생 변화	GDP 변화율(%)
시나리오 할당	-3.22	-0.05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IV-23〉 〈시나리오 할당〉에 대한 수입·수출효과

(단위: %)

구분	수입 변화율	수출 변화율
농림수산물	0.00	-0.04
광산물	-0.10	0.04
원유	-0.58	-2.72
음식료품	0.00	-0.01
섬유 및 가죽제품	0.00	-0.03
목재, 종이, 인쇄제품	-0.02	-0.01
석유 및 석탄제품	0.29	-1.22
화학제품	-0.01	-0.39
비금속광물제품	-0.02	-0.05

〈표 IV-23〉의 계속

(단위: %)

구분	수입 변화율	수출 변화율
제1차 금속제품	0.00	-0.08
금속제품	-0.02	-0.02
일반기계 및 정밀기기	-0.04	0.02
전기 및 전자기기	-0.01	0.01
전력, 가스 및 증기	0.11	-0.23
수송장비	-0.03	0.00
기타 제조업 제품	-0.02	0.04
건설	-0.02	0.02
도소매서비스 등	-0.01	0.03
운송서비스	0.02	-0.08
방송서비스 등	-0.01	0.04
금융 및 보험 서비스	-0.03	0.06
사업서비스 등	-0.06	0.06
기타 서비스	-0.03	0.06

자료: GTAP 분석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FTA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품목의 중심관세율을 8%에서 5%로 인하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일부 산업의 경우 중심관세율 인하로 대외관세율이 FTA 관세율보다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심관세율 인하효과를 가질 수 있는 할당관세제도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FTA로 인해 관세가 완전 철폐되고 중심관세율이 인화된 경우에는 할당관세의 역할이 다소 축소될 것이다. 따라서 FTA 체결 현황과 중심관세율 정책에 따라 할당관세제도의 활용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 V. 요약 및 결론

---

전 세계적으로 무역자유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왔다. GATT 체제에서는 다수의 국가들이 참여하는 관세인하협상을 통해서, 그리고 WTO 출범 이후에는 다자간 관세인하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소수 국가들 간의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무역자유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1980년대부터 중심관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현재 중심관세율 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 세계적인 지역무역협정 확대 추세에 따라 동시다발적으로 다수의 국가들과의 FTA를 체결하였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 EU, 중국 등의 거대 경제권 FTA를 비롯해서 2017년 말 기준으로 총 52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고 일본 등 다수의 FTA가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까지 중심관세율을 8%로 인하한 이후 일부 품목의 기본관세율을 조정하였지만, 전반적인 관세율 체계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수의 국가들이 FTA를 체결한 상황에서 다른 국가들의 관세율 체계 변화를 살펴보았지만, 미국, EU, 일본 등 다수의 FTA를 체결한 다른 국가들에서도 눈에 띄게 관세율 체계가 변화된 국가는 없었다. 다만 호주는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고관세 품목인 자동차와 섬유류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여 절반 이상의 품목에 대해 5%의 관세율을 부과하여 단일 관세율 체계로 전환하였다는 특징이 있었다.

우리나라가 현재 다수의 FTA가 발효되었지만 기존의 관세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분명 FTA가 확대되면서 FTA 협정세율 적용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10년간의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율 자료를 활용하여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비중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거대 경제권과의 FTA에서는 기본관세율 적용 비율이 낮아지고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비중이 높아졌지만, 그 밖의 대다수 FTA에서는 FTA 협정세율 적용 비중이 그리 높지 않았다. 예를 들어 교역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한·미 FTA, 한·EU FTA 그리고 한·아세안 FTA의 경우 FTA 이전에는 기본관세율로 수입되는 비중이 약 60~70% 수준이었는데, 그 비중은 약 25%로 감소하였다. 그 밖의 대다수 FTA에서는 FTA 협정세율이 적용 비중이 낮아서 전체적으로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의 약 1/4 정도였다.

2016년 기준으로 한·미 FTA 경우에는 한·미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비중은 39.8%이었지만, 한·아세안 FTA 경우에는 그 수입 비중이 48.6%이고, 한·EU FTA의 경우에는 수입 비중이 58.3%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개별 FTA별로 협정세율 적용 비중이 상이하였으며, 한·EU FTA의 경우 협정세율 적용 비중이 다른 FTA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농산물 수입에서 나타난다. FTA 발효 이전에 기본관세율과 할당관세율로 수입되는 상당수의 농산물들이 FTA 협정세율로 전환되었다. 한·미 FTA의 경우 약 69.4%가 한·미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었고, 한·아세안 FTA 경우에는 72.8% 그리고 한·EU FTA의 경우에는 약 80.2%로 협정세율 적용 비율이 더 높았다.

이처럼 상당수의 농산물 수입이 FTA 협정세율로 전환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탄력관세제도에 대한 정책변화를 시사하고 있다. 농산물에 대한 탄력관세제도 운용은 FTA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필요가 있다. 공산품에 비해 농산물은 압도적으로 FTA 활용률이 높고 FTA 협정세율도 점진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농산물에 대한 탄력관세는 FTA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자연재해 등으로 공급 부족이 발생해 국내 시장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일시적으로 탄력관세제도를 활용할 필요는 여전히 있다. 따라서 탄력관세 고유의 목적에 적합한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탄력관세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각 FTA별로 비교 우위에 있는 산업군들이 다수의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미 FTA에서는 음식료품을 비롯해서 4개 산업군에서, 한·EU FTA에서는 수송장비를 비롯해서 7개 산업군에서, 한·아세안 FTA에서도 섬유 및 가죽제품을 비롯해서 7개 산업군에서 FTA 협정세율 적용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한·미 FTA와 비교해 볼 때, 한·EU FTA와 한·아세안 FTA에서는 FTA 협정세율 수입 비중이 절반 이상 되는 산업군이 더 많았고, 비교 우위에 있는 산업군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FTA를 활용하고 있었다.

전체 FTA 교역을 기준으로 산업별 분석을 하였다.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비중을 비교해 보면 산업별로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2016년 기준으로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산업 중에서 음식료품이 약 62.9%로 수입 비중이 가장 높았고, 섬유 및 가죽제품과 수송장비는 절반 이상이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고 있었다.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농림수산품은 약 1/3이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어 중간 위치에 있고, 나머지 금속제품, 기계류, 제1차 금속제품, 전기 및 전자기기 등은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비중이 다른 산업들에 비해 작다. 특히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은 WTO ITA 협정에 의해 WTO 양허세율이 무세이기 때문에 FTA를 통해 수입되는 비중이 10.4%로 다른 산업들에 비해 더 작았다.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비중이 높은 음식료품은 농림수산물과 함께 우리나라 관세율 체계에서 농산물로 분류된다. 농림수산물과 음식료품은 우리나라에서 고관세를 통해 국내 농산물 시장을 보호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분석결과 농림수산물과 음식료품은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비중이 높은 편이었고, 특히 음식료품은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비중이 다른 산업들 중에서 가장 높았다. 높은 기본관세율과 WTO 양허세율을 통해 국내 농산물 시장을 보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FTA를 통해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많이 반감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음식료품에 대한 FTA 협정세율 적용 비중도 한·미 FTA에서는 76.8%, 한·EU FTA에서는 83.0%, 한·아세안 FTA에서도 82.3%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농산물은 다른 품목들에 비해 더 높은 관세를

적용하여 국내 시장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FTA 확산으로 인해 국내 농산물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효과는 없으면서 이러한 높은 관세율이 명목 상으로만 존재하여 대외적으로 보호 수준이 과다하는 부정적인 인식만 남길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관세율 정책 방향 설정할 때 농산물에 대한 높은 기본관세율과 FTA 협정세율 간의 관세율 차이, 그리고 이로 인한 농산물 품목의 무역전환효과 등을 감안하여 기본관세율 구조를 개선할 때 참고할 필요가 있다.

농산물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중심관세율 체계에서 예외로 운용하고 있는 섬유 및 가죽제품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섬유 및 가죽제품에 대해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중심관세율 8%보다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분석결과에서 보듯이, 섬유 및 가죽제품은 예상대로 아세안, 중국, 베트남에서 주로 수입되고 있다. 한·아세안 FTA를 통해 수입되는 섬유 및 가죽제품의 비중은 2015년에는 26.2%까지 증가하였고, 2016년에는 19.5%였다. 2016년에 새롭게 한·중 FTA를 통해 12.8%, 한·베트남 FTA를 통해 9.8%의 섬유 및 가죽제품이 수입되었다. 한·아세안 FTA에서 섬유 및 가죽제품의 93.1%가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고 있다. 향후에도 이들 FTA 체결 국가들로부터의 섬유 및 가죽제품은 꾸준히 수입될 것으로 여겨진다. 섬유 및 가죽제품에 대한 현재의 고관세 정책은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섬유 및 가죽제품에 대한 높은 기본관세율과 FTA 협정세율 간의 관세율 차이, 그리고 이로 인한 무역전환효과 등을 감안하여 기본관세율 구조를 개선할 때 참고할 필요가 있다.

수송장비 산업에서는 거의 한·EU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수송장비 비중이 매우 높았다. 2016년 기준으로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수송장비가 약 51.9%인데, 이 중에서 39.2%가 한·EU FTA를 통해 수입되고 있다. 2015년에는 이 비중이 43.2%에 이르기도 하였다. 산업별 분석에서 특정 FTA의 수입 비중이 이처럼 높은 경우는 없었다. 우리나라가 현재 일본과의 FTA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역전환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참고로 한·미 FTA를 통해 수입되는 수송장비의 수입 비중은

9.8%이다. 수송장비와 달리 제1차 금속제품의 경우에는 특정 FTA가 아닌 여러 FTA들로부터 수입되어 특별히 수입이 편중되지 않은 산업도 있었다.

그리고 한·중 FTA가 발효된 이후에는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기계류, 전기 및 전자기기 품목은 EU와 미국에서 주로 수입되는데, 한·중 FTA가 발효된 이후에는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한·중 FTA가 2015년 12월에 발효되어 자료의 한계로 인해 분석에서 제외하였지만, 2016년 한 해 자료만을 보았을 때, 한·중 FTA 발효로 인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한 산업이 다수 눈에 띈다. 전기 및 전자기기, 금속제품, 비금속광물, 화학제품, 섬유 및 가죽제품 등에서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추후에도 한·중 FTA가 우리나라 기본관세를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다수의 FTA가 발효된 상황에서 2016년 기준 산업별, FTA별 실적관세율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지금 중심관세율을 8%에서 5%로 인하할 경우와 향후 FTA 관세인하 일정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 중심관세율을 5%로 인하할 경우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산업별, FTA별 실적관세율 매트릭스를 작성하여 자료로 사용할 때 장점은 2016년 기준으로 FTA별로 특정 산업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실제 관세율을 모형 분석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적관세율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FTA 체결로 인해 모든 수입품에 FTA 협정세율인 무세(0%)가 적용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도 보았듯이 산업별, FTA별로 FTA 협정세율 적용 비율이 다양해서 이러한 일률적인 적용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현재 다수의 FTA가 발효되었지만 이처럼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비중이 산업별, FTA별로 다양한 상황에서 중심관세율 인하로 인한 무역전환효과 완화 등으로 인한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FTA 관세인하 일정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 중심관세율을 낮추는 것보다 더 나은 정책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웠다. 모형 설정의 한계로 인해 FTA 협정세율 적용 비중이 산업별, FTA별로 다양한 상황에서 중심관세율 인하효과가 모형 분석대로 현실에서도 그대로 반영될지는 의문이다.

또한 중심관세율 인하로 인해 미국과 EU로부터의 수입 감소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이들 국가들의 후생이 감소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큰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국의 후생이 증가하는데 이 역시도 한·중 FTA가 2015년 12월에 발효되어 한·중 FTA에 따른 교역효과가 이번 분석에는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중 FTA가 이제 막 발효되어 2016년 한 해만 살펴봤지만 한·중 FTA가 우리나라 관세율 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FTA들에 비해 향후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한·GCC FTA와 한·일 FTA가 이루어질 경우를 분석하였다. 한·GCC FTA 체결은 곧 우리나라가 전체 원유 수입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FTA들과의 관세인하 일정이 마무리되고 추가로 한·GCC FTA가 체결되어 원유 관세가 무세가 적용되면 세수 감소 보전 등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사회적 후생은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GCC FTA가 체결된 이후 중심관세율을 인하하면 사회적 후생과 국내총생산이 약간의 개선되었지만 그 효과는 작았다. 따라서 관세율 정책 측면에서는 한·GCC FTA 체결은 긍정적인 측면이 적은 것으로 여겨진다.

거대 경제권 중에서 아직 일본과의 FTA가 중요한 사안으로 남아 있다. 한·일 FTA도 다른 FTA들과의 관세인하 일정이 마무리되고 한·일 FTA를 체결한 이후 중심관세율 인하를 하면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분석들보다 그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다. 아마도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경제권들과의 FTA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중심관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상대적으로 더 크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동시다발적 FTA 추진 전략을 통해 다수의 FTA가 체결되어 발효된 상황에서 FTA 협정세율이 우리나라 관세율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지난 10년 동안의 전체 수입액 자료를 활용하여 FTA별, 산업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상황에

서 중심관세율을 낮추는 것이 FTA 관세인하 일정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 낮추는 것보다 더 나은 정책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향후에도 이러한 분석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정책 결정에 기초가 될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중 FTA가 더 성숙해지고, 또한 한·일 FTA 논의가 시작되면 이와 같은 분석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 참고문헌

---

-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16.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02년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 품목과 세율 확정」, 2001.12.13.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03년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 운용(안)」, 2002.12.9.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원자재 관세율 인하」, 2003.6.4.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물가안정 등을 위한 주요 원자재 관세율 인하」, 2004.2.18.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원유 등 석유류에 대한 관세율인하 적용시한 재연장」, 2005.4.21.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06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용(안)」, 2005.12.28.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07년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용계획」, 2006.12.29.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원유 및 휘발유 등 석유제품에 대한 할당관세 운용계획」, 2007.6.12.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07년도 하반기 할당관세 운용계획」, 2006.6.15.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08년 조정관세 및 2008년 상반기 할당관세 운용안」, 2007.12.20.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08년 긴급할당관세 시행 및 시장접근물량 증량」, 2008.3.25.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08년 제2차 긴급할당관세 시행」, 2008.7.29.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09년 상반기 할당관세 시행」, 2008.12.23.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09년 하반기 할당관세 시행」, 2009.6.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내년에 LNG, LPG 등 46개 품목의 관세율을 기본세율보다 인하 적용(10년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규정안 확정)」, 2009.12.2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수입설탕에 대한 할당관세 추진」, 2010.8.10.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배추, 무 등 채소류와 세제 등 생활품에 대해 관세인하」, 2010.10.5.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물가안정 등을 위해 내년에 원당, 제분용 밀 등 67개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 2010.12.2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무관세 적용」, 2011.1.25.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구제역 및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분유, 돼지고기, 알루미늄괴 등 관세인하 확대」, 2011.2.28.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구제역, AI 및 국제원자재 가격상승에 대응하여 닭고기, 냉장삼겹살, 젓소 등에 관세인하 확대」, 2011.5.3.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과일 및 채소류의 수급원활화와 가격안정을 위하여 바나나, 파인애플, 배추 등에 관세인하」, 2011.8.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농축산물 수급원활화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고추, 산란용 병아리, 감자 등에 관세인하 확대」, 2011.9.14.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12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용안 확정」, 2011.12.20.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삼겹살 및 건고추 할당관세 연장」, 2012.3.20.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가격안정 및 수급원활화를 위한 하반기 할당관세 시행」, 2012.6.26.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양파, 대파의 가격안정 및 수급원활화를 위한 할당관세 시행」, 2012.7.17.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3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적용 규정안 확정」, 2013.1.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수급 원활화 및 가격안정을 위한 하반기 할당관세 시행」, 2013.6.25.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4년 할당관세, 조정관세 운용방안 확정」, 2013. 12.3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4년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품목 결정」, 2017.6.17.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5년도 탄력관세(할당·조정) 운영계획」, 2014.12. 23.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5년도 하반기 할당관세 운용」, 2015.6.25.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6년 탄력관세(할당·조정) 운영계획 확정」, 2015.12.29.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신산업 지원 할당관세 운용 계획 시행」, 2016.7.26.

김한성, 『주요국의 통관제도-호주 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장근호·정재완·전한건, 「물가안정과 경제축진을 위한 관세율 체계 검토 연구」, 기획재정부 용역과제, 한국조세연구포럼, 2011.

정재완, 「한국의 탄력관세제도 운용상 문제점과 정책과제」, 『무역학회지』, 제27권 제4호, 2002, pp. 241~261.

정재완, 「2002년도 탄력관세제도의 운용( I )」, 『월간조세』, 2002.1, p.164.

정재호, 「향후 우리나라 관세율정책의 방향에 대한 소고」, 『재정포럼』, 제 84호, 한국조세연구원, 2003, pp. 34-55.

정재호, 『관세율 체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일반균형계산(CGE) 모형 이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8.

정재호, 『할당관세제도 개선 및 여론수렴 확대방안 모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8.

정재호·성명재, 이명현, 『관세율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국제비교 및 일반 균형모형의 응용』, 한국조세연구원, 2003.

정재호·이홍식, 『FTA 확대에 대응한 관세율 체계 변화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0.

Bagwell, K., Staiger, R.W., “An economic theory of GATT,” *American Economic Review*, 89 (1), 1999a, pp. 215~248.

Bagwell, K., Staiger, R.W., “Regionalism and multilateral tariff cooperation,”

- In: Piggott, J., Woodland, A. (Eds.), *International Trade Policy and the Pacific Rim*, MacMillan, London, 1999b, pp. 157~185.
- Bagwell, K., Staiger, R.W., "Multilateral tariff cooperation during the formation of free trade areas,"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38, 1997a, pp. 291~319.
- Bagwell, K., Staiger, R.W., "Multilateral tariff cooperation during the formation of customs union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42, 1997b, pp. 91~123.
- Bond, E.W., Park, J.H., "Gradualism in trade agreements with asymmetric countries," *Review of Economic Studies*, 69, 2004, pp. 379~406.
- Brockmeier, Martina, "A Graphical Exposition of the GTAP Model," *GTAP Technical Papers*, Paper 5, 2001.
- Burfisher, Mary. E., *Introduction to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 Erwin L. Corong, Thomas W. Hertel, Robert McDougall, Marinos E. Tsigas, Dominique van der Mensbrugghe, "The Standard GTAP Model, Version 7," *Journal of Global Economic Analysis*, 2017.
- Maggi, Giovanni, "Chapter 6.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 *The Handbook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ume 4, Elsevier, 2014, pp. 317~390.
- Ornelas, E., "Rent destruction and the political viability of free trade agreements," 120, 2005a, pp. 1475~1506.
- Ornelas, E., "Endogenous free trade agreements and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67, 2005b, pp. 471~497.
- Richardson, M., "Endogenous protection and trade diversio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34(3-4), 1993, pp. 309~324.
- Saggi, K., Yildiz, H.M., "Bilateralism, multilateralism, and the quest for

global free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81, 2010. pp. 26~37.

〈웹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국가통계포털 kosis, <http://kosis.kr>

국제무역연구원, <http://lit.kita.net>

기획재정부, [www.mof.go.kr](http://www.mof.go.kr)

세계HS정보,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banId=hsinfo#1001>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http://www.kita.net)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전자관보, [www.moi.go.kr](http://www.moi.go.kr)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FTA 강국 KOREA, <http://www.fta.go.kr/>

Global Trade Analysis Project (GTAP), [www.gtap.agecon.purdue.edu](http://www.gtap.agecon.purdue.edu)

OECD Statistics, <http://stats.oecd.org>

Parliament of Australia, Customs Tariff Amendment (Textile, Clothing and Footwear Post-2005 Arrangements) Bill 2004,

[https://www.aph.gov.au/Parliamentary\\_Business/Bills\\_Legislation/bd/bd0405/05bd001](https://www.aph.gov.au/Parliamentary_Business/Bills_Legislation/bd/bd0405/05bd001)

World Trade Organization, [www.wto.org](http://www.wto.org)

World Trade Organization Tariff data base, <http://tariffdata.wto.org>

World Trade Organization Tariff Analysis online, <http://tao.wto.org>

World Trade Organization RTA database, <http://rtais.wto.org>

## 부 록

〈부표 1〉 HS 2단위 품목명

HS	품목명
01	살아 있는 동물
02	육과 식용 설육(脛肉)
03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04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05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06	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鱗莖)·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절화(切花)와 장식용 잎
07	식용의 채소·뿌리·괴경(塊莖)
08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멜론의 껍질
09	커피, 차, 마테(maté), 향신료
10	곡물
11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 글루텐(gluten)
12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의약용 식물, 짐과 사료용 식물
13	락(lac), 검·수지·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14	식물성 편조물(編組物)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15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蠟)
16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조제품
17	당류(糖類)와 설탕과자
18	코코아와 그 조제품
19	곡물·고운 가루·전분·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20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21	각종 조제 식료품
22	음료, 주류, 식초
23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

〈부표 1〉의 계속

HS	품목명
24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25	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석고·석회·시멘트
26	광(鑛), 슬래그(slag), 회(灰)
27	광물성 연료·광물유(鑛物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瀝靑) 물질, 광물성 왁스
28	무기화학품, 귀금속·희토류(稀土類) 금속·방사성원소·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29	유기화학품
30	의료용품
31	비료
32	유연용·염색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 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바니시(vernish), 퍼티(putty)와 그 밖의 매스틱(mastic), 잉크
33	정유(essential oil)와 레지노이드(resinoid), 조제향료와 화장품·화장용품
34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 세제·조제 윤활제·인조 왁스·조제 왁스·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조형용 페이스트(paste)·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틱(plaster)를 기본 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
35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호소
36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37	사진용이나 영화용 재료
38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40	고무와 그 제품
41	원피(모피는 제외)와 가죽
42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의 제품
43	모피·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
44	목재와 그 제품, 목탄
45	코르크(cork)와 그 제품
46	짚·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47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8	종이와 판지,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의 제품
49	인쇄서적·신문·회화·그 밖의 인쇄물, 수제(手製) 문서·타자문서·도면

〈부표 1〉의 계속

HS	품목명
50	견
51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
52	면
53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paper yarn)과 종이실로 만든 직물
54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
55	인조스테이플섬유
56	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특수사,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57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갈래
58	특수직물, 터프트(tuft)한 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tapestry), 트리밍(trimming), 자수천
59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용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인 방직용 섬유제품
60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61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만 적용)
62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
63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방직용 섬유제품, 냅마
64	신발류·각반과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
65	모자류와 그 부분품
66	산류(傘類)·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67	조제 깃털·솜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68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69	도자제품
70	유리와 유리제품
71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72	철강
73	철강의 제품
74	구리와 그 제품
75	니켈과 그 제품
76	알루미늄과 그 제품
78	납과 그 제품

〈부표 1〉의 계속

HS	품목명
79	아연과 그 제품
80	주석과 그 제품
81	그 밖의 비금속(非金屬), 서멧(cermet), 이들의 제품
82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공구·도구·칼붙이·스푼·포크, 이들의 부분품
83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각종 제품
84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85	전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86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용이나 궤도용 장비품과 그 부분품,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각종 교통신호용 기기
87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88	항공기와 우주선, 이들의 부분품
89	선박과 수상 구조물
90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1	시계와 그 부분품
92	악기와 그 부분품과 부속품
93	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4	가구,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램프·조명기구,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식 건축물
95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6	잡품
97	예술품, 수집품, 골동품

자료: 관세청 홈페이지, 세계HS정보,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banId=hsinfo#1001>  
(접속일: 2017.10.13.)

〈부표 2〉 시나리오 1-2의 수입효과

구분	호주	뉴질랜드	중국	한국	이세안	캐나다	미국	페루	EU	타키	기타국가
농림수산물	0.04	0.04	0.02	0.21	-0.02	0.00	-0.03	-0.02	-0.01	0.00	0.04
광산품	-0.29	-0.11	-0.01	0.49	-0.07	-0.02	-0.04	-0.14	-0.01	-0.01	0.05
원유	-0.10	-0.09	-0.09	1.35	-0.20	-0.03	-0.04	-0.03	-0.01	-0.01	0.01
음식료품	0.01	0.06	0.04	1.32	0.00	0.01	-0.01	-0.03	0.00	0.00	0.04
섬유 및 가죽제품	-0.01	0.02	0.11	1.46	0.00	0.00	-0.02	0.01	-0.01	0.02	0.07
목재, 종이, 인쇄제품	0.00	0.02	0.00	0.68	0.01	0.01	-0.02	-0.02	0.00	0.00	0.05
석유 및 석탄제품	0.04	0.15	0.37	0.26	0.08	-0.01	0.01	0.00	0.01	0.00	0.06
화학제품	0.00	0.03	0.14	1.56	0.00	0.00	-0.01	0.01	-0.01	0.01	0.07
비금속광물제품	-0.11	-0.05	0.01	2.31	0.00	-0.01	-0.03	-0.01	-0.02	-0.02	0.05
제차 금속제품	-0.02	-0.02	0.01	0.74	0.01	0.00	-0.01	0.00	-0.01	0.00	0.06
금속제품	-0.01	0.01	0.03	1.96	-0.02	0.01	-0.03	0.01	-0.01	0.01	0.08
일반기계 및 장مل기기	0.00	0.02	0.06	1.58	0.00	0.01	-0.03	0.00	-0.01	0.01	0.06
전기 및 전자기기	0.01	0.03	0.06	0.81	0.00	0.01	0.00	0.04	0.00	0.03	0.10
전력, 가스 및 증기	-0.06	-0.01	-0.04	-0.59	-0.07	-0.01	-0.03	-0.02	-0.02	-0.03	0.03
수송장비	0.02	0.02	0.03	1.25	0.01	0.01	-0.02	0.02	0.00	0.01	0.07
기타 제조업 제품	-0.02	0.02	-0.02	2.25	-0.04	0.00	-0.03	-0.01	-0.01	0.01	0.04
건설	-0.03	0.00	0.00	0.17	-0.02	-0.01	-0.03	0.00	-0.01	-0.02	0.04
도소매서비스 등	-0.02	0.01	-0.01	0.09	-0.03	0.00	-0.04	-0.01	-0.01	-0.01	0.03
운송서비스	-0.02	0.00	-0.01	0.02	-0.02	0.00	-0.01	-0.01	0.00	0.00	0.03
방송서비스 등	-0.02	0.01	-0.01	0.11	-0.01	0.00	-0.02	-0.01	-0.01	-0.01	0.04
금융 및 보험 서비스	-0.01	0.02	-0.01	0.25	-0.02	0.01	-0.02	-0.01	0.00	0.00	0.04
사업서비스 등	-0.02	0.01	-0.01	0.47	-0.02	-0.01	-0.03	-0.01	-0.01	-0.01	0.03
기타 서비스	-0.01	0.02	0.00	0.36	-0.02	0.01	-0.03	0.00	-0.01	0.00	0.04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표 3〉 시나리오 1-2의 수출효과

구분	호주	뉴질랜드	중국	한국	아세안	캐나다	미국	페루	EU	터키	기타국가
농림수산물	0.03	0.01	0.22	0.48	0.05	0.04	0.03	0.02	0.03	0.04	-0.04
광산물	0.02	0.12	0.04	0.54	0.00	0.00	0.02	-0.04	0.02	-0.01	0.06
원유	-0.23	-0.16	0.01	5.95	-0.36	0.02	0.08	0.04	-0.04	-0.08	0.07
음식료품	0.77	0.12	0.20	0.87	0.02	0.01	0.06	0.00	0.02	0.03	-0.08
섬유 및 가죽제품	-0.13	-0.06	0.05	1.68	-0.10	0.00	-0.01	-0.02	0.00	0.02	-0.04
목재, 종이, 인쇄제품	0.07	0.00	0.06	0.33	0.10	-0.01	0.04	0.03	0.03	0.04	-0.09
석유 및 석탄제품	-0.01	-0.01	-0.13	2.78	-0.13	-0.04	-0.05	-0.05	-0.03	-0.08	-0.09
화학제품	-0.14	-0.09	-0.04	2.07	-0.08	-0.07	-0.09	-0.02	-0.04	-0.03	0.11
비금속광물제품	-0.49	-0.68	-0.03	2.54	-0.13	-0.02	-0.15	0.05	-0.05	-0.02	0.21
제차 금속제품	0.00	-0.05	0.01	0.89	0.00	-0.01	0.06	0.02	0.01	0.00	0.01
금속제품	0.05	-0.02	-0.01	0.78	0.07	0.00	0.08	0.07	0.02	0.01	0.12
일반기계 및 정밀기기	0.00	-0.08	0.01	1.08	0.00	-0.01	-0.08	0.01	-0.03	-0.01	0.16
전기 및 전자기기	0.09	-0.08	0.01	1.58	0.00	-0.04	-0.02	0.04	-0.02	-0.04	-0.16
전력, 가스 및 증기	0.10	0.03	0.06	1.29	0.13	0.01	0.07	0.05	0.03	0.04	-0.08
수송장비	-0.01	-0.06	0.04	0.81	0.05	0.00	-0.02	-0.01	-0.02	-0.02	-0.04
기타 제조업 제품	0.05	0.01	0.04	0.16	0.10	0.02	0.03	0.08	0.04	0.03	0.00
건설	0.05	0.02	0.03	0.09	0.07	0.02	0.06	0.03	0.04	0.03	-0.06
도스매서비스 등	0.04	0.01	0.02	0.01	0.06	0.02	0.06	0.02	0.03	0.02	-0.06
운송서비스	0.07	0.06	0.05	0.22	0.09	0.03	0.04	0.02	0.03	0.03	-0.01
방송서비스 등	0.04	0.01	0.03	-0.03	0.05	0.02	0.05	0.02	0.02	0.02	-0.07
금융 및 보험 서비스	0.04	0.00	0.03	-0.24	0.05	0.01	0.05	0.01	0.02	0.02	-0.07
사업서비스 등	0.05	0.01	0.03	-0.28	0.06	0.03	0.05	0.03	0.04	0.04	-0.06
기타 서비스	0.06	0.00	0.04	-0.26	0.06	0.03	0.07	0.02	0.02	0.03	-0.06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표 4〉 시나리오 2의 수입효과

구분	호주	뉴질랜드	중국	한국	아세안	캐나다	미국	페루	EU	타키	기타국가
농림수산물	0.07	0.07	0.03	0.33	-0.03	0.00	-0.05	-0.03	-0.01	-0.01	0.06
광산품	-0.49	-0.18	-0.02	0.84	-0.12	-0.03	-0.07	-0.24	-0.02	-0.02	0.09
원유	-0.17	-0.15	-0.15	2.29	-0.34	-0.06	-0.06	-0.04	-0.02	-0.02	0.01
음식료품	0.01	0.10	0.07	2.11	0.00	0.01	-0.02	-0.04	-0.01	-0.01	0.06
섬유 및 가죽제품	-0.01	0.03	0.18	2.49	0.01	0.01	-0.03	0.01	-0.01	0.03	0.12
목재, 종이, 인쇄제품	0.00	0.03	0.00	1.14	0.01	0.01	-0.04	-0.03	0.00	0.01	0.09
석유 및 석탄제품	0.07	0.26	0.62	0.43	0.14	-0.01	0.02	-0.01	0.01	0.01	0.11
화학제품	-0.01	0.05	0.23	2.66	0.00	0.00	-0.01	0.02	-0.02	0.02	0.12
비금속광물제품	-0.19	-0.09	0.02	3.99	0.00	-0.02	-0.06	-0.01	-0.03	-0.03	0.08
제1차 금속제품	-0.03	-0.03	0.02	1.24	0.02	0.01	-0.02	0.01	-0.01	0.01	0.10
금속제품	-0.01	0.01	0.05	3.34	-0.03	0.01	-0.05	0.02	-0.01	0.02	0.13
일반기계 및 정밀기기	0.00	0.03	0.10	2.70	0.00	0.01	-0.05	0.01	-0.01	0.02	0.09
전기 및 전자기기	0.02	0.04	0.10	1.37	0.00	0.01	0.00	0.07	0.00	0.05	0.18
전력, 가스 및 증기	-0.09	-0.02	-0.08	-1.00	-0.12	-0.02	-0.05	-0.03	-0.04	-0.05	0.05
수송장비	0.03	0.03	0.05	2.14	0.02	0.01	-0.03	0.03	0.00	0.02	0.11
기타 제조업 제품	-0.03	0.03	-0.04	3.87	-0.06	0.01	-0.05	-0.01	-0.02	0.02	0.07
건설	-0.04	0.01	0.00	0.28	-0.03	-0.02	-0.05	0.00	-0.01	-0.03	0.07
도소매서비스 등	-0.03	0.02	-0.03	0.14	-0.04	-0.01	-0.06	-0.01	-0.02	-0.02	0.06
운송서비스	-0.04	0.01	-0.02	0.03	-0.03	0.00	-0.02	-0.01	0.00	0.00	0.05
방송서비스 등	-0.02	0.02	-0.02	0.18	-0.02	-0.01	-0.04	-0.01	-0.01	-0.01	0.06
금융 및 보험 서비스	-0.01	0.03	-0.02	0.41	-0.03	0.01	-0.04	-0.01	-0.01	0.00	0.06
사업서비스 등	-0.03	0.02	-0.02	0.79	-0.03	-0.01	-0.06	-0.02	-0.02	-0.01	0.06
기타 서비스	-0.01	0.03	-0.01	0.60	-0.03	0.01	-0.05	0.00	-0.01	0.00	0.07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표 5〉 시나리오 2의 수출효과

구분	호주	뉴질랜드	중국	한국	아세안	캐나다	미국	페루	EU	터키	기타국가
농림수산물	0.05	0.02	0.40	0.75	0.09	0.07	0.08	0.04	0.05	0.07	-0.08
광산물	0.03	0.20	0.07	0.92	0.00	0.00	0.04	-0.07	0.04	-0.02	0.10
원유	-0.38	-0.26	0.02	10.14	-0.59	0.03	0.14	0.06	-0.06	-0.13	0.12
음식료품	1.36	0.22	0.35	1.38	0.03	0.03	0.11	0.00	0.03	0.05	-0.15
섬유 및 가죽제품	-0.22	-0.11	0.09	2.85	-0.17	0.00	-0.02	-0.03	0.01	0.04	-0.06
목재, 종이, 인쇄제품	0.11	-0.01	0.10	0.56	0.17	-0.01	0.06	0.05	0.04	0.07	-0.16
석유 및 석탄제품	-0.01	-0.02	-0.22	4.69	-0.22	-0.06	-0.08	-0.08	-0.06	-0.14	-0.16
화학제품	-0.25	-0.16	-0.07	3.50	-0.14	-0.11	-0.15	-0.04	-0.06	-0.06	0.19
비금속광물제품	-0.83	-1.14	-0.06	4.36	-0.23	-0.04	-0.25	0.08	-0.09	-0.03	0.37
제1차 금속제품	0.00	-0.09	0.03	1.50	0.01	-0.02	0.10	0.03	0.01	0.00	0.01
금속제품	0.09	-0.04	-0.02	1.33	0.11	-0.01	0.13	0.12	0.03	0.02	0.20
일반기계 및 정밀기기	-0.01	-0.14	0.01	1.84	-0.01	-0.03	-0.14	0.01	-0.05	-0.02	0.28
전기 및 전자기기	0.15	-0.14	0.02	2.69	-0.01	-0.08	-0.04	0.07	-0.04	-0.08	-0.28
전력, 가스 및 증기	0.16	0.04	0.10	2.19	0.22	0.02	0.11	0.08	0.06	0.07	-0.13
수송장비	-0.03	-0.10	0.06	1.38	0.08	0.01	-0.04	-0.02	-0.04	-0.04	-0.06
기타 제조업 제품	0.08	0.01	0.07	0.28	0.16	0.03	0.04	0.14	0.07	0.04	0.01
건설	0.08	0.02	0.04	0.15	0.11	0.04	0.10	0.06	0.06	0.06	-0.10
도소매서비스 등	0.07	0.01	0.04	0.01	0.11	0.04	0.09	0.03	0.04	0.04	-0.11
운송서비스	0.11	0.10	0.09	0.36	0.15	0.05	0.07	0.03	0.06	0.05	-0.02
방송서비스 등	0.07	0.01	0.05	-0.04	0.09	0.03	0.08	0.03	0.04	0.04	-0.12
금융 및 보험 서비스	0.06	0.00	0.05	-0.39	0.09	0.02	0.08	0.02	0.03	0.04	-0.13
사업서비스 등	0.08	0.02	0.06	-0.46	0.11	0.05	0.09	0.06	0.06	0.06	-0.10
기타 서비스	0.09	0.00	0.06	-0.43	0.11	0.05	0.11	0.03	0.04	0.05	-0.11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무역자유화 확대에 따른 관세율 체계 분석 연구

---

정재호·강성훈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동시다발적 FTA 추진 전략을 통해 다수의 FTA가 발효된 상황에서 FTA 협정세율이 우리나라 관세율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지난 10년 동안의 전체 수입액 자료를 활용하여 FTA별, 산업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거대 경제권의 FTA 협정세율 적용 비중은 높았지만, 기타 FTA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거대 경제권의 FTA별로 비교 우위에 있는 산업군이 나타났으며, 산업별로도 FTA 협정세율 적용 비중이 다양하여 각 산업별로 기본관세율의 역할이 다르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관세율 체계에서 농산물로 분류되는 음식료품은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비중이 매우 높아서 향후 관세율 정책 방향 설정할 때 농산물에 대한 기본관세율과 FTA 협정세율 간의 세율 차이, 이로 인한 농산물의 무역전환효과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섬유 및 가죽제품도 FTA 협정세율 수입비중이 높아 같은 잣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다수의 FTA가 발효되고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비중이 산업별, FTA 별로 다양한 현재의 상황에서 중심관세율을 낮추는 것이 FTA 관세인하 일정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 중심관세율을 낮추는 것보다 더 나은 정책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웠다.

## Analysis of Korea's Tariff System under Trade Liberalization

---

Jaeho Cheung · Sunghoon Kang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impact of FTA preferential tariff (called FTA tariff) on Korea's tariff structure by using past 10 years data. The study found that FTA tariff is mainly applied to products from large economy FTAs but not to products from other FTAs. In addition, each large economy FTA has its own comparative advantage on the specific industries. As FTA tariff is applied to industries and products with different level, it brings diverse results on each industries.

Food and Beverage products, which are classified as agricultural products, are imported mainly with FTA tariff.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difference between FTA tariff rates and current legal tariff rates when Korean government sets up the tariff rate of agricultural products in the future. The trade diversion effect of agricultural products caused by tariffs difference should be contemplated too.

Likewise, leather and fabric products, which are imported mainly with FTA tariff from ASEAN and China, should be examined with same standards with agricultural products.

In conclusion, we currently stand on the middle of trade liberalization

involving various stake holders and countries. Lots of FTAs took effect and different tariffs are imposed by each industry and FTA in different levels and ways. In this complicated situation, it is cautious to say that the policy of decreasing the legal tariff rates at this moment is better than the policy of decreasing the rates followed by FTA tariff reduction schedule.



## ■ 저자약력

### 정재호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강성훈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졸업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응용경제학 박사  
현, 한양대학교 정책과학대학 정책학과 교수

### 자료 수집 및 정리

안승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

연구보고서 17-06

## 무역자유화 확대에 따른 관세율 체계 분석 연구

---

발행	행	2017년 12월 29일
저자	자	정재호·강성훈
발행인	인	박형수
발행처	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소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전화	화	(044)414-2114(대)
홈페이지	지	www.kipf.re.kr
등록	록	1993. 7. 15. 제21-466호
정가	가	8,000원
조판 및 인쇄	쇄	(주)정인애드
I S B N	N	978-89-8191-897-2

---

